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2015. 7

세 법 연 구 센 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 Taxing Wages 2014	3
1. 서언	3
2. 2014년 OECD 회원국들의 임금소득 과세 주요 현황	4
가. 2014년 현재 조세격차 현황	4
나. 2014년 현재 조세격차의 구성요소 비중 현황	7
다. 2014년 현재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	9
라. 2014년 현재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	11
3.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화 분석	14
4. 미혼 외벌이 가정과 두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2000년~2014년 사이의 조세격차 변동	16
가. 2000년~2014년 사이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17
나. 2000년~2014년 사이의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19
II. OECD - Consumption Tax Trends 2014	21
1. 소비세제	21
가. 소비세의 종류 및 변천	21
나. 소비세 특징	27
다. VAT 및 국제 거래 - 소비지국 과세원칙	28
라. VAT 탈루 문제	30
2.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구조	31
가. VAT 세율의 변천	31
나. VAT 면세	33
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34

라.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의무부과 기준점	35
마. 기타 VAT 면제 및 거래징수 관련 특칙	36
3. 부가가치세 성과분석	37
가. VRR의 계산	37
나. OECD 회원국의 VRR	39
다. VRR의 분석	42
4. OECD 회원국의 물품세	43
가. 물품세 일반	43
나. 알코올음료	47
다. 담배	54
라. 광유	56
5. 자동차관련 세제	61
가. 자동차에 대한 과세와 오염 배출	61
나. 자동차의 구입단계에서 과세	62
다.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정기적인 과세	65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71
1. 미국	71
가.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71
나. 상원 재정위원회의 조세개혁보고서 공개	79
2. 캐나다 - 2015 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	85
가. 법인소득세	85
나. 개인소득세	86
다. 기타 조세	87



II. 유럽	89
1. 그리스	89
가.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관령을 발표	89
나. 해외자산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 부여 계획을 발표	90
2. 네덜란드	91
가.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변경에 대한 시행령 발표	91
나. 조세 개정안 의회 제출	92
3. 독일 -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를 헌법불합치판결	94
4. 루마니아 - 정부가 감세안을 제안	96
5. 벨기에	97
가.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	97
나.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99
6. 스페인	101
가. 이전가격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01
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발표	103
7. 아일랜드	104
가. 조세회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사면 지침 발표	104
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 발표	106
8. 영국 - 2015 예산안 발표	107
가. 소득세	108
나. 법인세, 석유세 등	109
9. 이탈리아	110
가. 직·간접세 및 국제조세 개정 법령 공포	110
나. 투자촉진 관련 조세정책 법령 공포	112
다. 비용공제 및 조세피난처 세제 관련 블랙리스트 국가 범위 조정	114
라.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보완 및 전자·통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시행령 발표	115
10. 터키 - 간주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도입	117

11. 프랑스 - 투자 촉진 관련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	118
12. 핀란드 - 공동증여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지침을 발표	119
13. EU	121
가. 금융계좌정보 교환 관련 1차 검토 보고서 발표	121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	121
14. OECD - BEPS Action Plan 중 국가별 보고 (Action 13)에 대한 실행보고서 발표 ..	124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2015 예산안 공개	126
2. 대만 -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27
3. 싱가포르	129
가. 개정 이전가격지침 공개	129
나. 2015년 예산안 공개	131
4. 인도	135
가. 2015~16년 예산안 공개	135
나.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과세법 제안	138
5. 일본 - 2015년 예산안 각의 결정	140
가. 소득세	140
나. 증여세(자산과세)	141
다. 법인세	141
라. 국제조세	144
6. 중국	144
가. 기업구조개선 및 비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144
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비 요구	146
7. 호주 - 2015 예산안 공개	147
8. 홍콩 - 2015~16년 예산안 공개	150

제 2 부

<표 Ⅱ-1> 이탈리아의 블랙리스트 해제국가	115
<표 Ⅱ-2> 핀란드의 증여세율 적용 범주 구분	120
<표 Ⅱ-3> 금융정보교환 관련 주요 논의 사항	123
<표 Ⅲ-1> 대만의 자본소득세율	129
<표 Ⅲ-2>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금액기준	130
<표 Ⅲ-3> 싱가포르 소득세율 개정안	131
<표 Ⅲ-4> 일본의 법인세율	142
<표 Ⅲ-5> 지방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142
<표 Ⅲ-6> 지침에 따른 과세방법	146

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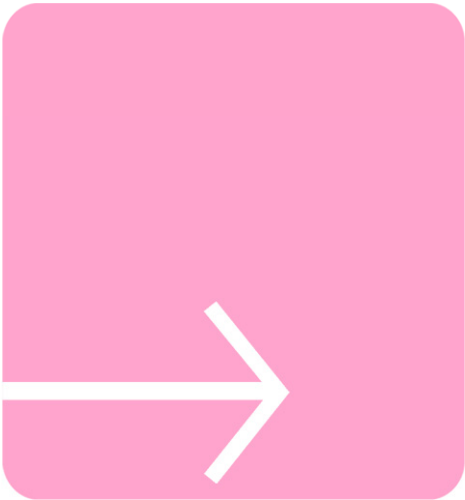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물품세 등의 비중 평균 ……	26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VAT 비중 평균 ……	26
[그림 II-3] OECD 회원국의 2012년 VRR ……	41

제 2 부

[그림 II-1]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도해 ……	100
--------------------------------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 Taxing Wages 2014

1 서 언

- OECD는 2015년 4월 30일에 『임금소득 과세 2014년 보고서』(Taxing Wages 2014)¹⁾를 발간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임금소득 과세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²⁾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³⁾(Payroll Taxes), 그 밖에 가계현금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임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OECD 회원국들에게 있어 전체 조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본 보고서를 통해 임금소득 수준별, 가구형태별로 ‘국가간 정량적인 비교(quantitative cross-country comparisons)’를 가능하게 함
 - 특히 2014년 현재 근로자의 정확한 세부담(tax burden) 추정치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세격차(Tax Wedge)*를 주로 사용함

1) <http://www.oecd.org/ctp/taxing-wages-20725124.htm>

2) ‘성인 풀타임 근로자(adult full-time worker)’가 그 대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육체노동 근로자도 포함함

3)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의 통계에 포함됨

-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임

참고: 조세격차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과 근로자의 세후소득 간의 차이를 노동사용비용으로 나눈 비율 값으로서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도 반영된 값임

$$Tax\ Wedge(\%) = \frac{T + SSC_{ee} - FCB + PT + SSC_{er}}{In + PT + SSC_{er}} \times 100$$

여기서, T는 소득세, SSC_{er}, SSC_{ee}는 각각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FCB는 가계현금급여, PT는 지불급여세, In은 근로소득

- 또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개인 평균세율(Average Personal Tax Rates)’과 ‘개인 한계세율(Marginal Personal Tax Rates)’을 도출하여 이용하기도 함
- 개인 평균세율이란 총 임금소득(Gross Wage Earnings)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금액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개인 한계세율은 총 임금소득 증가분 대비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금액 증가분 비율을 말함
- 개인 평균세율은 노동시장에의 참여 유인에 영향을 주며 개인 한계세율은 근로의욕, 교육훈련, 이직 등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2 2014년 OECD 회원국들의 임금소득 과세 주요 현황

가. 2014년 현재 조세격차 현황

- 2014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격차는

4) 개인소득세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가계현금급여

- 약 36%로, 최대 55.6%(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함
- 조세격차가 OECD회원국 평균인 36%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조세격차가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개국임
 - 조세격차가 50% 이상인 국가는 벨기에가 유일하며, 그 밖에 50%에 근접한 높은 조세격차를 보인 나라로는 오스트리아(49.40%), 독일(49.30%), 헝가리(49.0%), 프랑스(48.40%), 이탈리아(48.20%) 등이 있음
 - 20% 미만인 국가로는 칠레, 뉴질랜드(17.20%), 멕시코(19.50%) 등이 있음
- OECD회원국의 조세격차는 전년대비 평균 0.1%p 상승하였으며, 아일랜드(1.13%p)와 그리스(-1.22%p)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는 조세격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23개국, 감소한 국가는 9개국임
 - 아일랜드 외에 핀란드(0.84%p), 네덜란드(0.69%p), 터키(0.59%p), 캐나다(0.52%p)에서는 조세격차가 0.5%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세격차가 감소한 국가로는 그리스 외에 아이슬란드(-0.61%p), 스웨덴(-0.55%p), 프랑스(-0.43%p), 노르웨이(-0.32%p), 영국(-0.27%p), 포르투갈(-0.15%p), 덴마크(-0.14%p), 벨기에(-0.08%) 등이 있음
 - 헝가리와 칠레는 전년도 대비 조세격차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격차 확대의 주된 요인은 소득세의 증가(0.07%p)인 것으로 파악됨(사회보장기여금은 0.03%p 증가)
- 18개국에서 소득세가 증가했으며, 특히 아일랜드(1.13%p)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컸음
 - 아일랜드 외에 소득세가 증가한 국가에서의 소득세 증가 폭은 0.02%p에서 0.37%p 사이로 나타남
 - 반면, 조세격차 확대의 원인이 주로 근로자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증

가에 기인한 국가로는 핀란드(0.83%p), 터키(0.62%p), 네덜란드(0.60%), 일본(0.27%p) 등이 있음

- 이들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조세격차 확대의 주된 요인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국 가	Tax Wedge	전년대비 증가분			
	2014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벨기에	55.60	-0.08	-0.04	0.01	-0.05
오스트리아	49.40	0.17	0.17	0.00	0.00
독일	49.30	0.09	0.09	0.00	0.00
헝가리	49.00	0.00	0.00	0.00	0.00
프랑스	48.40	-0.43	0.22	0.31	-0.96
이탈리아	48.20	0.37	0.37	0.00	0.00
핀란드	43.90	0.84	0.02	0.30	0.53
체코	42.60	0.19	0.19	0.00	0.00
스웨덴	42.50	-0.55	-0.55	0.00	0.00
슬로베니아	42.50	0.09	0.09	0.00	0.00
포르투갈	41.20	-0.15	-0.15	0.00	0.00
슬로바키아	41.20	0.08	0.08	0.00	0.00
스페인	40.70	0.05	0.05	0.00	0.00
그리스	40.40	-1.22	-0.06	-0.25	-0.90
에스토니아	40.00	0.13	0.13	0.00	0.00
터키	38.20	0.59	-0.03	-0.11	0.73
덴마크	38.10	-0.14	-0.16	0.02	0.00
네덜란드	37.70	0.69	0.09	-0.23	0.83
룩셈부르크	37.60	0.34	0.35	0.00	-0.01
노르웨이	37.00	-0.32	-0.68	0.35	0.00
폴란드	35.60	0.03	0.03	0.00	0.00
아이슬란드	33.50	-0.61	-0.49	-0.03	-0.09
일본	31.90	0.29	0.02	0.14	0.13
미국	31.50	0.11	0.15	0.00	-0.05
캐나다	31.50	0.52	0.29	0.24	-0.01

〈표 1-1〉의 계속

국 가	Tax Wedge 2014	전년대비 증가분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영국	31.10	-0.27	-0.20	-0.02	-0.04
아일랜드	28.20	1.13	1.13	0.00	0.00
호주	27.70	0.29	0.28	0.00	0.01
스위스	22.20	0.10	0.10	0.00	0.00
한국	21.50	0.14	0.05	0.04	0.04
이스라엘	20.50	0.20	0.17	-0.06	0.09
멕시코	19.50	0.23	0.21	0.00	0.01
뉴질랜드	17.20	0.36	0.36	0.00	0.00
칠레	7.00	0.00	0.00	0.00	0.00
OECD 평균	35.95	0.10	0.07	0.02	0.01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시킴
 자료: OECD, 『Taxing Wages 2014』, p. 18

나. 2014년 현재 조세격차의 구성요소 비중 현황

- 조세격차 구성요소에는 개인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지불급여세 포함)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그 구성비중에 차이를 보임
- 2014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들의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40%로, 최대 35.6%(덴마크)에서 최소 0%(칠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칠레(0%), 우리나라(4.6%), 폴란드(6.0%), 일본(6.6%)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덴마크(35.60%), 아이슬란드(26.10%), 호주(22.10%), 벨기에(21.80%)에서는 소득세 비중이 20%를 초과함
- OECD회원국의 평균 노동사용비용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22.59%로, 최대 37.90%(프랑스)에서 최소 0%(뉴질랜드)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의 경우, OECD평균은 8.28%로 슬로베니아(19.0%)와 독일(17.1%)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0%임
- OECD의 평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4.31%로 근로자 부담(8.28%)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며, 프랑스(27.7%)에서 가장 높음
 - 그 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등 10개국에서도 20%를 초과하는 높은 비중을 보임
-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합계가 노동사용비용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8개국임

〈표 1-2〉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 가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노동사용비용 ²⁾
벨기에	55.60	21.80	10.80	23.00	71,686
오스트리아	49.40	12.80	14.00	22.60	65,046
독일	49.30	16.00	17.10	16.20	68,735
헝가리	49.00	12.50	14.40	22.20	29,726
프랑스	48.40	10.60	10.20	27.70	61,040
이탈리아	48.20	16.70	7.20	24.30	53,395
핀란드	43.90	18.30	6.50	19.10	57,061
체코	42.60	9.10	8.20	25.40	30,898
스웨덴	42.50	13.20	5.30	23.90	60,951
슬로베니아	42.50	9.60	19.00	13.90	34,549
포르투갈	41.20	13.10	8.90	19.20	36,884
슬로바키아	41.20	7.20	10.20	23.80	26,974
스페인	40.70	12.80	4.90	23.00	50,699
그리스	40.40	7.10	12.70	20.60	40,912
에스토니아	40.00	13.20	1.50	25.40	30,199
터키	38.20	10.60	12.80	14.90	28,264
덴마크	38.10	35.60	2.80	0.00	52,161
네덜란드	37.70	14.60	13.90	9.20	65,303

〈표 1-2〉의 계속

국 가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노동사용비용 ²⁾
룩셈부르크	37.60	15.70	11.00	11.00	67,557
노르웨이	37.00	18.30	7.30	11.50	67,072
폴란드	35.60	6.00	15.30	14.40	27,331
아이슬란드	33.50	26.10	0.40	7.10	53,796
일본	31.90	6.60	12.30	12.90	53,855
미국	31.50	15.70	7.00	8.90	54,977
캐나다	31.50	13.90	6.80	10.80	44,188
영국	31.10	13.00	8.40	9.70	56,317
아일랜드	28.20	14.90	3.60	9.70	46,468
호주	27.70	22.10	0.00	5.60	56,335
스위스	22.20	10.50	5.90	5.90	70,663
한국	21.50	4.60	7.60	9.30	51,466
이스라엘	20.50	8.30	7.40	4.80	34,540
멕시코	19.50	7.80	1.20	10.50	13,821
뉴질랜드	17.20	17.20	0.00	0.00	37,226
칠레	7.00	0.00	7.00	0.00	19,071
OECD 평균	35.95	13.40	8.28	14.31	47,623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포함됨

2) 구매력 기준 달러(USD)표시 금액임

자료: OECD, 『Taxing Wages 2014』, p. 19

다. 2014년 현재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

- 2014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회원국들의 개인 평균세율 (<표 1-3>의 근로자 조세총액)은 25.5%이며, 최고 42.3%(벨기에)에서부터 최저 7.0%(칠레)로 폭 넓게 분포함
- OECD 평균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벨기에 등 총 15개국이며, 평균 미만의 세율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9개국임
 - 벨기에를 비롯해 독일(39.5%)과 덴마크(38.40%)는 35%가 넘는 높은 수준의 개인 평균세율을 기록함

- 반면 칠레와 멕시코(10%), 우리나라(13.4%)는 15% 미만의 낮은 개인 평균세율을 기록함
- OECD 34개 회원국들 중 23개국에서 소득세 부분(평균 15.64%)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부분(평균 9.91%)보다 개인 평균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OECD회원국들의 평균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을 초과하는 국가는 15개국, 평균 미만인 국가는 19개국으로 나타남
 - 슬로베니아(22.10%)와 독일(20.40%)에서 높은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을 보임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등에서도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5.0% 이하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일본, 한국, 폴란드, 칠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7개국에서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소득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 등 8개국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주요국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 가	근로자 조세총액	개인소득세	근로자부담 SSC	총 임금소득 ¹⁾
스위스	17.40	11.10	6.30	66,506
룩셈부르크	29.90	17.60	12.30	60,158
노르웨이	28.80	20.60	8.20	59,355
네덜란드	31.40	16.10	15.30	59,280
독일	39.50	19.10	20.40	57,628
벨기에	42.30	28.30	14.00	55,225
호주	23.40	23.40	0.00	53,170
덴마크	38.40	35.60	2.80	52,161

〈표 1-3〉의 계속

국 가	근로자 조세총액	개인소득세	근로자부담 SSC	총 임금소득 ¹⁾
영국	23.70	14.40	9.30	50,865
오스트리아	34.60	16.50	18.10	50,373
미국	24.80	17.20	7.70	50,075
아이슬란드	28.50	28.10	0.40	50,001
일본	21.70	7.60	14.10	46,884
한국	13.40	5.00	8.30	46,664
스웨덴	24.40	17.40	7.00	46,379
핀란드	30.70	22.60	8.00	46,165
프랑스	28.70	14.60	14.10	44,136
아일랜드	20.50	16.50	4.00	41,958
이탈리아	31.60	22.10	9.50	40,426
캐나다	23.30	15.60	7.70	39,438
스페인	23.00	16.60	6.40	39,029
뉴질랜드	17.20	17.20	0.00	37,226
이스라엘	16.50	8.80	7.70	32,865
그리스	24.90	8.90	16.00	32,467
포르투갈	27.30	16.30	11.00	29,805
슬로베니아	33.20	11.10	22.10	29,758
터키	27.40	12.40	15.00	24,054
폴란드	24.80	7.00	17.80	23,403
헝가리	34.50	16.00	18.50	23,133
체코	23.10	12.10	11.00	23,058
에스토니아	19.70	17.70	2.00	22,537
슬로바키아	22.90	9.50	13.40	20,559
칠레	7.00	0.00	7.00	19,071
멕시코	10.00	8.70	1.40	12,373
OECD 평균	25.54	15.64	9.91	39,526

주: 1) 구매력 기준 달러(USD)표시 금액임

자료: OECD, 『Taxing Wages 2014』, p. 22

라. 2014년 현재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

- 2014년 현재 OECD회원국들의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2자녀 외벌이 가구(평균 26.87%)가 독신 가구(평균

35.95%)보다 조세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각종 공제 등의 세제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룩셈부르크에서는 2자녀 외벌이 가구가 독신 가구보다 20% 이상 조세격차가 낮고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에서는 15% 이상 조세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한국, 터키도 가구형태 간 조세격차 차이가 3%를 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미미함
- 2013년과 2014년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 변화율 차이를 살펴보면, 34개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에서 1%p 미만의 증감률을 보이는 등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1%p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인 국가로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3개국이 있음
 - 칠레에서는 조세격차 변화가 없으며, 1%p 미만의 감소율을 보인 국가로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웨덴과 영국 등 7개국이 있음
- 2013년과 2014년 사이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 변화율을 살펴보면, 34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1%p 미만의 증감률을 보이는 등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리스(-.12%)와 아일랜드(1.1%)에서만 1%p 이상의 변화율을 보임
- 2013년과 2014년 사이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변화율 분석 결과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 4개국에서 독신가구보다 2자녀 가구에서 조세격차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⁵⁾

5) <표 I-4>의 가구 간 차이의 수치가 '0'을 초과하는 경우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 감소율이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감소율보다 높음

〈표 1-4〉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평균임금 기준)

(단위: %, %p)

국 가	2자녀 외벌이 가구 Tax Wedge	독신 가구 Tax Wedge	전년대비 Tax Wedge 변화율		
			2자녀외벌이 가구(a)	독신 가구(b)	가구간 차이 (a-b)
그리스	43.40	40.40	-1.10	-1.20	-0.10
벨기에	40.60	55.60	-0.10	-0.10	0.00
프랑스	40.50	48.40	-0.60	-0.40	0.20
이탈리아	39.00	48.20	0.50	0.40	-0.10
핀란드	38.90	43.90	0.90	0.80	-0.10
오스트리아	38.80	49.40	0.20	0.20	0.00
스웨덴	37.40	42.50	-0.40	-0.50	-0.10
터키	36.80	38.20	0.60	0.60	0.00
스페인	34.90	40.70	0.10	0.00	-0.10
헝가리	34.60	49.00	0.40	0.00	-0.40
독일	33.80	49.30	0.30	0.10	-0.20
에스토니아	32.90	40.00	0.60	0.10	-0.50
노르웨이	32.20	37.00	1.00	-0.30	-1.30
네덜란드	31.90	37.70	0.90	0.70	-0.20
폴란드	30.00	35.60	0.10	0.00	-0.10
포르투갈	29.80	41.20	-0.40	-0.10	0.30
슬로바키아	27.90	41.20	0.30	0.10	-0.20
덴마크	27.20	38.10	-0.30	-0.10	0.20
체코	26.80	42.60	0.70	0.20	-0.50
영국	26.60	31.10	-0.20	-0.30	-0.10
일본	26.30	31.90	0.40	0.30	-0.10
슬로베니아	23.40	42.50	0.20	0.10	-0.10
미국	20.60	31.50	0.20	0.10	-0.10
아이슬란드	20.40	33.50	-0.90	-0.60	0.30
멕시코	19.50	19.50	0.20	0.20	0.00
캐나다	19.20	31.50	0.60	0.50	-0.10
한국	19.00	21.50	0.20	0.10	-0.10
이스라엘	18.10	20.50	1.10	0.20	-0.90
호주	17.50	27.70	0.60	0.30	-0.30
룩셈부르크	15.10	37.60	0.50	0.30	-0.20
아일랜드	9.90	28.20	1.50	1.10	-0.40
스위스	9.80	22.20	0.10	0.10	0.00
칠레	7.00	7.00	0.00	0.00	0.00
뉴질랜드	3.80	17.20	1.30	0.40	-0.90
OECD 평균	26.87	35.95	0.28	0.10	-0.18

자료: OECD, 『Taxing Wages 2014』, p. 24

3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화 분석

- <표 I-5>는 OECD회원국의 2013년과 2014년의 근로자의 평균 연간소득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것임
 - 이 표의 임금은 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장보험료를 제외하기 전의 임금임
 - 동 자료는 OECD각국에서 제공된 최종 평균 임금에 대한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자료를 근로자 1인당 자료로 변형하여 적용한 후 추정 산출한 것임
- 2014년의 평균 명목임금 변동률의 평균은 2.24%로 인플레이션 평균인 1.26%를 상회하고 있으며, 변동률의 범위는 그리스의 -2.9%부터 터키의 8.3%까지로 나타나고 있음
- OECD회원국 평균 실질임금 인상률⁶⁾의 평균은 1.11%이며 변동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에서 2% 사이로 나타남
 - 평균 이상의 인상률을 보인 국가는 14개국이며 평균 이하의 인상률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임
 - 실질임금이 상승한 국가는 에스토니아(5.7%), 아일랜드(3.7%), 슬로바키아(3.7%) 등 26개국임
 - 일본(-1.9%), 포르투갈(-1.0%), 터키(-0.7%), 멕시코(-0.5%), 한국(-0.3%) 등 5개국에서만 실질임금 감소가 나타남
 - 한편,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등 3개국에서는 실질임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정보의 한계로 인해 각 나라마다의 평균 임금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6) 평균 명목임금 변동률에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된 변동률임

- 예를 들어 임원이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임원의 급여는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가 있기도 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1.1%를 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1.4%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나타나고 있음
- OECD국가의 근로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2.24%로 우리나라보다 1.14%p 높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1.11%로 우리나라의 -0.3%보다 1.41%p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1.9%), 터키(-0.7%), 포르투갈(-1.0%), 멕시코(-0.5%) 등 4개국이 있음

〈표 1-5〉 2013년과 2014년의 OECD 회원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화

(단위: 각국의 통화, %)

국가/연도	각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2013년~2014년 사이의 연간변화율			
	2013	2014	명목 임금	인플레이션	세전 실질임금	소득세 평균 변화
호주	77,530	79,689	2.8	2.6	0.2	0.3
오스트리아	41,940	42,573	1.5	1.5	0.0	0.2
벨기에	46,197	46,464	0.6	0.6	0.0	-0.1
캐나다	47,946	49,481	3.2	2.0	1.2	0.6
칠레	6,604,419	7,018,884	6.3	4.8	1.4	0.0
체코	302,403	312,084	3.2	0.3	2.9	0.3
덴마크	393,463	397,484	1.0	0.5	0.5	-0.1
에스토니아	11,732	12,436	6.0	0.5	5.4	0.2
핀란드	42,257	42,910	1.5	1.3	0.3	0.6
프랑스	36,808	37,427	1.7	0.6	1.1	0.4
독일	44,700	45,952	2.8	0.9	1.9	0.1
그리스	20,766	20,168	-2.9	-1.0	2.7	0.0
헝가리	2,933,520	3,009,284	2.6	-0.1	2.7	0.0
아이슬란드	6,672,000	6,856,100	2.8	2.2	0.6	-0.6

〈표 1-5〉의 계속

국가/ 연도	각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2013년~2014년 사이의 연간변화율			
	2013	2014	명목 임금	인플레이션	세전 실질임금	소득세 평균 변화
아일랜드	33,154	34,466	4.0	0.2	3.7	1.2
이스라엘	128,664	130,605	1.5	0.4	1.1	0.1
이탈리아	30,039	30,463	1.4	0.1	1.3	0.5
일본	4,835,595	4,881,994	1.0	2.9	-1.9	0.2
한국	39,360,890	39,781,075	1.1	1.4	-0.3	0.1
룩셈부르크	53,485	54,560	2.0	0.9	1.1	0.4
멕시코	98,491	101,094	3.5	4.0	-0.5	0.2
네덜란드	48,421	48,856	0.9	0.4	0.5	0.1
뉴질랜드	53,234	54,733	2.8	1.2	1.5	0.4
노르웨이	524,330	542,386	3.4	2.1	1.3	-0.4
폴란드	41,652	42,360	1.7	0.1	1.6	0.0
포르투갈	17,640	17,436	-1.2	-0.2	-1.0	-0.2
슬로바키아	10,001	10,342	3.4	0.0	3.4	0.1
슬로베니아	17,673	17,851	1.0	0.4	0.6	0.1
스페인	26,027	26,162	0.5	-0.1	0.6	0.1
스웨덴	398,220	407,974	2.4	-0.1	2.5	0.7
스위스	89,743	90,522	0.9	0.0	0.9	0.1
터키	26,206	28,370	8.3	9.0	-0.7	0.1
영국	25,081	35,633	1.6	1.6	0.0	-0.3
미국	48,774	50,075	2.7	1.7	1.0	0.2
평균	1,857,147	1,892,879	2.24	1.26	1.11	0.16

자료: <http://www.oecd.org/ctp/taxing-wages-20725124.htm>

4

미혼 외벌이 가정과 두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2000년~2014년 사이의 조세격차 변동

-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미혼 외벌이 가정과 두자녀의 외벌이 가정에서 OECD 평균 조세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두 유형의 가정에서 7개의 국가가 5%p 이상의 축소세를 나타냄
- 두 유형의 가정 중 어느 하나의 가정에서 2000년과 2014년 사이 5%p 내외의 감소율을 보인 국가는 10개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등임
-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인 조세격차 감소 방향과는 달리 해당 기간 동안 조세격차가 확대되었음
 - 단,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음

가. 2000년~2014년 사이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 OECD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36.7%에서 2014년 36%로 0.7%p 축소됨
 - 14년간 21개 회원국에서 조세격차 축소가 있었음
 - 이스라엘에서 9%p 축소로 가장 큰 조세격차 축소가 있었고 스웨덴에서도 7%p 이상, 덴마크와 헝가리 두 국가에서도 5%p 이상의 조세격차 축소가 있었음
 -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는 조세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미혼 외벌이 가정 유형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16.4%에서 2014년 21.5%로 5.1%p만큼 조세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상승률은 2000년 대비 31.1%에 이르고 있음
 - 상승률 절대값은 5.1%p로 상승국가 중 일본, 멕시코에 이어 3위를 보임
 - 2000년 대비 2014년의 상승률은 31.1%로 상승국가중 2위의 상승률을 보임
 - 2014년에도 2013년에 비하여 0.2%p가 상승함

〈표 1-6〉 OECD 각국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단위: %)

국가/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31.0	28.3	27.7	26.9	26.7	26.8	26.7	27.2	27.4	27.7
오스트리아	47.3	48.5	48.8	49.0	47.9	48.2	48.5	48.8	49.2	49.4
벨기에	57.1	55.5	55.6	55.9	55.7	55.9	56.1	56.0	55.7	55.6
캐나다	32.9	31.8	31.3	31.3	30.5	30.4	30.7	30.8	31.0	31.5
칠레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체코	42.6	42.5	42.9	43.4	42.0	42.1	42.6	42.5	42.5	42.6
덴마크	44.1	41.0	41.1	40.9	39.5	38.3	38.4	38.5	38.2	38.1
에스토니아	41.3	39.0	39.0	38.4	39.2	40.1	40.3	40.4	39.9	40.0
핀란드	47.5	44.0	43.9	43.8	42.5	42.3	42.3	42.5	43.1	43.9
프랑스	50.4	49.7	49.7	49.8	49.8	49.9	50.0	50.1	48.9	48.4
독일	52.9	52.3	51.8	51.3	50.8	49.1	49.7	49.6	49.2	49.3
그리스	39.1	42.3	42.1	41.5	41.3	40.1	43.2	42.9	41.6	40.4
헝가리	54.7	51.9	54.5	54.1	53.1	46.6	49.5	49.5	49.0	49.0
아이슬란드	28.8	31.8	30.5	30.9	30.5	33.4	34.1	33.8	34.1	33.5
아일랜드	28.9	23.0	22.2	22.3	24.7	25.8	25.8	25.9	27.1	28.2
이스라엘	29.6	24.3	24.9	22.9	21.3	20.7	20.8	20.4	20.4	20.5
이탈리아	47.1	46.1	46.4	46.6	46.8	47.2	47.6	47.7	47.9	48.2
일본	24.7	28.8	29.3	29.5	29.2	30.2	30.8	31.3	31.6	31.9
한국	16.4	18.2	19.7	20.0	19.5	20.1	20.5	21.0	21.3	21.5
룩셈부르크	37.1	35.3	36.3	34.7	33.9	34.3	36.3	36.0	37.2	37.6
멕시코	12.4	15.0	15.9	15.1	15.3	15.5	18.7	19.0	19.2	19.5
네덜란드	40.0	38.4	38.7	39.2	38.0	38.1	38.0	38.8	37.0	37.7
뉴질랜드	19.4	20.4	21.1	20.5	18.1	17.0	15.9	16.4	16.9	17.2
노르웨이	38.6	37.4	37.5	37.6	37.3	37.3	37.6	37.4	37.3	37.0
폴란드	38.2	39.0	38.2	34.7	34.1	34.2	34.3	35.5	35.6	35.6
포르투갈	37.3	37.5	37.3	36.9	36.5	37.1	38.0	37.6	41.4	41.2
슬로바키아	41.9	38.3	38.4	38.8	37.7	37.9	38.8	39.6	41.1	41.2
슬로베니아	46.3	45.3	43.3	42.9	42.2	42.5	42.6	42.5	42.4	42.5
스페인	38.6	39.1	39.0	38.0	38.3	39.7	40.0	40.6	40.7	40.7
스웨덴	50.1	47.8	45.3	44.8	43.2	42.8	42.8	42.9	43.0	42.5
스위스	22.9	22.1	22.4	21.9	22.0	22.1	22.3	22.1	22.1	22.2
터키	40.4	42.7	42.7	39.9	37.4	37.4	37.4	37.4	37.6	38.2
영국	32.6	34.0	34.1	32.8	32.4	32.6	32.5	32.1	31.4	31.1
미국	30.4	29.9	30.3	29.8	30.1	30.5	29.7	29.8	31.4	31.5
평균	36.7	36.1	36.1	35.7	35.1	35.1	35.6	35.7	35.9	36.0
EU평균	43.6	42.4	42.3	41.9	41.4	41.2	41.8	41.9	42.0	42.1

자료: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tax-burden-trends-previous-years.htm>

나. 2000년~2014년 사이의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OECD회원국들의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27.7%에서 2014년 26.9%로 소폭 축소되었음
 - 뉴질랜드가 9.8%p 축소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헝가리와 아일랜드가 9%p 축소,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스웨덴이 5%p대의 큰 상승률을 나타냄
 - 그러나 아일랜드는 2009년을 기점으로 매년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도 전년 대비하여 1.5%p 확대되는 등 확대추세에 있음
 - 조세격차가 확대된 국가는 13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임
- 반면, 우리나라는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 유형에서 2000년 대비 15.7%에서 19.0%로 3.3%p의 조세격차 확대가 있었으며 상승률은 2000년 대비 20%에 이르고 있음
 - 상승률 절대값은 3.3%p로 상승국가중 7위임
 - 2000년 대비 2014년의 상승률은 21.5%로 상승국가중 4위에 해당함
 - 다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 유형의 가정에서 2013년보다 의미 있는 확대는 나타나지 않음

〈표 1-7〉 OECD 각국의 두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단위: %)

국가/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23.4	17.1	14.9	14.9	14.2	14.6	15.2	16.5	16.9	17.5
오스트리아	35.2	37.0	37.7	38.2	36.0	36.4	37.3	37.9	38.6	38.8
벨기에	42.6	40.3	40.3	40.6	40.4	41.2	41.4	41.3	40.7	40.6
캐나다	23.1	21.5	19.7	19.0	16.6	17.7	18.1	18.4	18.6	19.2
칠레	6.1	6.1	6.1	6.2	6.2	6.3	7.0	7.0	7.0	7.0

〈표 1-7〉의 계속

국가/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체코	22.0	26.0	21.3	20.8	20.9	21.1	26.8	26.1	26.1	26.8
덴마크	30.7	29.1	29.4	29.3	28.7	27.2	27.6	27.8	27.5	27.2
에스토니아	32.8	27.3	29.5	26.8	29.8	31.0	31.8	32.4	32.4	32.9
핀란드	40.3	37.9	38.2	38.4	37.2	37.1	37.2	37.3	38.0	38.9
프랑스	41.3	42.4	42.5	42.5	42.7	42.9	43.0	43.1	41.1	40.5
독일	35.3	35.8	35.5	35.1	33.5	32.6	33.8	34.0	33.6	33.8
그리스	40.7	43.7	42.4	41.8	41.6	40.4	44.2	43.9	44.5	43.4
헝가리	43.9	41.1	44.0	43.9	43.2	36.7	33.0	34.2	34.2	34.6
아이슬란드	13.1	19.8	19.1	18.4	15.0	19.2	21.3	19.6	21.3	20.4
아일랜드	15.5	1.9	4.0	3.8	2.8	4.7	5.6	6.1	8.4	9.9
이스라엘	25.5	21.1	21.9	20.0	18.3	17.5	17.1	16.6	17.0	18.1
이탈리아	39.3	36.6	35.7	36.6	36.9	37.8	38.5	38.8	38.5	39.0
일본	21.0	23.6	23.8	24.0	23.6	22.1	23.1	25.7	26.0	26.3
한국	15.7	16.8	17.5	17.8	17.1	17.8	18.0	18.5	18.9	19.0
룩셈부르크	13.5	11.4	12.7	11.2	11.1	11.6	13.7	13.6	14.6	15.1
멕시코	12.4	15.0	15.9	15.1	15.3	15.5	18.7	19.0	19.2	19.5
네덜란드	29.9	29.1	29.6	30.3	29.7	30.8	31.1	32.4	31.0	31.9
뉴질랜드	13.6	0.5	0.8	0.7	-0.3	-0.9	-1.1	0.6	2.4	3.8
노르웨이	28.4	30.0	30.5	30.8	30.6	30.7	31.2	31.1	31.2	32.2
폴란드	33.3	37.4	32.4	28.4	28.4	28.4	28.4	29.6	29.9	30.0
포르투갈	30.2	28.3	27.7	26.3	25.4	26.3	27.3	27.9	30.2	29.8
슬로바키아	30.8	23.0	23.9	25.3	22.8	22.9	24.9	25.8	27.6	27.9
슬로베니아	25.0	24.2	24.5	23.1	22.1	22.9	23.2	23.2	23.2	23.4
스페인	32.3	33.6	32.9	32.0	32.4	34.0	34.3	34.7	34.8	34.9
스웨덴	44.3	41.6	39.4	39.2	37.7	37.2	37.4	37.6	37.9	37.4
스위스	11.7	11.0	11.4	9.2	10.1	10.3	10.3	10.1	9.7	9.8
터키	40.4	42.7	42.7	38.7	36.0	35.9	35.9	36.0	36.2	36.8
영국	27.8	28.0	28.4	26.9	26.2	26.5	26.4	27.5	26.8	26.6
미국	20.6	17.8	18.5	17.0	17.2	18.2	18.3	18.6	20.4	20.6
평균	27.7	26.4	26.3	25.7	25.0	25.1	25.9	26.3	26.6	26.9
EU 평균	32.7	31.2	31.0	30.5	30.0	30.0	30.8	31.2	31.4	31.6

자료: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tax-burden-trends-previous-years.htm>

II OECD - Consumption Tax Trends 2014⁷⁾

- OECD는 2014년 12월 10일 『소비세 동향 2014』(Consumption Tax Trends 2014)를 발간함
 - 본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의 소비세 현황 및 추세,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소비세의 종류 및 세율, 세수 비중 등을 5개의 주요 분야별로 세부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제1장: 소비세제(Taxing consumption)
 -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구조(Value added taxes: Rates and structure)
 - 제3장: 부가가치세 성과분석(Measuring performance of VAT)
 - 제4장: OECD 회원국의 물품세⁸⁾(Selected excise duties in OECD countries)
 - 제5장: 자동차관련 세제(Taxing vehicles)

1 소비세제(Taxing consumption)

가. 소비세의 종류 및 변천

- OECD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같은 재화·용역에 대한 일반적 조세 및 물품세와 같이 특정 재화·용역에 대한 조세로 구분하고 있음

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Published on December 10, 2014

8) Excise Tax로 우리나라의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그 뜻 그대로 물품세로 번역함

- OECD는 소비세를 “재화의 생산, 판매, 이전, 리스, 인도 및 용역 제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일반소비세’)으로서, 부가가치세, 판매세 및 기타 일반 거래세 등을 포함함
 - 물품세, 관세 및 기타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물품세 등’)
- 소비세는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수입 중 평균적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소비세 세수 중 약 3분의 2 정도는 일반소비세에서 충당되며, 나머지는 물품세로부터 얻어짐
- 일반소비세의 전체 세수 대비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전체 세수 대비 10% 미만이나,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 등은 30%p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소비세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년 11.9%에서 2012년 20.2%로 약 8.3%p 증가함
 - OECD 전체 34개 회원국 중 28개국에서 일반소비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1〉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단위: %)

국가/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호주	7.4	6.7	7.9	8.7	12.0	13.4	14.3	13.7	12.8	12.4
오스트리아	18.7	19.8	21	18.6	18.8	18.8	19.0	18.9	18.6	18.6
벨기에	21.1	16.2	15.7	15.2	16.2	16.1	16.2	16.4	16.1	15.9
캐나다	17.8	12.5	13.2	14.0	14.2	14.8	13.4	14.0	14.4	14.6
칠레	-	-	-	40.6	41.8	37.8	42.5	38.7	37.0	37.7
체코	-	-	-	16.6	18.3	19.1	20.4	20.5	20.6	20.9

〈표 II-1〉의 계속

국가/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덴마크	10.1	17.3	20.2	19.3	19.3	19.7	21.2	20.6	20.7	20.6
에스토니아	-	-	-	26.5	27.3	28.3	24.8	25.8	26.4	26.7
핀란드	18.5	15.6	18.3	17.4	17.4	19.9	20.5	20.4	20.9	21.1
프랑스	23.3	23.4	20.0	17.7	17.1	17.3	16.9	16.9	16.5	16.1
독일	16.5	14.6	15.8	17.4	18.4	18.0	20.1	20.0	19.7	19.4
그리스	10.3	18.3	17.2	23.0	21.5	22.2	22.3	24.3	23.4	22.2
헝가리	-	-	-	19.4	26.1	28.1	28.0	29.4	29.4	30.0
아이슬란드	16.7	28.6	33.0	31.7	28.5	27.3	23.7	22.7	22.4	22.8
아일랜드	5.7	14.7	20.6	21.1	23.0	24.8	22.7	22.8	21.4	21.7
이스라엘	-	-	-	30.1	26.6	27.7	29.9	30.2	30.0	30.0
이탈리아	12.9	14.3	14.5	13.8	15.4	14.6	13.1	14.6	14.5	13.8
일본	0.0	0.0	0.0	5.4	9.1	9.5	9.6	9.6	9.4	9.2
대한민국	-	12.7	21.1	17.8	17.0	17.4	17.3	17.6	17.1	17.2
룩셈부르크	12.4	12.1	12.8	14	14.3	16.4	16.8	16.8	17.4	18.2
멕시코	-	-	15.9	16.9	18.7	19.1	19.7	20.5	19.0	19.0
네덜란드	12.4	14.4	16.2	15.6	17.5	19.6	18.3	18.7	18.0	17.9
뉴질랜드	7.7	9.0	10.4	22.8	24.9	23.8	27.6	30.7	30.9	30.0
노르웨이	21.5	20.5	18.2	21.2	19.8	18.2	18.7	18.6	18.0	18.2
폴란드	-	-	-	17.1	21.2	22.9	22.9	24.0	24.5	22.1
포르투갈	-	11.2	12.6	23.6	24.8	27.1	23.1	25.0	25.3	26.4
슬로바키아	-	-	-	20.8	20.4	25.0	23.3	22.4	23.7	21.3
슬로베니아	-	-	-	29.5	23.7	22.2	21.9	22.0	22.4	22.0
스페인	22.2	15.3	14.7	15.9	17.6	17.8	12.6	16.8	16.5	16.6
스웨덴	10.4	12.0	14.0	19.4	17.0	18.5	21.0	21.6	21.6	21.4
스위스	10.6	8.7	10.7	12.1	13.1	13.5	12.3	12.8	12.8	13.0
터키	-	-	23.3	31.1	24.2	21.8	20.0	21.7	21.8	20.8
영국	5.9	8.9	15.9	19	18.1	18.6	16.6	18.8	20.5	20.8
미국	4.8	7.0	7.9	8.0	7.6	8.1	8.4	8.3	8.2	8.0
평균	11.9	13.4	15.8	19.5	19.7	20.2	20	20.5	20.3	20.2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36

- 일반소비세의 GDP 대비 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나,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GDP의 약 3% 이하이나, 덴마크, 헝가리 및 뉴질랜드의 경우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은 1965년 3.2%에서 2012년 6.8%로 약 3.6% 증가함
 - 2000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이 확대된 국가는 10개국, 축소된 국가가 6개국으로 분석되고 있음⁹⁾
 - 확대된 국가는 체코, 핀란드, 헝가리,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및 영국이며, 축소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으로 나타남

〈표 II-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단위: %)

국가/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호주	1.5	1.7	2.2	2.5	3.7	4.0	3.7	3.5	3.4	3.4
오스트리아	6.3	7.2	8.5	7.6	7.9	7.7	7.8	7.7	7.6	7.8
벨기에	6.5	6.3	6.9	6.5	7.1	7.0	6.8	7.0	6.9	7.0
캐나다	4.5	3.9	4.2	4.9	4.9	4.8	4.2	4.3	4.4	4.5
칠레	-	-	-	7.5	7.9	7.8	7.3	7.6	7.9	8.1
체코	-	-	-	5.8	6.0	6.6	6.6	6.7	6.9	7.1
덴마크	3.0	6.5	9.2	9.2	9.3	9.8	9.8	9.6	9.7	9.7
에스토니아	-	-	-	9.6	8.4	8.6	8.7	8.6	8.4	8.6
핀란드	5.5	5.6	7.2	7.7	8.0	8.4	8.4	8.3	8.8	9.0
프랑스	7.8	8.2	8.4	7.4	7.4	7.4	7.0	7.0	7.1	7.1
독일	5.2	5	5.7	6.3	6.7	6.1	7.2	7.0	7.0	7.1
그리스	1.7	3.4	4.2	6.3	7.1	7.0	6.6	7.6	7.6	7.5
헝가리	-	-	-	8.0	10.1	10.3	10.9	11	10.8	11.5
아이슬란드	4.3	8.3	9.1	9.6	10.3	10.8	7.6	7.6	7.7	8.1

9) OECD 보고서에서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음

〈표 11-2〉의 계속

국가/ 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아일랜드	1.4	4.1	6.9	6.7	7.1	7.3	6.1	6.1	5.7	5.9
이스라엘	-	-	-	10.6	9.5	9.5	8.9	9.2	9.3	8.9
이탈리아	3.2	3.5	4.7	5.3	6.2	5.7	5.5	6.1	6.0	5.9
일본	0.0	0.0	0.0	1.4	2.4	2.6	2.6	2.6	2.7	2.7
대한민국	-	1.8	3.2	3.4	3.7	3.9	4.1	4.1	4.1	4.3
룩셈부르크	3.3	3.8	4.8	5.0	5.3	6.3	6.5	6.4	6.5	7.0
멕시코	-	-	2.4	2.5	3.1	3.4	3.4	3.8	3.7	3.7
네덜란드	3.8	5.5	6.5	6.1	6.4	7.1	6.5	6.8	6.5	6.5
뉴질랜드	1.8	2.5	3.2	8.2	8.2	8.7	8.5	9.5	9.7	9.9
노르웨이	6.4	8.0	7.8	8.7	8.4	7.9	7.8	7.9	7.7	7.7
폴란드	-	-	-	6.2	6.9	7.5	7.2	7.5	7.8	7.1
포르투갈	-	2.1	3.0	6.8	7.6	8.2	6.8	7.5	8.1	8.2
슬로바키아	-	-	-	8.2	6.9	7.7	6.6	6.2	6.7	6.0
슬로베니아	-	-	-	11.3	8.7	8.4	7.9	8.1	8.1	8.0
스페인	3.2	2.7	4.0	5.0	5.9	6.2	3.8	5.3	5.2	5.3
스웨덴	3.3	4.7	6.3	8.8	8.3	8.6	9.2	9.3	9.2	9.0
스위스	1.8	2.0	2.6	3.1	3.6	3.6	3.3	3.4	3.5	3.5
터키	-	-	2.7	5.2	5.8	5.3	4.9	5.7	6.1	5.8
영국	1.7	3.0	5.6	6.1	6.3	6.3	5.4	6.2	6.9	6.9
미국	1.1	1.7	1.9	2.1	2.2	2.1	2.0	2.0	2.0	1.9
평균	3.2	4.1	5.0	6.6	6.7	6.8	6.5	6.7	6.7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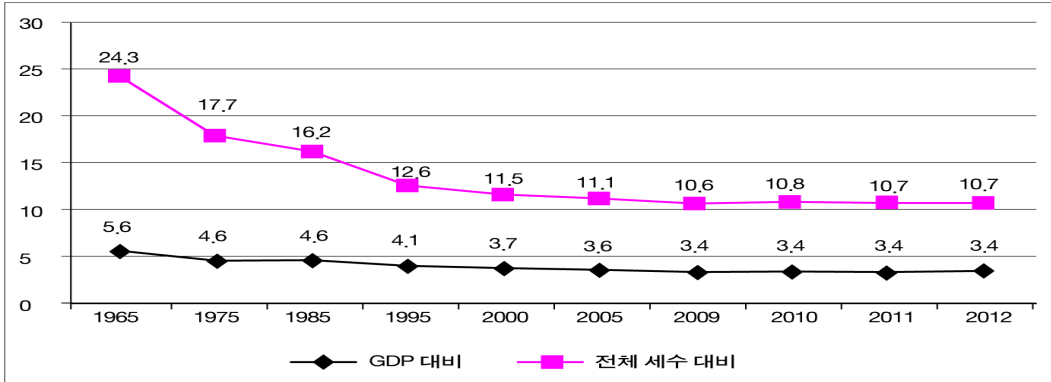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35.

□ 특정 재화·용역에 대한 물품세 등의 경우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GDP 대비 비중은 1965년 5.6%에서 2012년 3.4%로,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은 1965년 24.3%에서 2012년 10.7%로 각각 하락함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물품세 등의 비중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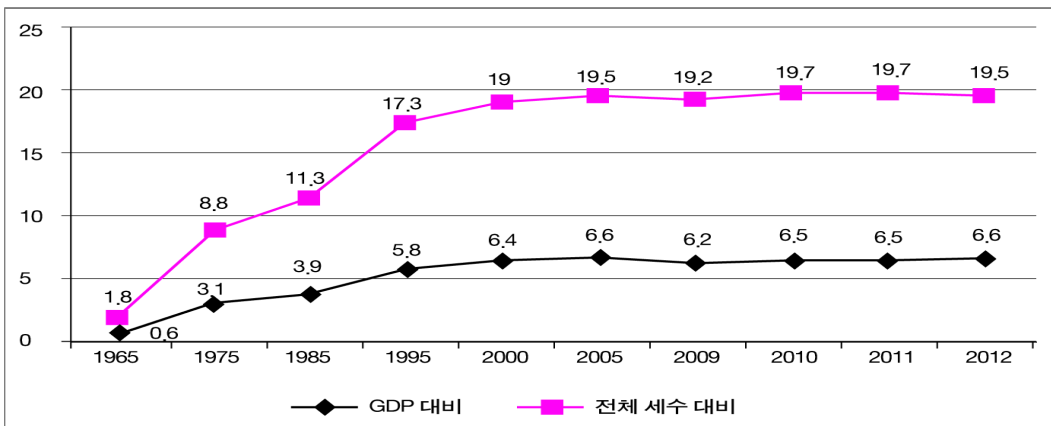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p. 37~38 재구성

- 일반소비세 중 특히 부가가치세(VAT)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물품세 등의 비중 감소를 VAT 증가로 상쇄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VAT는 현재 34개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33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GDP 대비 6.6%, 전체 세수 대비 19.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음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VAT 비중 평균

(단위: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p. 39~40 재구성

나. 소비세 특징

- VAT는 일반적으로는 ‘최종소비세’, ‘거래단계세’, ‘중립성’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
 - 최종소비세(“tax on final consumption”)란 VAT의 최종적 담세자는 사업체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개인이며, 사업자는 거래 단계마다 VAT를 거래징수하지만 실제로 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임
 - 단계별 거래징수(“the staged collection process”)란 거래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 VAT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산출물(output)과 투입물(input)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VAT가 적용됨
 - 중립성(Neutrality)이란 최종소비자를 제외하고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재화의 종류, 공급망 구조, 인도(delivery) 방식 등에 무관하게 VAT가 중립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임
-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는 최종판매가액에 대해 한번만 과세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VAT 징수 효과와 동일하나 실제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불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음
 - 소매판매세는 판매망의 최종 단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소매판매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소매확인증(“resale certificate”)을 제시함
 - 소매판매세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며, 이론적으로는 소매판매세와 VAT는 모두 최종판매가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금 징수 측면에 있어서 소매판매세는 VAT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함
 - 각 거래단계마다 징수하는 VAT와는 달리 소비판매세는 최종 단계에서만 징수하기 때문에, 소규모 소매상(retailer)들의 납세 협조나 증빙 제출 등이 미진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클 수 있음
 -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수가 유입되는 VAT에 비해 소매판매세는 세수의

조기 확보에 다소 불리함

-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소매판매세를 소비세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연방세가 아닌 주세(state tax)로 운영되고 있음

다. VAT 및 국제 거래 - 소비지국 과세원칙("the destination principle")

- 국제거래의 경우 VAT의 적용 기준과 관련한 원칙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및 ‘원천지국 과세원칙(origin principle)’을 들 수 있음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면 VAT는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만 과세되는 반면에 원천지국 과세원칙하에서는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여러 국가들에서 VAT가 과세됨
 - 소비지국 과세원칙하에서는 수출거래는 VAT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VAT가 적용되어서 국제거래에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반면, 원천지국 과세원칙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VAT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는 일종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공급망의 구조 및 지역적 소재 등에 따라 과세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제거래에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관계로 이론 및 실무적 관점 모두에서도 소비지국 원칙이 선호되며 실제로 OECD 및 WTO 규범 등 국제 기준상으로도 소비지국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일반적으로 용인된 국제기준이기는 하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수출상품에 대해 VAT를 면제하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VAT를 탈루할 위험이 존재함
 - 최종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마다 제도적 특성이

일부 상이하여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는데, 일부 소액 상품의 수입 거래에 대한 면세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함
 - 유형의 자산(tangible property)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당해 재화가 소재한 장소를 ‘재화의 공급장소’로 간주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화의 소비지국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기준임
 - 따라서 재화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지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며 수입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 통상적으로 수입국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상품 수입에 대해서 VAT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해당 제도를 운영중이며 소액 면제 기준점은 각국마다 상이함(예: 덴마크의 경우 9미국달러, 호주는 650미국달러)
 - 이러한 제도는 소액 수입거래에 대한 VAT 부과로 인한 세수 확보 정도와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각 국가마다 적절한 선에서 결정한 것임
 - 최근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소액 면제제도의 적용 거래가 늘어나면서 VAT 세수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소액 면제 기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거래의 특성상 해당 장소를 일률적 기준으로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대다수 국가들의 VAT 규정상 용역(service)의 범위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화가 아닌 거래’를 용역으로 본다는 식으로 보충적(negatively)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무형자산 거래도 대부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용역 거래에 대한 공급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음

- 용역 수행 장소(place of performance of the service), 공급자의 실제 소재 장소(place of establishment of actual location of the supplier), 소비자의 거주지 또는 실제 소재 장소(the residence or the actual location of the consumer) 등
- 최근 용역의 국제거래 및 무형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용역의 공급장소 결정이 복잡해지고 국가간 용역에 대한 VAT 과세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OECD에서는 VAT에 대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을 준비하고 있음
 - 용역 및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2015년 내에 기준 작성이 마무리될 예정임

라. VAT 탈루 문제(VAT fraud issue)

- VAT 납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세수의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VAT 탈루 위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함
 - VAT 납세 의무 미이행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각 국가들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EU의 경우 VAT 조세격차¹⁰⁾가 2000년~2006년 동안에는 평균 약 12%, 2011년에는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기행위에 의한 VAT 탈루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입자납부제도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논의·실행되고 있음
 - 물품 판매 이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이른바 폭탄업체(missing trader)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음
 - 주로 고가의 재화 거래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등

10) 법규정에 따라 징수되었을 경우의 세수와 실제 확보된 세수 간의 차이

용역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사기 탈루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매입자납부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사기 탈루 거래에 노출되기 쉬운 품목들을 위주로 국내 사업자 간의 B2B 거래에 활용되고 있음
- 또한 VAT 등 간접세 분야에서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여 사기 탈루 거래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2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구조

가. VAT 세율의 변천

- 각 국가들의 VAT 표준세율의 변화는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상승폭이 커져서 그 결과 현재 VAT 표준세율은 OECD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975년~2000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국가들이 처음으로 VAT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동 기간 중 OECD 회원국의 평균 VAT 표준세율은 15.6%에서 18%로 약 2.4%p 상승하였음
- 2000년~2009년: 동 기간 중에는 VAT 표준세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들이 VAT 표준세율을 15~22% 사이에서 유지하였음
- 2009년~2014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능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이 VAT 표준세율을 크게 인상하였음
 - 동 기간 중 21개 국가들이 최소 1회 이상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OECD 회원국의 평균 VAT 표준세율은 2009년 1월 17.6%에서 2014년 1월 기준 19.1%으로 약 1.5%p 상승하였음

- 2014년 현재 캐나다 및 일본은 각각 5% 및 8%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25%, 헝가리는 27%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II-3〉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 추이(1975년~2014년)

(단위: %)

국가/연도	도입 연도	해당 연도별 세율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호주	2000	-	-	-	-	-	-	10.0	10.0	10.0
오스트리아	1973	16.0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벨기에	1971	18.0	16.0	19.0	19.0	20.5	21.0	21.0	21.0	21.0
캐나다	1991	-	-	-	-	7.0	7.0	7.0	5.0	5.0
칠레	1975	20.0	20.0	20.0	16.0	18.0	18.0	19.0	19.0	19.0
체코	1993	-	-	-	-	22.0	22.0	19.0	20.0	21.0
덴마크	1967	15.0	20.25	22.0	22.0	25.0	25.0	25.0	25.0	25.0
에스토니아	1991	-	-	-	-	18.0	18.0	18.0	20.0	20.0
핀란드	1994	-	-	-	-	22.0	22.0	22.0	22.0	24.0
프랑스	1968	20.0	17.6	18.6	18.6	20.6	20.6	19.6	19.6	20.0
독일	1968	11.0	13.0	14.0	14.0	15.0	16.0	16.0	19.0	19.0
그리스	1987	-	-	-	18.0	18.0	18.0	18.0	19.0	23.0
헝가리	1988	-	-	-	25.0	25.0	25.0	25.0	25.0	27.0
아이슬란드	1990	-	-	-	22.0	24.5	24.5	24.5	25.5	25.5
아일랜드	1972	19.5	20.0	23.0	23.0	21.0	21.0	21.0	21.0	23.0
이스라엘	1976	-	12.0	15.0	15.0	17.0	17.0	17.0	16.0	18.0
이탈리아	1973	12.0	14.0	18.0	19.0	19.0	20.0	20.0	20.0	22.0
일본	1989	-	-	-	3.0	3.0	5.0	5.0	5.0	5.0
대한민국	197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룩셈부르크	1970	10.0	10.0	12.0	12.0	15.0	15.0	15.0	15.0	15.0
멕시코	1980	-	10.0	15.0	15.0	10.0	15.0	15.0	16.0	16.0
네덜란드	1969	16.0	18.0	19.0	18.5	17.5	17.5	19.0	19.0	21.0
뉴질랜드	1986	-	-	-	12.5	12.5	12.5	12.5	12.5	15.0
노르웨이	1970	20.0	20.0	20.0	20.0	23.0	23.0	25.0	25.0	25.0
폴란드	1993	-	-	-	-	22.0	22.0	22.0	22.0	23.0
포르투갈	1986	-	-	-	17.0	17.0	17.0	19.0	20.0	23.0
슬로바키아	1993	-	-	-	-	25.0	23.0	19.0	19.0	20.0
스페인	1986	-	-	-	12.0	16.0	16.0	16.0	16.0	21.0

〈표 II-3〉의 계속

국가/연도	도입 연도	해당 연도별 세율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스웨덴	1969	17.65	23.46	23.46	23.46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995	-	-	-	-	6.5	7.5	7.6	7.6	8.0
터키	1985	-	-	10.0	10.0	15.0	17.0	18.0	18.0	18.0
영국	1973	8.0	15.0	15.0	15.0	17.5	17.5	17.5	17.5	20.0
평균		15.6	16.1	17.3	16.7	17.7	18.0	17.8	18.0	19.1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60 일부 발췌

- VAT 경감세율의 경우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VAT 표준세율은 높이면서 경감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은 잠재적인 VAT 세수의 손실 및 부(富)의 재분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VAT 표준세율이 높아질수록 VAT 경감세율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의 손실 비중이 커지게 됨
- 특정 품목에 대하여 VAT를 경감해 주는 것은 사회적 평등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이 크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함

나. VAT 면세(Exemptions)

- VAT 면세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면세대상이나 제도의 세부내용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이 면세제도를 적용함
- 면세 적용 품목은 주로 보건·의료, 공공재, 운수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각 국가마다의 전통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면세제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함

- VAT 면세는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부담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전한 비과세(absence of taxation)와는 차이가 있음
- 사업자들 간에 면세거래의 단계가 늘어날수록 매입세액불공제 규모가 누적되는 효과(cascading effect)가 커져,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 사업자에 대한 VAT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 목적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다수의 국가들은 이외에도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매입 재화 등을 면세사업에 이용하거나, 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VAT 과세대상 사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대다수의 국가들은 재화 및 용역 항목의 성격에 비춰 볼 때 최종 소비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예: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다만,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및 스위스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을 가하는 근거로는 행정비용 절감, 조세탈루 근절, 최종소비 행위와 유사한 거래 등을 들 수 있음
 - 업무용 및 사적사용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용역 거래의 경우 이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기도 함
 - 부정행위를 통한 VAT 탈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음
 - 접대비 등과 같이 “소비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라.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의무부과 기준점

-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VAT 거래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
 - OECD 회원국 33개¹¹⁾ 중 28개국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매출세액 거래징수 의무를 면제함
 - 소규모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점(threshold)을 설정·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기준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의무 모두를 면제하는 방식
 - 기준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과되, 사업규모가 기준점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거래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
- 소규모 판정 기준점의 수준은 각 OECD 회원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음
 - 기준점의 크기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면 높은 수준의 기준점 국가가 14개국, 낮은 수준의 기준점 국가가 14개국이며 5개 국가는 면제 기준점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세하고 있음

〈표 II-4〉 소규모 판정 기준점의 수준에 따른 국가 구분

유형	기준점의 크기	해당 국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점	USD 30,000 초과	14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준점	USD 1,500 ~ USD 30,000	14개 국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일반적 면제 기준점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	N/A	5개 국가: 칠레,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터키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51 재구성

11) 회원국 34개국 중 미국을 제외

- 소규모 판정 기준점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OECD 회원국 간에 합치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비용 경감 및 경쟁환경 왜곡 가능성이란 상충관계를 적절히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활한 납세협력이 어렵고 의무 미이행 가능성도 높은 반면에 이들로부터의 세수확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징수의무 부과 면제는 행정비용 부담의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임
 -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징수의무 면제는 상대적으로 일반 사업자를 차별하게 될 수도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의 성장 동기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환경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음

마. 기타 VAT 면제 및 거래징수 관련 특칙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VAT 면제 및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여행자의 물품 구매 시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면세 허용 기준점의 크기 등 세부 규정은 각 OECD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적용하여 매입자 스스로 VAT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특히 용역 및 무형자산의 국제 거래에 있어 매입자납부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단, 일본 제외)
 - 국내 거래에 있어서도 VAT 사기 포탈의 우려가 많은 품목 위주로 매입자납부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 성과분석

가. VRR의 계산

- OECD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성과분석은 부가가치세 세수 비율(VAT Revenue Ratio, VRR)을 이용함
 - ‘C-효율성’(C-Efficiency)은 부가가치세를 GDP로 나누어 계산하고, 모든 소비에 대해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C-효율성’(C-Efficiency)을 달성함
 - 이러한 ‘C-효율성’ 개념을 기초로 하여, VRR은 실제 부가가치세수를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잠재적 부가가치세수로 나누어 계산함
 - 잠재적 부가가치세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출을 포함하고, 면세 대상이나 비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VRR은 부가가치세 체계가 경감세율 및 면제 등이 없는 순수한 부가가치세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우며, 모든 소비에 균일하고 효과적으로 징수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됨
 -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있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VRR이 1 이상이 가능함
- OECD는 VRR 분석으로 잠재적 부가가치세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나라별 행정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VRR은 비과세와 감면, 조세회피 등에 따른 세수 분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함
 - VRR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원잠식과 행정관리로 설명되나, 부가가치세 수입을 분석하여 행정을 개선하여 추가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VRR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잠재적 부가가치세수는 이를 측정하는 표준모형이 없어 이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최종소비지출을

대용치로 사용함

- OECD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제이므로,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은 이에 가장 근접하다고 봄
- 최종소비지출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지출주체에 따라 민간, 정부, 비영리단체로 구분함

〈표 II-5〉 VRR의 계산

$$VRR = \frac{VR}{(FCE - VR) \times r}$$

VR = 실제 부가가치세수 (actual VAT revenues)

FCE = 최종 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Item P3 in National Accounts))

r = 표준 부가가치세율(standard VAT rate)

- 다만, OECD는 잠재적 부가가치 세율과 최종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않고 VRR을 측정한다고 설명함
 - 잠재적 부가가치세 세율으로 사용하는 최종소비지출의 민간부문은 과세대상의 분류와 내재가치의 처리가 VAT체계와 차이가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내재적 가치(귀속임대료)와 공공서비스를 포함함
 - 국민계정에서 일반정부부문의 최종소비지출은 정부지출의 최종 수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를 최종 소비자로 간주하여 측정됨
 -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제처리되어 세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최종소비지출에는 포함됨

나. OECD 회원국의 VRR

-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연도별 VRR은 다음과 같음
 - 1976년부터 2012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VRR은 0.51~0.59으로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VRR 수치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호주와 포르투갈의 2012년 VRR은 0.47로 동일한 반면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23%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OECD 회원국(회원국의 2/3)의 VRR은 0.45와 0.65사이이며 부가가치세율(캐나다는 5%,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은 25%)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룩셈부르크(1.13)와 뉴질랜드(0.96)의 2012년 VRR 추정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멕시코(0.31)와 그리스(0.37)의 2012년 VRR 추정치는 상당히 낮음
 - 즉, 그리스와 멕시코의 잠재적 부가가치 세수는 룩셈부르크나 뉴질랜드에 비해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표 II-6〉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2005년~2012년)

(단위: %)

국가/연도	2012 VAT	1976	1984	1988	1992	2000	2006	2007	2009	2012	2006~2012
호주	10.00						0.54	0.54	0.51	0.47	-0.07
오스트리아	20.00	0.66	0.64	0.62	0.61	0.61	0.57	0.58	0.58	0.59	0.02
벨기에	21.00	0.56	0.49	0.52	0.49	0.50	0.52	0.51	0.47	0.48	-0.04
캐나다	5.00				0.44	0.50	0.47	0.51	0.49	0.48	0.01
칠레	19.00				0.63	0.64	0.64	0.67	0.59	0.64	0.00
체코	20.00					0.42	0.53	0.54	0.55	0.57	0.05
덴마크	25.00	0.64	0.61	0.6	0.56	0.60	0.65	0.65	0.59	0.59	-0.06
에스토니아	20.00					0.72	0.81	0.80	0.73	0.70	-0.11

〈표 II-6〉의 계속

국가/ 연도	2012 VAT	1976	1984	1988	1992	2000	2006	2007	2009	2012	2006~2012
핀란드	23.00					0.61	0.61	0.60	0.56	0.56	-0.05
프랑스	19.60	0.65	0.62	0.62	0.53	0.50	0.51	0.51	0.47	0.48	-0.03
독일	19.00	0.55	0.51	0.49	0.61	0.60	0.56	0.54	0.55	0.55	-0.01
그리스	23.00			0.46	0.47	0.49	0.46	0.48	0.39	0.37	-0.08
헝가리	27.00				0.30	0.52	0.55	0.59	0.62	0.52	-0.03
아이슬란드	25.50				0.56	0.59	0.64	0.59	0.45	0.45	-0.19
아일랜드	23.00	0.30	0.44	0.42	0.45	0.62	0.67	0.63	0.47	0.45	-0.22
이스라엘	16.00					0.62	0.62	0.66	0.65	0.64	0.01
이탈리아	21.00	0.44	0.38	0.38	0.37	0.43	0.41	0.41	0.36	0.38	-0.03
일본	5.00				0.68	0.68	0.70	0.69	0.67	0.69	-0.01
한국	10.00				0.63	0.59	0.63	0.63	0.65	0.69	0.06
룩셈부르크	15.00	0.62	0.67	0.70	0.59	0.76	0.89	0.94	0.97	1.13	0.23
멕시코	16.00		0.27	0.25	0.31	0.28	0.33	0.33	0.30	0.31	-0.02
네덜란드	19.00	0.47	0.49	0.54	0.56	0.57	0.58	0.59	0.52	0.53	-0.05
뉴질랜드	15.00			0.89	0.96	0.99	1.04	0.96	0.99	0.96	-0.08
노르웨이	25.00	0.66	0.63	0.69	0.58	0.67	0.61	0.63	0.54	0.57	-0.04
폴란드	23.00					0.42	0.50	0.52	0.45	0.42	-0.07
포르투갈	23.00			0.45	0.49	0.60	0.51	0.51	0.43	0.47	-0.04
슬로바키아	20.00					0.44	0.57	0.53	0.47	0.43	-0.13
슬로베니아	20.00					0.67	0.68	0.69	0.59	0.58	-0.10
스페인	18.00			0.57	0.60	0.52	0.57	0.53	0.32	0.41	-0.16
스웨덴	25.00	0.44	0.38	0.42	0.41	0.52	0.56	0.57	0.57	0.56	0.00
스위스	8.00					0.74	0.74	0.73	0.7	0.71	-0.03
터키	18.00			0.45	0.44	0.45	0.39	0.36	0.34	0.40	0.01
영국	20.00	0.46	0.48	0.52	0.47	0.47	0.46	0.46	0.44	0.44	-0.02
평균	18.70	0.54	0.51	0.53	0.53	0.57	0.59	0.59	0.54	0.55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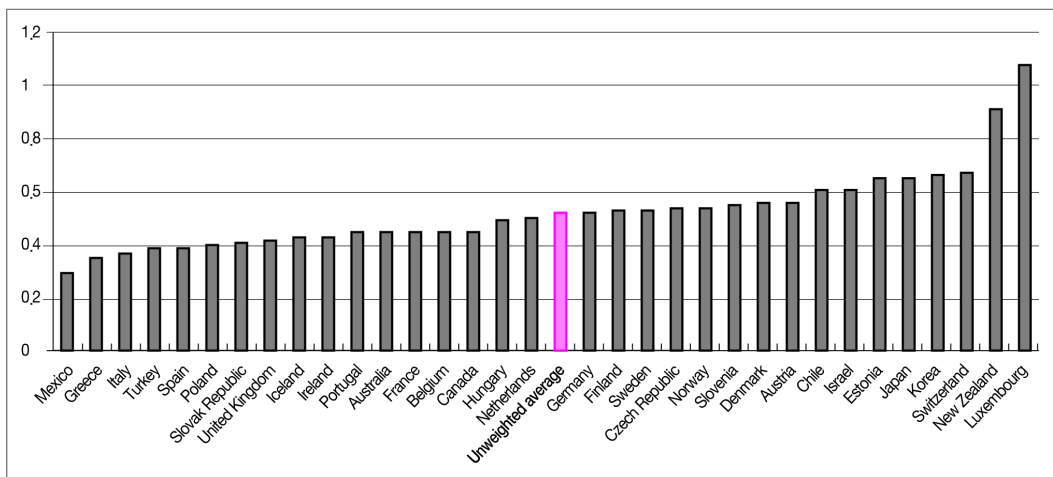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10

□ 2012년 국가별 VRR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잠재 부가가치 세수의 상당부분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2년 대부분의 국가는 VRR이 0.65 이하이고, 그 중 절반은 0.5 이하로 OECD 평균 0.55에 비하여 낮게 측정됨

- OECD는 국가별 상이한 시장구조, 경제상황, 부가가치세 정책으로 인해 VRR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주변에 위치한 국가의 VRR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2012년 VRR이 높은 두 국가(룩셈부르크는 1.13, 뉴질랜드는 0.96임)는 모두 OECD 평균(0.55)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바로 옆에 위치한 국가(스위스는 0.71임)에 비해서도 높음
 - 금융과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룩셈부르크의 VRR은 1996년에 0.66에서 계속적으로 높아져 2012년에는 1.13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와 국제금융의 호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위기의 타격을 많이 받은 그리스는 2007년(0.39)과 2009년(0.48) 사이에 VRR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납세순응의 꺾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됨
 - 멕시코는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부분이 잠재적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쳐 VRR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11-3] OECD 회원국의 2012년 VRR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95

다. VRR의 분석

- VRR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함
 - 경감세율의 적용은 세수를 감소시키고 VR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총액을 감소시키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수를 감소시키나,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는 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 시장구조의 특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이 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은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항목에서 민간가계소비지출 다음으로 큰 영역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를 면세로 볼 것인지 과세로 볼 것인지에 따라 VRR에 영향을 미침
 - 국제거래에 있어 과세 규정상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소비와 공급의 국가가 상이할 경우 VRR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에 대한 낮은 납세순응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므로 효율적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세무행정 능력은 VRR에 영향을 미침
 - 전체 소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생필품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패턴은 VRR에 영향을 미침
- VRR에 미치는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 VRR이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VAT의 여러 가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잘못된 분류로 인해 세수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반면 높은 표준세율은 탈세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특정 부문에 대한 면세는 추가적인 행정력을 요구하며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과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음

4 OECD 회원국의 물품세

가. 물품세 일반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부과됨
 -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세가 부과되는 3가지 품목은 알코올음료, 광유(mineral oil), 담배임
- 물품세의 일반적인 특성은 부과기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자의 수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물품세는 일반적으로 부피, 중량, 수량, 길이, 품질 및 일부 경우에는 가치와 복합된 지표에 따라 과세되며, 때로는 가치기준으로만 부과되기도 함
 - 세율과 과세대상 이외에도 이러한 종량세(specific tax)와 종가세(ad valorem tax) 적용이 물품세의 세수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침
 - 물품세는 재화가 유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물품세 납세의무는 제조, 판매, 수입을 영위하는 소수의 납세자들에 의해 이루어짐
- 물품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산정기준이 되어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됨
 - 따라서 물품세가 인상되면 물품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부담이 증가함
- OECD 회원국의 물품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6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14.2%에서 2011년 8%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최근 20년 동안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에서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이지만 개별 국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세수에서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뉴질랜드는 2.8%에 불과하지만, 터키는 17.8%에 달함
- OECD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전체 세수 대비 물품세 비중을 5%와 10% 사이에서 유지해오고 있으며, 5% 미만의 국가는 5개국, 10% 이상의 국가는 8개국임
 - 5% 미만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및 미국이며, 10% 이상의 국가는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및 터키임

〈표 II-7〉 전체 세수에서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 연도	1965	1975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호주	15.5	11.8	13.9	10.3	9.4	9.2	7.6	7.6	7.4	6.7
오스트리아	9.8	7.9	7.0	6.1	6.0	6.0	6.3	5.6	5.7	5.8
벨기에	8.3	6.6	4.7	4.9	5.2	5.0	5.3	4.9	4.9	4.7
캐나다	9.8	6.3	7.9	5.9	5.6	4.7	4.9	4.7	4.7	4.5
칠레	-	-	-	9.3	7.9	10.3	7.8	7.5	7.2	6.8
체코	-	-	-	-	9.8	9.3	9.8	10.8	10.8	11.2
덴마크	26.0	13.7	11.8	9.9	10.5	10.4	9.7	8.3	8.6	8.7
에스토니아	-	-	-	-	7.5	9.6	12.0	14.1	12.7	13.6
핀란드	13.4	11.5	12.0	9.8	9.9	9.0	8.6	8.0	8.3	8.9
프랑스	10.8	6.5	6.2	6.2	6.7	6.2	5.7	5.6	5.5	5.5
독일	11.1	8.8	6.8	6.9	7.1	7.5	8.4	7.2	7.0	6.9
그리스	17.3	13.6	14.4	12.0	14.4	9.0	8.2	8.5	10.6	11.8
헝가리	-	-	-	-	10.0	10.4	9.7	9.5	9.2	9.3
아이슬란드	1.1	3.0	6.0	2.0	8.9	9.3	9.2	7.9	8.6	8.6
아일랜드	39.2	26.0	19.0	17.1	15.1	13.5	10.9	10.7	10.3	10.1
이스라엘	-	-	-	-	3.5	3.5	4.5	5.6	5.9	5.6
이탈리아	14.8	10.2	5.8	7.7	7.9	6.3	5.6	4.9	4.9	5.0
일본	17.2	11.3	10.5	6.6	7.4	7.2	6.9	6.7	6.5	6.4
대한민국	-	22.0	13.7	13.2	13.5	13.3	12.0	9.3	10.7	7.9

〈표 11-7〉의 계속

국가 / 연도	1965	1975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룩셈부르크	9.8	7.3	10.3	9.7	11.7	12.0	11.8	9.7	9.4	9.5
멕시코	-	-	11.4	7.9	8.3	8.5	3.3	3.4	3.5	3.3
네덜란드	8.1	6.3	5.4	5.7	7.4	8.3	8.5	8.1	8.0	7.9
뉴질랜드	12.4	9.4	7.4	7.0	5.8	5.4	3.9	2.8	2.9	2.8
노르웨이	13.9	10.3	14.5	12.4	12.5	8.7	7.4	7.2	7.0	6.6
폴란드	-	-	-	-	10.0	11.1	12.7	11.9	13.3	12.8
포르투갈	15.2	13.0	16.1	13.8	14.9	11.5	12.1	10.3	10.5	9.5
슬로바키아	-	-	-	-	8.7	9.1	11.6	9.6	10.4	10.1
슬로베니아	-	-	-	-	-	8.4	9.0	11.5	11.5	11.6
스페인	5.6	2.2	5.4	5.8	7.7	7.5	6.4	6.8	6.6	6.4
스웨덴	14.9	8.8	9.4	7.3	7.2	6.0	6.1	6.2	6.0	5.8
스위스	9.0	7.7	6.8	5.2	5.6	5.5	5.4	4.9	5.1	4.8
터키	23.2	17.6	3.8	0.9	1.0	11.7	21.2	18.6	19.9	17.8
영국	21.8	12.7	11.2	9.7	11.3	10.5	8.8	9.2	8.9	8.5
미국	12.7	7.6	6.2	4.1	4.6	3.7	3.9	4.2	4.1	3.9
평균	14.2	10.5	9.5	8.1	8.3	8.5	8.4	8.0	8.1	7.9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42

□ 종량세와 증가세는 과세대상의 경제활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함

- 예를 들어, 알코올 함량에 따른 음료에 대한 종량세는 제조업자가 동일한 알코올 수준으로 보다 높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급제품을 만드는 등 제품의 다양화 유인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증가세는 제품품질의 개선에 저해가 될 수 있음
 - 종량세의 경우 낮은 가격의 제품과 높은 가격의 제품이라도 알코올 함량이 동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임
- 종량세는 제품의 물질적인 양의 측정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쉬움
-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서, 가격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됨

- 종량세와 종가세 간의 절대적인 최적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의 시장 특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목적은 세수의 최대화, 세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및 소비자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최초의 물품세 목적은 세수의 증대였지만 현재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를 지양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함
 - 알코올음료와 담배는 공중보건, 광유는 에너지 확보에 외부비경제효과를 미침
 - 최근 수십년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성 및 효율성, 세수의 증대, 투명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또한, 폐수처리, 수질오염, 공기오염에도 환경세가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및 집행방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대부분 OECD 회원국의 물품세 주요 특징과 목적은 유사하지만, 집행방법 특히 세율과 체계는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 간 물품세의 조세부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부과체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표준물품세율은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한 경감세율로 그 효과가 희석되며, 대체재(담배와 권련)에 대한 다른 세율 적용은 모든 세부항목을 분석하기 전에는 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체계를 나타낼 수 없게 함
 - 더구나 국가 간 비교는 더욱 어려운데, 예를 들어 연료에 대한 세금에 대해 각 국가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정책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통행료, 등록비 및 유지세,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하여야 함

나. 알코올음료

- 관세품목표(Customs Combined Nomenclature Code)에서는 알코올음료를 6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일관성과 중복·누락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 맥주
 - 포도주 및 강화와인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 기타의 발효주,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보고서에서는 알코올함량은 일반적으로 100리터당 순수 에탄올부피(alcohol by volume: abv)로 표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디그리플라토(degree Plato)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비교를 위해 이를 환산함
 - 디그리플라토는 맥즙의 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디그리플라토를 abv로 환산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세법상 1% abv는 2.5디그리플라토와 동등하므로, 디그리플라토에 2.5배수를 적용하여 abv와 비교가능하도록 환산함
- 알코올음료에 대한 물품세는 세부 품목의 다른 구분 및 특정 세율(예를 들어, 저알코올 음료 및 소규모 양조업자) 등으로 인해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인 비교로 대체함
- 맥주에 대해 100리터당 약 2달러에서 32달러까지 폭넓게 물품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대 101달러를 과세하는 국가도 존재함

- 100리터당 % abv에 대해 약 2달러를 과세하는 국가는 체코공화국 및 룩셈부르크이며, 약 32달러로 과세하는 국가는 핀란드, 약 101달러를 과세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임

〈표 II-8〉 맥주 물품세

	100리터당 abv에 따른 종량세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물품세		VAT	물품세의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호주	각주 참조 ¹⁾							10.0	예
오스트리아	5.00	6.67	<12,500	3.00	4.00	-	-	20.0	아니오
			<25,000	3.50	4.67				
			<37,500	4.00	5.33				
			≤50,000	4.50	6.00				
벨기에	4.62	6.16	≤12,500	4.02	5.36	-	-	21.0	아니오
			≤25,000	4.15	5.53				
			≤50,000	4.28	5.71				
			≤75,000	4.42	5.89				
			≤200,000	4.55	6.07				
캐나다	각주 참조 ²⁾							5.0/13.0/ 14.0/ 15.0	예
칠레	각주 참조 ³⁾							19.0	아니오
체코	32.00	1.64	≤10,000	16.00	0.82	-	-	21.0	아니오
			≤50,000	19.20	0.98				
			≤100,000	22.40	1.15			20.0	
			≤150,000	25.60	1.31				
			≤200,000	28.80	1.47				
덴마크	32.00	1.64	≤3,000	각주 참조 ⁴⁾			0.00	25.0	아니오
			≤20,000						
			≤20,000						
에스토니아	6.28	8.37	≤3,000	3.14	4.19	-	-	20.0	아니오

〈표 11-8〉의 계속

	100리터당 abv에 따른 종량세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물품세		VAT	물품세의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핀란드 ⁵⁾	32.05	42.73	≤2,000	16.03	21.37	8.00	10.67	24.0	아니오	
			≤30,000	22.44	29.91					
			≤55,000	25.64	34.19					
			≤100,000	25.85	38.46					
프랑스	3.66	4.88	≤200,000	3.66	4.88	3.66	4.88	20.0	아니오	
독일	1.97	2.63	≤5,000	1.10	1.47	-	-	19.0	아니오	
			≤10,000	1.32	1.76					
			≤20,000	1.54	2.05					
			≤40,000	1.65	2.20					
그리스	6.50	8.67	≤200,000	3.25	4.33	-	-	23.0	아니오	
헝가리	1,620.00	7.25	≤8,000	810.00	3.62	-	-	27.0	아니오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⁶⁾						25.5	예		
아일랜드	22.55	30.07	≤20,000	각주 참조 ⁷⁾				23.0	아니오	
이스라엘	433.00	119.94	-			각주 참조 ⁸⁾		18.0	아니오	
이탈리아	6.75	9.00	-			각주 참조 ⁹⁾		22.0	아니오	
일본	각주 참조 ¹⁰⁾		-			-	-	5.0	아니오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¹⁾		-			각주 참조 ¹¹⁾		10.0	아니오	
룩셈부르크	1.98	2.64	≤50,000	0.99	1.32	-	-	15.0	아니오	
			≤200,000	1.12	1.49	-	-		아니오	
멕시코	26.5% ¹²⁾		-			-	-	16.0	예	
네덜란드	각주 참조 ¹³⁾		-			-	-	21.0	예	
뉴질랜드	27.20	22.30	-			각주 참조 ¹⁴⁾		15.0	아니오	
노르웨이	각주 참조 ¹⁵⁾		-			-	-	25.0	예	
폴란드	19.48	6.16	각주 참조 ¹⁶⁾			-	-	23.0	아니오	
포르투갈	각주 참조 ¹⁷⁾								23.0	예
슬로바키아	3.59	4.78	≤200,000	2.652	3.54	-	-	20.0	아니오	
슬로베니아	11.00	14.67	-			-	-	22.0	아니오	
스페인	각주 참조 ¹⁸⁾		-			각주 참조 ¹⁸⁾		21.0	예	
스웨덴	178.00	27.34	-			-		25.0	아니오	

〈표 II-8〉의 계속

	100리터당 abv에 따른 종량세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저알코올맥주 (2.8% abv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물품세		VAT %	물품세의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스위스	각주 참조 ¹⁹⁾		-			각주 참조 ¹⁹⁾		8.0	예
터키	63.00%	-	-			-		18.0	아니오
영국	19.12	29.88	각주 참조 ²⁰⁾			9.17	14.33	20.0	아니오
미국	각주 참조 ²¹⁾		-			-			아니오

주: 1) 호주:

- 48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39.75호주달러/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46.30호주달러; 48리터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7.94호주달러/3% <알코올 함량≤3.5%: 24.90호주달러, 3.5% <알코올 함량: 32.60호주달러.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지 않으면 물품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러한 과세는 2월부터 8월까지 물가지수에 연동되며, 독립적인 맥주 양조업자는 맥주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분에 대해 과세 기간당 최대 3만호주달러까지 물품세의 60%의 환급을 받음
- 2) 캐나다: 물품세는 생산된 제품의 100리터당 부과됨(알코올 함량이 아님).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연방세는 1)2.5%≤알코올 함량: 100리터당 31.22캐나다달러, 2)1.2%≤알코올 함량 <2.5%: 100리터당 15.61캐나다달러, 3)알코올 함량 <1.2%: 100리터당 2.591캐나다달러가 부과되나, 일정 생산량까지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됨
- 3) 칠레: 알코올음료의 판매는 19%의 부가가치세와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맥주에 대한 부가세 세율은 15%인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4) 덴마크: 독립적인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생산량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2.8% 미만 알코올 함량의 맥주에 대해 물품세가 비과세됨
- 5) 핀란드: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
- 6) 아이슬란드: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94.05크로나 과세. 즉, 2.25% abv 미만은 비과세됨
- 7) 아일랜드: 연간 2백만리터까지 소규모 독립 양조업자에게 물품세의 50%를 환급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비과세(알코올 함량≤1.2% abv) 또는 11.27유로(1.2% abv <알코올 함량≤2.8% abv)로 과세됨
- 8) 이스라엘: 100리터당 433세켈로 과세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경됨. 2% 미만 (재활용 병이 사용되면 8%)의 알코올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9) 이탈리아: 알코올 함량 0.5% 미만에 대해 비과세됨
- 10) 일본: 제품 100리터당 22천엔으로 과세
- 11) 대한민국: 주세는 생산자 가격의 72%로 과세되며, 이중 30%가 교육세로 부과됨
-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 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 13) 네덜란드: 100리터당 알코올 함량≤7디그리플라토: 7.59유로, 7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11디그리플라토: 28.49유로, 11디그리플라토 <알코올 함량 <15디그리플라토: 37.96유로, 15디그리플라토이상≤알코올함량: 47.48유로.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2천만리터까지 알코올 함량에 따라 7.59유로에서 43.92유로까지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14) 뉴질랜드: 2.5% ab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7.870뉴질랜드달러, 1.15-2.5% abv에 대해 41.797뉴질랜드달러, 1.15% abv미만은 비과세됨
- 15) 노르웨이: 생산제품 100리터당 a)0.0-0.7% abv: 비과세, b)0.7-2.7% abv: 312크로네, c)2.7-3.7% abv: 1,174크로네, d)3.7-4.7% abv 2,034크로네로 과세되며, 4.7%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는 알코올 함량당 454크로네로 과세됨
- 16) 폴란드: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해 2백만리터 이하의 판매시 100리터당 30즐로티 등의 생산량에 따라 100리터당 30즐로티에서 9즐로티까지 공제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세율 적용시 과세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7) 포르투갈: 100리터당 a)0.5-1.2% abv는 7.53유로, b)1.2% abv부터 7디그리플라토까지 9.43유로, c)1.2% abv 이상 7-11디그리플라토까지 15.06유로, d)1.2% abv 이상 11-13디그리플라토까지 18.86유로, e)1.2% abv 이상 13-15디그리플라토까지 22.61유로, f)1.2% abv 이상 15디그리플라토를 초과시 26.45유로 적용
- 18) 스페인: 100리터당 a)≤1.2% abv: 비과세, b)1.2-2.8% abv: 2.75유로, c)2.8% abv-11디그리플라토: 7.48유로, c)11-15 디그리플라토: 9.96유로, d)15-19 디그리플라토: 13.56유로, e)19디그리플라토 < : 디그리플라토당 0.91유로로 과세됨
- 19) 스위스: 100리터당 저알코올맥주(10.0 디그리플라토까지): 16.88프랑, 일반적 및 특수 맥주 (10.1-14 디그리플라토): 25.32프랑, 독주(14.1 디그리플라토 초과): 33.76프랑으로 과세되며,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규모에 따라 40%까지 감경됨
- 20) 영국: a)1.2% abv미만은 비과세, b)1.3-2.8% abv에 대해 일반 맥주세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c)7.5% abv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과되며,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라 일부 경감이 이루어짐
- 21) 미국: 가중평균 연방 및 지방 물품세율은 100리터당 22달러임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21

□ 와인의 경우 세율이 비과세에서 최대 스틸와인에 대해 리터당 9달러,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 리터당 11달러까지 다양함

○ 비과세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위스이며, 스틸와인에 리터당 9달러를 과세하는 국가는 핀란드, 스파클링와인에 리터당 11달러를 과세하는 국가는 아일랜드임

〈표 II-9〉 와인 물품세

	스티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 와인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호주	각주 참조 ¹⁾		10.00	각주 참조 ¹⁾		10.00	각주 참조 ¹⁾		10.00
오스트리아	0.00	0.00	20.00	0.00	0.00	20.00	0.00	0.00	20.00
벨기에	56.97	75.66	21.00	194.94	258.88	21.00	18.04	23.96	21.00

〈표 II-9〉의 계속

	스틸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 와인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캐나다	62.00	60.19	5.0/ 13.0/ 14.0/ 15.0	62.00	60.19	5.0/ 13.0/14 .0/15.0	각주 참조 ²⁾		5.0/ 13.0/ 14.0/ 15.0
칠레	각주 참조 ³⁾		19.00	각주 참조 ³⁾		19.00	각주 참조 ³⁾		19.00
체코	0.00	0.00	21.00	2,340.00	119.63	21.00	0.00	0.00	21.00
덴마크 ⁴⁾	1,101.00	195.98	25.00	1,417.00	252.22	25.00	506.00	90.07	25.00
에스토니아 ⁵⁾	84.67	112.44	20.00	84.67	112.44	20.00	36.71	48.75	20.00
핀란드	339.00	450.20	24.00	339.00	450.20	24.00	각주 참조 ⁶⁾		24.00
프랑스	3.72	4.94	20.00	9.23	12.26	20.00	3.60	4.78	20.00
독일 ⁷⁾	0.00	0.00	19.00	136.00	180.61	19.00	0.00	0.00	19.00
그리스	0.00	0.00	23.00	0.00	0.00	23.00	0.00	0.00	23.00
헝가리	0.00	0.00	27.00	16,460.00	73.62	27.00	0.00	0.00	27.00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⁸⁾		25.50	각주 참조		25.50	각주 참조		25.50
아일랜드 ⁹⁾	424.84	564.20	23.00	849.68	1,128.39	23.00	141.57	188.01	23.00
이스라엘	0.00	0.00	18.00	-	-	18.00	0.00	0.00	18.00
이탈리아	0.00	0.00	22.00	0.00	0.00	22.00	0.00	0.00	22.00
일본	8,000.00	81.97	5.00	8,000.00	81.97	5.00	8,000.00	81.97	5.00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⁰⁾		10.00	각주 참조 ¹⁰⁾		10.00	각주 참조 ¹⁰⁾		10.00
룩셈부르크	0.00	0.00	12.00 ¹¹⁾ or 15.00	0.00	0.00	15.00	0.00	0.00	12.00
멕시코 ¹²⁾	26.5%/30%	-	16.00	26.5%/30%	-	16.00	0.27	-	16.00
네덜란드 ¹³⁾	88.36	117.34	21.00	254.41	337.86	21.00	44.18	58.67	21.00
뉴질랜드	각주 참조 ¹⁴⁾		15.00	각주 참조 ¹⁴⁾		15.00	각주 참조 ¹⁴⁾		15.00
노르웨이 ¹⁵⁾	5,448.00	927.00	25.00	5,448.00	927.00	25.00	각주 참조 ¹⁵⁾		25.00
폴란드	158.00	50.00	23.00	158.00	50.00	23.00	158.00	50.00	23.00
포르투갈	0.00	0.00	13.00	0.00	0.00	23.00	0.00	0.00	23.00
슬로바키아 ¹⁶⁾	0.00	0.00	20.00	79.65	105.78	20.00	0.00	0.00	20.00
슬로베니아	0.00	0.00	22.00	0.00	0.00	22.00	0.00	0.00	22.00
스페인	0.00	0.00	21.00	0.00	0.00	21.00	0.00	0.00	21.00
스웨덴 ¹⁷⁾	2,309.00	354.52	25.00	2,309.00	354.52	25.00	0.00	0.00	25.00

〈표 II-9〉의 계속

	스틸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 와인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100리터당 물품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스위스 ¹⁸⁾	0.00	0.00	8.00	0.00	0.00	8.00	0.00	0.00	8.00
터키 ¹⁹⁾	417.00	218.90	18.00	2,820.00	1,480.31	18.00	417.00	218.90	18.00
영국 ²⁰⁾	266.72	416.75	20.00	341.63	533.80	20.00	82.18	128.41	20.00
미국 ²¹⁾	47.00	47.00	-	116.00	116.00	-	각주 참조 ²¹⁾		-

주: 1) 호주: 모든 와인에 대해 최종판매가의 29%가 와인평형세가 과세됨

2) 캐나다: 7% abv≤: 리터당 0.62캐나다달러, 1.2-7% abv: 리터당 0.295캐나다달러, <1.2% abv: 리터당 0.0205캐나다달러 과세.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3) 칠레: 와인 등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VAT과세표준인 판매가격의 15%의 추가세(surtax)가 과세됨

4) 덴마크: 15-22% abv: 100ml당 1,474크로네, 6-15% abv: 100ml당 1,101크로네, 1.2-6% abv: 100ml당 506크로네로 과세되며, 스파클링와인의 세율은 스틸와인에 100ml당 317크로네가 가산됨

5) 에스토니아: 6% vol까지 36.71유로로 과세됨

6) 핀란드: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a) 1.2-2.8% abv: 22유로, b) 2.8-5.5% abv: 169유로, c) 5.5-8.0% abv: 241유로로 과세됨

7) 독일: 6% abv 미만의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 51유로로 과세됨

8) 아이슬란드: 15% abv까지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84.60크로나 과세

9) 아일랜드: 15% abv를 초과하는 스틸 와인에 대해 616.45유로 과세

10) 대한민국: 주세는 생산자가격의 30%로 과세되며, 이에 10%가 교육세가 부가됨

11) 룩셈부르크: 13% abv 미만의 스틸와인에 대해서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율(12%)이 적용됨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 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13) 네덜란드: 15% abv를 초과하는 와인에 대해 100ml당 129.81유로, 최대 8.5% abv의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은 100ml당 48.25유로가 적용되며, 1.2% abv 미만의 와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6%로 과세됨

14) 뉴질랜드: 비강화주 와인에 대해 상품 리터당 2.7870뉴질랜드달러로 과세됨

15) 노르웨이: 표의 세율은 12% abv 와인에 대한 것이며, 4.7-22% abv에 대한 물품세는 100ml의 알코올 1%당 454크로네임

16) 슬로바키아: 8.5% abv를 초과하지 않는 스파클링 음료에 100ml당 54.16유로가 적용됨

17) 스웨덴: 저알코올 음료에 세율은 a) <2.25% abv: 비과세, b) 7-8.5% abv: 1,541크로네/167.17유로, c), 4.5-7% abv: 1,120크로네/121.50유로, d) 2.25-4.5% abv: 758크로네/82.23유로이며,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없음

18) 스위스: 15% abv 이상의 와인 및 18% abv 이상의 포도로 만든 네추럴와인은 알코올음료로 과세됨(와인: 무수알코올 100ml당 2,900프랑, 네추럴와인: 22% abv까지 무수알코올 100ml당 1,450프랑이며 초과시 2,900프랑)

19) 터키: 물품세율은 0%임

20) 영국: 품목별로 분류된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a) 1.2-4% abv: 82.18파운드, b) 4-5.5% abv: 113.21파운드, c) 5.5-8.5% abv 스파클링와인: 258.33파운드, d) 8.5-15% abv 스파클링와인 및 메이드와인: 335.59파운드로 과세됨

21) 미국: 연방과 지방정부의 가중평균세율은 100ml 제품당 14% abv 스틸와인은 47달러, 스파클링와인은 116달러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25

다. 담배

- 알코올음료와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한 물품세는 최초에 세수확보의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목적이 강화되는 것으로 기술함
 - 담배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대하는 데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음
 - 최근 수십년간 담배의 위해성 증거가 축적되어 공중보건의 목적이 대두되었으며, 담배에 대한 세금부과는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알코올음료나 광유와는 달리 담배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저가와 고가의 제품 간의 균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비용 생산국과 고비용 생산국 간의 중립성을 충족시키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담배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음
 -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이러한 종류의 세금은 종량세, 종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음

〈표 II-10〉 담배 물품세

	담배			시가			권련		
	1,000g당 종량세		종가세	1,000g당 종량세		종가세	1,000g당 종량세		종가세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호주 ¹⁾	401.97	388.00	0.00	각주 참조		0.00	502.48	485.02	0.00
오스트리아 ²⁾	35.00	46.48	42.00	0.00	0.00	13.00	0.00	0.00	54.00
벨기에	23.59	31.33	50.41	0.00	0.00	10.00	14.50	31.50	31.50
캐나다	85.00	82.52	각주 참조 ³⁾	18.50	17.96	각주 참조 ³⁾	106.25	103.16	각주 참조 ³⁾

〈표 II-10〉의 계속

	담배			시가			권연		
	1,000g당 종량세		증가세	1,000g당 종량세		증가세	1,000g당 종량세		증가세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가격의 %
칠레	각주 참조 ⁴⁾		60.50	각주 참조 ⁴⁾		52.60	각주 참조 ⁴⁾		59.70
체코	1,190.00	60.84	27.00	1,340.00	68.51	-	1,800.00	92.02	-
덴마크	1,182.50	210.48	1.00	198.00	35.24	10.00	788.50	140.35	0.00
에스토니아	46.50	61.75	34.00	211.00	280.21	0.00	61.00	81.01	0.00
핀란드	28.00	37.18	52.00	0.00	0.00	29.00	20.00	26.56	52.00
프랑스	48.75	64.74	64.70	18.00	23.90	28.00	67.50	89.64	62.00
독일	92.60	122.97	21.87	14.00	18.59	1.47	43.31	57.52	14.41
그리스	80.00	106.24	20.00	0.00	0.00	34.00	153.00	203.19	0.00
헝가리	12,500.00	55.91	31.00	0.00	0.00	28.50	0.00	0.00	52.00
아이슬란드	22,650.00	185.40	36.50	각주 참조 ⁵⁾		36.50	16,200.00	132.61	37.60
아일랜드	241.83	321.16	8.72	각주 참조 ⁶⁾		0.00	252.22	334.95	0.00
이스라엘	398.98	110.55	각주 참조 ⁷⁾	0.00	0.00	각주 참조 ⁷⁾	458.59	127.07	0.00
이탈리아	9.08	12.06	58.50	0.00	0.00	23.00	0.00	0.00	58.50
일본	12,244.00	125.45	0.00	12,244.00	125.45	0.00	12,244.00	125.45	0.00
대한민국	32,050.00	29.27	0.00	각주 참조 ⁸⁾		0.00	23,000.00	21.01	0.00
룩셈부르크	17.56	23.32	48.11	0.00	0.00	10.00	7.30	9.69	32.80
멕시코	350.00	27.41	39.60	각주 참조 ⁹⁾			각주 참조 ⁹⁾		
네덜란드	169.86	225.58	2.36	0.00	0.00	5.00	72.64	96.47	7.19
뉴질랜드	각주 참조 ¹⁰⁾		0.00	각주 참조 ¹⁰⁾		0.00	386.14	316.51	0.00
노르웨이	2,390.00	406.67	0.00	2,390.00	406.67	0.00	2,390.00	406.67	0.00
폴란드	206.76	65.43	31.41	280.25	88.69	-	141.29	44.71	31.41
포르투갈	87.33	115.98	17.00	0.00	0.00	25.00	75.00	99.60	20.00
슬로바키아	59.50	79.02	23.00	77.37	102.75	-	71.11	94.44	0.00
슬로베니아	65.24	86.64	21.87	0.00	0.00	5.00	67.50	89.64	0.00
스페인	24.10	32.01	51.00	0.00	0.00	15.80	22.00	29.22	41.50
스웨덴	1,270.00	194.99	1.00	1,120.00	171.96	0.00	1,560.00	239.52	0.00
스위스	118.32	127.64	25.00	5.60	6.04	1.00	38.00	40.99	25.00
터키	197.00	103.41	65.25	197.10	103.46	40.00	197.10	103.46	65.25
영국 ¹¹⁾	176.22	275.34	16.50	219.82	343.47	0.00	172.74	269.91	0.00
미국	133.00	133.00	각주 참조 ¹²⁾						

- 주: 1) 호주: 한 개피당 0.8그램 이하인 담배에 대해 한 개피당 0.40197호주달러로 과세됨. 다른 담배 상품은 킬로그램당 502.48호주달러 과세
- 2) 오스트리아: 소비자판매가격의 13%로 과세되며, 1,000개피당 최소 100유로가 과세됨. 권련의 경우 최소물품세는 킬로그램당 60유로임
- 3) 캐나다: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시가에 대한 물품세는 1,000개 시가당 18.50캐나다달러와 시가당 0.67캐나다달러 또는 판매가격의 67%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과세됨. 또한, 각 지방정부는 담배제품에 대해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2014년 2월 12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데 1,000개피당 105.15캐나다달러, 시가 1,000개당 22.88559캐나다달러에 개당 0.08226캐나다달러와 판매가격의 82% 중 큰 금액을 합산한 금액, 권련을 포함한 여타 담배의 경우에는 1,000그램당 131.44캐나다달러로 과세됨
- 4) 칠레: 가공된 담배는 판매가격의 59.7%, 담배는 팩의 판매가격에 60.5%와 팩에 포함된 담배당 0.000128803 Monthly Tax Unit의 추가 과세되며, 시가는 52.6%로 과세됨
- 5) 아이슬란드: 개별 시가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없으며 권련과 동일하게 과세됨
- 6) 아일랜드: 담배에 대한 물품세는 1,000개피당 241.83유로에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에 8.72%와 1,000개피당 275.62유로 중 큰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됨. 시가에 대한 물품세는 킬로그램당 279.345유로이며, 파인컷 권련 담배는 킬로그램당 252.222유로, 여타 담배는 킬로그램당 193.799유로로 과세됨
- 7) 이스라엘: 담배와 시가에 대한 세율은 각각 판매가격의 270%와 90%임
- 8) 대한민국: 시가에 대한 물품세는 1,000그램당 65,400원임
- 9) 멕시코: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종가세는 160%이나 시가나 권련의 제조 전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 30.4%의 감경세율로 과세됨. 판매나 수입되는 담배에 대해 0.35페소가 부과되며, 시가 및 여타의 담배의 경우에도 제조 전체가 수작업이 아니라면 0.75그램당 0.35페소가 부과됨
- 10) 뉴질랜드: 담배 1,000개피당 중량이 0.8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면 545.39뉴질랜드달러, 초과하면 777.18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됨. 여타 담배의 경우 킬로그램당 681.72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됨
- 11) 영국: 시가에 대한 종량세는 킬로그램당 부과되는 것이며, 기타 피는담배와 기타 씹는담배에 대해 킬로그램당 84.98파운드가 부과됨
- 12) 미국: 주세는 매우 다양하며, 연방과 주세를 가중평균하면 담배 1,000개피당 133달러임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1

라. 광유(mineral oil)

- 광유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정제방법에 따라 상품을 나누고 있으며, 관련 에너지 상품에도 과세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함
 - 기술적 정제방법에 따라 무연휘발유, 디젤, 중유로 나뉨
 - 일부 OECD 회원국은 천연가스, 전기, 석탄 등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EU 에너지세제지침(EU energy tax Directive 2003/96/EU)에서는 석탄, 천연가스, 전기에 대한 최소 세율 등의 EU세제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광유의 물품세 특성은 여타 다른 물품세에 비해 소비자행동에 더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 최초로 무연휘발유는 가연가솔린(leaded gasoline)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 부과체계를 조정함
- LPG(Liquefied Petroleum Gas)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디젤이나 휘발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음
- 운송유에 대한 물품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의 유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비탄력적인 수요, 외부효과(대표적으로 교통정체), 주택난방에 대한 저세율을 가져오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함
- EU에너지과세지침은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부피, 중량 또는 에너지 항목에 따라 최소 수준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연휘발유는 리터당 0.359유로, 가스유는 리터당 0.330유로, LPG는 킬로그램당 0.125유로 등임
 - 반면에 지침은 어떠한 종류의 세금으로 이를 부과할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물품세, 탄소세, 에너지세 등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단일의 최소세율(톤당 20유로), 연료의 형태별로 통일된 최소세율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하고 있음
 - 2023년에 완전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임
-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세제는 OECD 회원국의 거대한 소비와 높은 세율로 인해 세수효과가 높음
- 무연휘발유의 총 세금부담은 OECD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세전가격의 100%를 초과하고 있음
 - 34개국 중 21개국에서 총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40~50% 범위에 있는 국가도 7개국임

〈표 II-11〉 무연휘발유(리터당) 물품세(2013)

	세전 가격	세전 가격	물품세		VAT율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대비 총세금(%)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USD	USD	USD	
호주	1.06	1.02	0.38	0.37	10.00	0.14	0.51	1.53	33.11
오스트리아	0.63	0.84	0.49	0.65	20.00	0.30	0.95	1.79	53.19
벨기에	0.77	1.02	0.61	0.82	21.00	0.39	1.20	2.22	54.10
캐나다	0.98	0.95	0.34	0.33	5.00	0.06	0.39	1.34	29.28
칠레	445.70	0.90	250.30	0.51	19.00	0.17	0.68	1.58	42.87
체코	16.82	0.86	12.84	0.66	21.00	0.32	0.97	1.83	53.13
덴마크	6.04	1.07	4.41	0.78	25.00	0.46	1.25	2.32	53.76
에스토니아	0.64	0.85	0.42	0.56	20.00	0.28	0.84	1.70	49.80
핀란드	0.64	0.85	0.65	0.86	24.00	0.41	1.28	2.13	59.96
프랑스	0.63	0.84	0.61	0.81	20.00	0.33	1.14	1.98	57.76
독일	0.65	0.87	0.66	0.87	19.00	0.33	1.20	2.07	58.08
그리스	0.66	0.87	0.67	0.89	23.00	0.41	1.29	2.17	59.78
헝가리	204.28	0.91	123.30	0.55	27.00	0.40	0.95	1.86	50.90
아이슬란드	130.53	1.07	63.97	0.52	25.50	0.41	0.93	2.00	46.53
아일랜드	0.70	0.93	0.59	0.78	23.00	0.39	1.17	2.10	55.81
이스라엘	2.42	0.67	4.00	1.11	18.00	0.32	1.43	2.10	68.07
이탈리아	0.68	0.91	0.73	0.97	22.00	0.41	1.38	2.28	60.35
일본	95.40	0.98	56.10	0.57	5.00	0.08	0.65	1.63	40.03
대한민국	1,216.34	1.11	781.89	0.71	10.00	0.18	0.90	2.01	44.66
룩셈부르크	0.66	0.88	0.46	0.61	15.00	0.22	0.84	1.72	48.75
멕시코	10.75	0.84	0.00	0.00	16.00	0.13	0.13	0.98	13.79
네덜란드	0.64	0.85	0.75	1.00	21.00	0.39	1.39	2.24	61.93
뉴질랜드	1.28	1.05	0.64	0.53	15.00	0.24	0.76	1.81	42.07
노르웨이	6.07	1.03	5.69	0.97	25.00	0.50	1.47	2.50	58.71
폴란드	2.71	0.86	1.67	0.53	23.00	0.32	0.85	1.71	49.65
포르투갈	0.66	0.88	0.59	0.78	23.00	0.38	1.16	2.04	56.84
슬로바키아	0.71	0.94	0.52	0.68	20.00	0.32	1.01	1.95	51.79
슬로베니아	0.63	0.83	0.55	0.73	22.00	0.34	1.08	1.91	56.45
스페인	0.69	0.92	0.46	0.62	21.00	0.32	0.94	1.86	50.56
스웨덴	5.92	0.91	5.37	0.82	25.00	0.43	1.26	2.17	58.04
스위스	0.87	0.94	0.73	0.79	8.00	0.14	0.93	1.86	49.65

〈표 II-11〉의 계속

	세전 가격	세전 가격	물품세		VAT율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대비 총세금(%)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USD	USD	USD	
터키	2.04	1.07	2.18	1.14	18.00	0.40	1.54	2.61	59.00
영국	0.51	0.80	0.58	0.91	20.00	0.34	1.25	2.04	61.05
미국	0.78	0.78	0.14	0.14	-	-	0.14	0.92	14.75

주: 가격과 세금은 2013년 4분기 기준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4

□ 디젤연료는 휘발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음

- 예외적으로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2개국만이 휘발유보다 디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및 멕시코 3개국만이 휘발유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반직관적이지만, 디젤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를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표 II-12〉 디젤(리터당) 물품세(2013)

	세전 가격	세전 가격	물품세		VAT율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대비 총세금(%)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USD	USD	USD	
호주	1.06	1.02	0.38	0.37	10.00	0.14	0.51	1.53	33.13
오스트리아	0.71	0.94	0.41	0.54	20.00	0.30	0.84	1.78	47.10
벨기에	0.78	1.03	0.43	0.57	21.00	0.34	0.90	1.94	46.69
캐나다	1.00	0.97	0.26	0.25	5.00	0.06	0.31	1.28	24.14
칠레	468.20	0.95	60.90	0.12	19.00	0.20	0.33	1.27	25.64
체코	18.99	0.97	10.95	0.56	21.00	0.32	0.88	1.85	47.58
덴마크	5.93	1.06	3.02	0.54	25.00	0.40	0.93	1.99	46.97

〈표 II-12〉의 계속

	세전 가격	세전 가격	물품세		VAT율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대비 총세금(%)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USD	USD	USD	
에스토니아	0.71	0.94	0.39	0.52	20.00	0.29	0.81	1.75	46.41
핀란드	0.74	0.98	0.47	0.62	24.00	0.38	1.01	1.99	50.78
프랑스	0.67	0.89	0.44	0.58	20.00	0.29	0.88	1.76	49.71
독일	0.72	0.95	0.47	0.62	19.00	0.30	0.92	1.88	49.21
그리스	0.78	1.03	0.33	0.44	23.00	0.34	0.78	1.81	42.94
헝가리	218.55	0.98	113.56	0.51	27.00	0.40	0.91	1.89	48.18
아이슬란드	143.24	1.17	79.34	0.65	25.50	0.46	1.11	2.29	48.72
아일랜드	0.74	0.99	0.48	0.64	23.00	0.37	1.01	2.00	50.57
이스라엘	3.48	0.96	2.88	0.80	18.00	0.32	1.12	2.08	53.63
이탈리아	0.74	0.98	0.62	0.82	22.00	0.40	1.21	2.19	55.41
일본	97.20	1.00	34.40	0.35	5.00	0.07	0.42	1.42	29.66
대한민국	1,016.98	0.93	528.75	0.48	10.00	0.14	0.62	1.55	40.19
룩셈부르크	0.71	0.94	0.34	0.44	15.00	0.21	0.65	1.60	40.89
멕시코	10.54	0.83	0.00	0.00	16.00	0.13	0.13	0.96	13.79
네덜란드	0.71	0.94	0.44	0.58	21.00	0.32	0.91	1.85	48.98
뉴질랜드	1.29	1.06	0.00	0.00	15.00	0.16	0.16	1.22	13.31
노르웨이	6.33	1.08	4.36	0.74	25.00	0.45	1.20	2.27	52.63
폴란드	2.97	0.94	1.46	0.46	23.00	0.32	0.78	1.72	45.47
포르투갈	0.75	0.99	0.37	0.49	23.00	0.34	0.83	1.82	45.53
슬로바키아	0.79	1.04	0.37	0.49	20.00	0.31	0.79	1.84	43.26
슬로베니아	0.68	0.91	0.44	0.59	22.00	0.33	0.92	1.82	50.27
스페인	0.75	0.99	0.37	0.49	21.00	0.31	0.80	1.79	44.76
스웨덴	7.09	1.09	4.63	0.71	25.00	0.45	1.16	2.25	51.59
스위스	0.96	1.04	0.76	0.82	8.00	0.15	0.97	2.00	48.32
터키	2.16	1.13	1.60	0.84	18.00	0.35	1.19	2.33	51.24
영국	0.57	0.90	0.58	0.91	20.00	0.36	1.27	2.16	58.59
미국	0.88	0.88	0.14	0.14	-	-	0.14	1.02	13.89

주: 가격과 세금은 2013년 4분기 기준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34

5 자동차관련 세제

가. 자동차에 대한 과세와 오염 배출

-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20세기 초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도입되었고, 정부 세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
 - 모든 OECD 회원국은 자동차세를 개인과 상업용 도로 사용자 모두에게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리, 산업, 사회, 에너지, 교통 및 환경 정책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과세수준과 구조를 결정하게 됨
- 초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아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목적달성 또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과되고 있음
 -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을 연료 효율이나 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잠재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을 유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1개국은 자동차 구입이나 연간 등록의 경우 오염배출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며, 18개국은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면제함
 - 이산화탄소(CO₂),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와 입자의 최대 배출량을 설정하여 오염배출을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음
 - 200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위원회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는 목표가 되었음
 - 그러나 자동차구매 또는 연간 등록비용을 차별화하는 것은 환경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OECD는 밝히고 있음
-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세금(tax)이나 요금(fee)을

부과함

- 구입, 자동차 등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과세
- 자동차의 사용이나 소유와 관련된 정기적인 세금
- 연료에 대한 과세
- 도로 통행료, 혼잡요금, 보험 과세 등과 같은 요금 등

나. 자동차의 구입단계에서 과세

- 자동차의 등록과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요금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기타 비용 등이 있으며, 이를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의 가치나 가액
 - 엔진 출력이나 실린더 용량
 - 환경영향(연료 소비, 배출 오염, 사용된 연료의 종류)
 - 사회적 고려: 응급 자동차에 대한 면제, 구급차, 장애인 차, 대중교통 등
 - 자동차의 이용(차축의 수, 화물공간, 좌석 수 같은 특정 기준)
 - 몇몇 특정 요소는 가중치, 안전 장비나 에어컨의 비중, 가중치 같이 세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들이 자동차의 구입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요금은 다음과 같음
 - 21개국은 CO₂ 배출, 오염배출, 전기 추진 등과 같이 환경오염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시 세금 및 요금을 부과함
 - 18개국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면제함
 - 자동차의 오염배출에 따라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 시행하고 있음

〈표 II-13〉 OECD 회원국의 구입단계 자동차세

국가	부가세	등록세·요금 및 기타	환급/ 면제
호주	10%	· 등록요금: 중량 기준 · 고급차 과세: AUD 60,316을 초과하는 차	·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응급차, 장애인 차는 면제
오스트리아	20%	· 등록세: 연료를 기준으로 가격에 부과	· 120g CO ₂ /km보다 적은 차에 최대 EUR 300의 보너스 제공
벨기에	21%	· 엔진출력과 연식기준 (EUR 61.5-4,957)	· 장애인·전쟁상병자는 면제, 액화 석유가스, 기타 가스차 환급
캐나다	5%	· 에어컨디션세: 단위당 CAD 100 · 연료효율 과세: 연료소모 기준	· 장애인은 소비세 면제
칠레	19%	· 등록세: 첫 등록요금 · 중고차 세금: 가격의 1.5%	-
체코	21%	· 등록요금: 이륜차 CZK 300, 기타 CZK800	-
덴마크	25%	· 등록세: 차량 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개인: 105~180%, 사업용: 0~50%)	· 연료 소모 낮은 차의 환급: 최대 DKK 4,000 경감 · 안전장치 차 DKK13,370, 그 외 DKK200~600
에스토니아	20%	· 등록 요금: EUR 128	-
핀란드	24%	· CO ₂ 를 기준으로 차 가액의 5~50%	· 장애인, 택시, 구조차, 가족치료 차등 면제
프랑스	20%	· CO ₂ 와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마력당 EUR 27~46으로 다양함 · 법인차: CO ₂ 기준 EUR 2~19 부과 · 추가 트럭세: 중량에 따라 3.5톤 이하의 EUR 38부터 11톤 이상은 EUR 305부과	· 새로운 시스템에서 3.5톤 이하 차, 이륜차 등 면제 · 전기·가스차는 50~100% 감면 · 에탄올차는 50%까지 경감 · 보조금·부과금 지급
독일	19%	-	-
그리스	23%	· 등록세: 가격의 5~34.6%(트럭 등 은 5~36%), 버스는 좌석수 기준 · 고급 자동차: 가격의 10~40%	· 공공목적, 하이브리드 전기차, 장애인, 경찰에 기부한 차 등
헝가리	27%	· 등록세: 엔진종류, 실린더기준 HUF 45,000~400,000(이륜차는 HUF 20,000~230,000) · 양도: 엔진출력기준(HUF 300~800)	· 하이브리드 및 가스차(HUF 76,000), 전기차는 등록세 경감
아이슬란드	25.5%	· 첫 등록에 대해서는 ISK 15,000이며 추가적인 변경은 ISK 2,630 · 소비세(excise duty): 사업용은 CO ₂ 기준 0~65%, 비 사업용 13~30%	· 전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와 수출은 부가세 일시 면제

〈표 II-13〉의 계속

국가	부가세	등록세·요금 및 기타	환급/ 면제
아일랜드	23%	· 등록세: CO ₂ 를 기준(14~36%)	· 전기차 등은 세액공제(EUR 1,500~5,000), 장애인은 환급
이스라엘	18%	· 구매세: 개인과 상업용 자동차 중량이 3,500Kg을 넘지 않는 차는 가격의 83% 부과	· 오염배출에 따라 15단계의 환급 적용 · 하이브리드차는 2단계로 30%를 환급
이탈리아	22%	· 등록세: 엔진출력, 좌석수 등의 기준	· 장애인, 자선단체, 개인중고차 판매 등은 감면
일본	5%	· 등록세: 가격의 5%(상업용 3%)	· 자동차취득세 경감 특별 규정 적용
한국	10%	· 등록세: 판매가격의 2%~7% · 특별소비세: 출고가격의 0%~5% · 교육세: 특소세 30%	· 장애인, 3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 경감
룩셈부르크	15%	· 등록세: CO ₂ 배출기준	· 보상시스템: 하이브리드 차는 EUR 5,000을 보상
멕시코	16%	· 등록세: 가격의 2~17%	· 하이브리드, 전기차 감면
네덜란드	21%	· 등록세: CO ₂ 배출기준 (EUR 105~474)	· 친환경 차는 등록세 면제 · 사업용차는 10% 경감 · 공익 차는 환급
뉴질랜드	15%	· 등록세: 실린더기준 (NZD 291.08~462.30)	-
노르웨이	25%	· 엔진마력, CO ₂ , 차종 기준	· 전기차는 등록세면제 · 하이브리드 차는 환급
폴란드	23%	· 소비세: 엔진출력기준 (3.1~18.6%)	-
포르투갈	23%	· 소비세 : 실린더기준	· CO ₂ 배출에 따라 환급
슬로바키아	20%	· 행정요금: 엔진마력 기준 (EUR 33~2,997)	· 장애인은 환급, 공공기관은 감면
슬로베니아	22%	· 등록세: 환경기준, 가격의 1~3% · 환경세: 중고차에 부과	· 3자녀 가구, 장애인 등 면제
스페인	21%	· 등록세: CO ₂ 배출기준(0~14.75%)	· 스쿨버스, 택시, 렌탈 차 등은 등록세 면제
스웨덴	25%	-	-
스위스	8%	· 등록세: 가격의 4%	· 전기차 등은 면제
터키	18%	· 이륜차과세: 실린더기준(22~37%) · 특별소비세 부과	· 장애인 차는 특별소비세를 면제
영국	20%	· 첫차 등록요금: GBP 55.0	· 장애인 차 등은 첫차 등록요금을 면제
미국	-	· 가스거주러세: 연료효율기준 (USD 1,000~7,700) · 트럭의 소매판매세: 판매가액의 12%	· 경찰이나 소방 목적 등은 가스거주러세(gas guzzler tax)를 면제

자료: Table 5.A5.1., "Consumption Tax Trends 2014," OECD

- OECD는 자동차세율 차이는 국경간쇼핑(cross-border shopping)을 초래하지 않으나, 과세차이는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 자동차는 해당 국가의 과세시스템에 맞게 제조되어 타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자동차 구입단계의 과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되, 사용단계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안의 내용은 5~10년 이내에 자동차 등록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되, 자동차 보유나 사용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세수감소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함

다.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정기적인 과세

- 자동차 운행에 관한 세금은 연료와 고속도로 요금에 대한 소비세나, 통행료와 연료과세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연간 자동차세, 자동차의 사용 및 공공도로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용단계 시 부과되는 정기의 부과 기준은 구입단계의 부과 기준과 유사함
 - 사용되는 연료의 타입, 자동차종, 엔진 크기, 연식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
- OECD 회원국의 자동차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요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개국은 오염배출, CO₂배출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기준으로 세금 및 요금을 부과함
 - 벨기에는 별도의 보정과세를 부과하며, 아이슬란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처리요금을 환경세로 부과함
 - 그 외 대부분의 나라는 오염배출을 기준으로 하여 운행세, 보유세 등을 과세하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는 운행세, 보유세, 유통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며, 그 외 자동차 등록, 처리,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
 - 자동차 등록에 대한 요금으로 호주, 뉴질랜드는 정기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며 캐나다는 자동차 사용에 대한 요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함
- 공공기관, 장애인, 외교사절단, 영사관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나, 보존대상 차의 경우 자동차 사용 및 운행단계에서 세금 등을 면제 또는 경감 적용하나 일부 국가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과세함
 -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등 10개국은 면제나 경감 적용 없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세금 및 요금을 부과함

〈표 II-14〉 OECD 회원국의 자동차 보유 및 운행단계 과세

국가	자동차 세 등	환급/ 면제
호주	· 자동차세: 지역별로 요금 부과(상업용차는 비상업용에 비해 요금이 높음)	-
오스트리아	· 자동차세: 허용된 무게를 초과하는 차 기준 (매달 톤당 EUR 1.55~1.90)	· 공공기관, 장애인, 농업용 등은 면제
벨기에	· 자동차세: 물리적 마력기준, (EUR 67.08 ~1,714.20) · 보정과세(compensation tax): 연료기준, (EUR 89.16~208.20)	· 공공기관, 장애인 등은 면제
캐나다	· 자동차세: 차종 기준, 정기요금	-
칠레	· 자동차세: 차의 경제적 가치 기준	-
체코	· 자동차세: 모든 차에 부과(CZK 1,200 ~44,100)	· 공공기관, 저연료 차 등은 면제 · 복합운송차는 25~100% 경감
덴마크	· 자동차세: 비상업용차는 디젤/휘발유의 소비 기준(2007년 4월 24일 이후 등록된 트럭은 DKK 5,510(3,000~4,000Kg))	-
에스토니아	· 자동차세: 대형 수송차는 무게 범위, 차축 조합, 서스펜션 종류기준 (EUR 0~232.6)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은 면제
핀란드	· 자동차세: 승용차와 화물운송트럭은 CO ₂ 배출 기준(EUR 19.35~606.26), 여객 자동차· 화물운송차는 마력기준, 트럭은 중량, 차축의 수 기준	-

〈표 II-14〉의 계속

국가	자동차 세 등	환급/ 면제
프랑스	· 자동차세: 사업용차 엔진출력기준 EUR 1,130~2,440)	· 10년 경과 차, 공익목적 차는 면제 · 휘발유, GPL 차는 50% 감면
독일	· 자동차세: 2009.7.1 이후 등록된 차는 기본 요소(100cc당 휘발유는 EUR 2, 디젤은 EUR 9.5)와 CO ₂ 요소(CO ₂ /Km당 EUR 2)부과	· 오염배출 낮은 차는 면제 · 2011.5.18~2015.12.31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 10년간 면제
그리스	· 자동차세: 2010.10.31 이후 등록된 차는 CO ₂ 배출 기준(CO ₂ g당 EUR 0~3.4) · 버스는 좌석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	· 공공기관, 장애인 등은 면제 · 전기차, 일정기준의 하이브리드차, 승용차, 이륜차 등 면제
헝가리	· 자동차세: 승용차, 이륜차는 엔진기준(HUF 140/Kw~345/Kw), 카라반, 버스는 중량기준 (HUF 850/100Kg, 트럭은 무게의 50% 가산)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공익목적 차 등에 대해서는 면제
아이슬란드	· 자동차세: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 처리요금: 첫 등록부터 15년간 반기기준 ISK 350부과(폐품 운송차는 ISK 20,000 환급)	-
아일랜드	· 자동차세: 비사업용은 CO ₂ 배출기준(EUR 120~2,350), 사업용은 무게 기준(EUR 333~5,195)	· 비사업용 전기차 EUR 120 부과, 1,500Kg 이하 사업용은 EUR 92
이스라엘	· 자동차세: 비사업용, 3,500Kg 이하 사업용 차 (NIS 687~4,341, 3,500Kg초과 사업용은 추가 부과)	· 장애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면제
이탈리아	· 보유세: 실린더, 오염배출기준(Kw당 EUR 2.58~4.95) · 승객·물류 운송차의 부가세(surtax): 185Kw 초과 Kw당 EUR 20 부과, 기간기준 경감	· 30년경과 보존대상 차(특히 보존 가치 있는 20년 경과차)면제 · 처음 5년간 전기, CNG차 100% 보유세 면제, 이후 75%면제
일본	· 톤세: 사업용차의 무게기준(0.5톤당 JPY 4,100~6,300, 트럭은 JPY 3,300~6,300), 비사업용차는 실린더 기준(JPY 29,500~111,000)	· 친환경 자동차, 공익목적 차 등은 경감(검사증의 기한 내 폐기한 경우에는 환급)
한국	· 자동차세: 실린더 용량기준 (비사업용 은 cc 당 80~200원, 사업용은 cc당 18~24원)	· 장애인은 면제
룩셈부르크	· 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CO ₂ 배출, 연료 기준	· 장애인, 보존대상 차, 공공기관, 전기 차는 면제
멕시코	· 등록요금: 가격, 차종, 여객수 기준(MXN 400) · 보유세 : 3~19%로 부과	· 공공여객을 위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는 일부 주에서 면제
네덜란드	· 적재량, 연료종류, 지역 기준 · 화물 운송차 과세는 무게가 12톤 이상에 부과	· 오염배출 낮은 차(2016년까지) 공익목적, 공공기관 등은 면제
뉴질랜드	· 연간 등록요금 : 차종기준 · 개인 승용차, 휘발유차는 NZD 280.55를 부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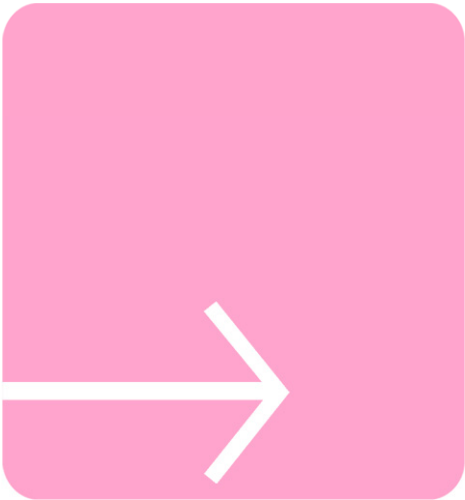
〈표 II-14〉의 계속

국가	자동차 세 등	환급/ 면제
노르웨이	· 연간세: 디젤차는 파티클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는 NOK 3,490, 그 외는 NOK 2,995부과(바이크, 트랙터 등은 소액 부과)	-
폴란드	· 자동차세: 3톤 이상인 상업용차에 부과	· 공공기관, 보존대상 차 등은 면제
포르투갈	· 보유세: 모터용량과 CO ₂ 배출기준	· 지자체, 소방서, 장애인 등 면제
슬로바키아	· 자동차세: 사업용 차는 차종, 무게, 실린더 용량 등 기준 부과	· 공공기관은 면제함 · 공익목적 등의 경우는 경감
슬로베니아	· 유통세(매년 과세): 사용에 대한 요금	· 전기차, 트랙터 등은 면제 · 친환경차는 경감
스페인	· 자동차세: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부과 · 등록세: CO ₂ 배출 기준(0%~ 14.75%)	· 공공기관, 앰블런스, 장애인 자동차, 보존대상 차 등
스웨덴	· 유통세: 2006년 이후 버스, 캠퍼밴 등 대형 자동차에 CO ₂ 배출기준 부과 (SEK 360+CO ₂ g당 SEK 20씩 부과, 디젤은 추가)	· 친환경 차(처음 5년간), 무게에 비례하여 CO ₂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차는 면제
스위스	· 칸톤(지역): 무게, 배기량 기준 · 연방: 3.5톤 이하의 화물차와 승용차는 스티커 형식으로 CHF 40 부과	· 전기차와 농업용 차는 경감
터키	· 자동차세: 실린더용량, 종류, 무게 기준으로 모든 자동차에 일년에 두 번 부과	-
영국	·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는 연료 종류와 CO ₂ 의 양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	· 장애인, 1973년 1월 1일 이전 보존대상 차, 경찰차 등
미국	· 55,000 파운드 이상의 트럭은 무게기준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p. 15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¹²⁾ 예산안 발표¹³⁾

[조세동향 15-02호]

- 2015년 2월 2일 오바마 행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FY2016 Revenue Proposals)을 발표하고 동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조세정책으로 했던 과거 2012년의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세제개혁(Business Tax Reform)’ 제안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을 ‘가속 감가상각제도(accelerated depreciation)’의 폐지, 부채조달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완화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개인 세제(individual taxation)’에 있어서는 자본이득세제(taxation of capital gains)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정한 고소득 개인에게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제안함
 - 고소득 개인이란 통상소득(ordinary income) 과세 시 최고 한계세율 39.6%가 적용되는 개인을 말함
- 한편, 세법개정안 외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의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12)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3)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19754.aspx>

of 2011)’에서 정한 지출 기준금액보다 740억달러를 초과함

-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과거 ‘해외 미송금 소득(unrepatriated foreign earnings)’에 대한 일회적(one-time) 과세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6년여로 예상되는 운송 기반시설 투자(4,780억달러 소요) 지출을 제한함

1) 국제조세 개혁 조치

-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foreign income)’에 대해 과세이연하지 않고 최소 19%의 세율을 적용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을 제안함
 - 이 규정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이전시키고 소득(profits)을 유보시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최소세율 19%는 추정된 ‘해외실효세율’의 약 85% 수준에서 결정한 것임
 - 해외 소득에 대하여 즉시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최소 세율 부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과거 과세되지 않았던 미국 기업의 누적, 유보되었던 해외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한시적 과세(one-time tax)’를 할 것을 제안함
 - 이 규정에 의해 14%로 과세된 소득이 추후 미국으로 송금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과세는 없음
- ‘회사전환 방지규정(anti-inversion)’¹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조세회피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첫째, 내국법인에 대한 ‘주주 지속요건(shareholder continuity)’ 중 80% 요건은 50% 요건으로, 60% 요건은 0% 요건으로 그 기준을 낮춤

14) 주식교환 등을 통해 해외에 모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 자회사를 됴으므로 CFC 과세제도 등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현재 해외 모회사의 내국 자회사의 지분 요건이 80% 이상인 경우 주식 교환행위는 부인되고 모회사는 세무목적상 미국 기업으로 취급되며, 지분 요건이 60%-80%이면 해당 거래는 전환거래(inversion transaction)로 보아 모회사의 일정한 이익을 과세할 수 있음

- 둘째, 주주 지속요건과는 상관없이, i) 내국법인의 주식 공정가치가 외국회사의 주식 공정가치보다 크거나, ii) 외국회사를 포함한 모든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통제되고 있고 해당 외국회사가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환거래(inversion transaction)으로 간주됨
-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foreign-parented group)’의 미국 내 관계회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현행법하에서는 미국 내 자회사로 하여금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한 후, 미국 자회사 소득의 절반까지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미국 내 관계회사의 총 이자소득 + 당해 해외 다국적기업의 순이자비용 중 미국 내 관계회사가 비례적으로 배분받는 금액’으로 할 것을 제안함
-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해외로부터 미국 내에 내재화(insourcing)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이익을 가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내에 사업장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격비용의 20%를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반면 미국 내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이전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행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저세율(또는 ‘0’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관계회사로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일정한 이익에 대하여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함
 - 무형자산 중 인적자원(workforce in place), 영업권(goodwill),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유형 또는 금융자산이 아니면서 개인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실질적 가치가

있으며, 납세자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여타 항목(any other item)’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음과 같은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세무상 허점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세법과 해외 세법 간의 거주자 판정의 비일관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무국적 소득(stateless income)’ 발생 행위를 막기 위하여, ‘혼성 계약(hybrid corporate)’ 형태를 사용한 국제거래를 제한함
- 최근 변화된 인터넷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명확히 함

2)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조치

□ 2014년도로 종료 예정인 적격 감가성 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손금)처리 규정을 2015년 이후에도 연장,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현재 비용처리액 한도는 50만달러이며, 2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가 비례적으로 축소되게 되어 있음
- 이번 제안에서는 2015년 이후에도 동 규정이 영구화하며, 2017년 이후에는 한도(50만달러) 및 임계점(200만달러) 금액을 물가연동시킴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안정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발행되고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소규모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본이득세를 100% 면제함
- 양도차익 비과세액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킴
- 6개월 이상 보유한 소규모 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비용(start-up expenditures)의 사업 첫해 즉시 손금처리 한도액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사업 첫해 손금 한도를 현행 5,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인상함
- 피고용인 및 그의 가족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 기여금 불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함
 - 기존 고용 정규 근로자수 ‘2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
 - 이에 따라 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 기준 근로자 수도 기존 10~25인에서 20~50인으로 변경함

3)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

- 혁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세액공제(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의 공제액을 늘리고 영구화 할 것을 제안함
 - ‘대체간편법에 의한 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의 경우 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함
 - 기업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면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동 세액공제를 영구히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종료 예정인 ‘미국인 교육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제도를 영구히 함
 - 중등교육과정 이후(post-secondary education)의 학생에 대해 지출하는 등록금이나 관련교육비에 대해 4년 동안 매년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임
 - 또한 실직 후 1년 내에 교육 훈련을 받고 6개월 내에 취업하는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disabled veterans)에게도 관련 교육비용에 대해 AOTC를 받을 수 있게 함

□ 클린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함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를 영구화 함
- ‘주거와 관련된 전기생산 세액공제(credit for residential energy property)’를 개인에게도 허용함
-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renewable energy investment tax credi)’를 영구화 함

□ ‘신시장 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신시장 세액공제 적용을 영구화 함
 - 신시장 세액공제란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부동산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임
- ‘적격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로 인하여 신시장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4) 중산층 가계 지원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

□ 고소득 개인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자본이득과 적격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0%에서 24.2%(순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8%)로 상향시킴
 - 자본이득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통상소득 수준이 457,600달러를 초과하여 통상소득 한계세율 39.6%가 적용되어야 함

□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 투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회사에는 그들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7basis포인트의 수수료(fee)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동 수수료의 부과대상은 자산규모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ies), 금융중개회사(financial broker-dealers) 등이며, 해외 기업의 미국 자회사도 포함됨
- ‘맞벌이 부부(two-earner married couples)’에게 연 500달러를 세액공제 해주는 ‘맞벌이 가구 세액공제(second earner credit)’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약 2,400만 가구가 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 소득세율 33% 이상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을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나 특정 비과세(certain income exclusions) 등의 산정 금액이 과세소득의 28%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제한함
- 일정한 고소득자에 대하여 공정분배세(fair share tax)를 부과하도록 하는 버핏룰(Buffett Rule)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고소득자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가계소득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 기혼자 개별신고기준 50만달러 이상인 자를 말함
 - 고소득자에게 조정총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함
- ‘회사 전용기(corporate jets)’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general aviation passenger aircraft)’ 취득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현행법하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계약상으로 여객,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사 보유 비행기의 경우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이 이외의 비행기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회사 전용기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의 경우 적용되었던 특별 감가상각제도(5년 상각)를 폐지하고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도록 함

- 헷지펀드 매니저와 여타 유사한 투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을 통상소득으로써 과세할 것을 제안함
 - 현재 투자파트너십의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분배금을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함
 - 자본이득세 세율(20%)은 미국 중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낮음
- 2017년 이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수준을 2009년 수준으로 영구히 상향함
 - 최고세율은 상속세(estate tax), 세대생략증여세¹⁵⁾(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모두 45% 수준으로 인상함
 - 면제한도(exclusion amount)는 상속세와 세대생략증여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00만달러로 인하함
 - 면제한도에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음

5)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 주정부·지방정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패스트 포워드 채권(America Fast Forward Bonds)’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통적 비과세 정부채권(traditional municipal bonds)’ 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연금펀드나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한 것임
 - ‘패스트 포워드 채권’은 ‘전통적 비과세 정부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과세 채권임
 - 패스트 포워드 채권은 주로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 자금조달, 기존

15)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 이후 세대에게 직접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목임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될 것임

-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민간-공공부문 파트너십 제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과세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s)인 ‘적격 공공 기반시설 채권(Qualified Public Infrastructure Bonds)’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공항, 도크 등 해당 프로젝트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유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채권을 발행함

나. 상원 재정위원회의 조세개혁보고서 공개

[조세동향 15-07호]

- 미국 양당 조세조사위원회(Bipartisan Tax Working Groups)는 2015년 7월 8일 조세개혁을 위한 5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제출함¹⁶⁾
- 5개 분야는 법인, 개인, 저축과 투자, 국제,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임
- 이러한 연구는 2015년 1월 조세개혁청문회와 더불어 시작되었음
 - 5개 분야의 조세개혁청문회 이후 2015년 3월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가 이번에 공개됨
- 일부 보고서는 양당 간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있는 내용도 존재함

1) 법인세¹⁷⁾

- 법인세 개혁을 위한 원칙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경제개혁, 납세행정 또는 협력비용의 감소를 제시함

16)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ttp://www.finance.senate.gov/newsroom/chairman/release/?id=91b11f78-3ca0-4b45-9bf7-1644945f35b9>).

17) The Business Income Tax Working Group, The Business Income Tax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Report, July 2015

-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적 법인세제를 지향함
 - 구조화되는 조세회피에 대응하되, 투자를 촉진함
 - 특히 도관회사(pass-through entities), 부채조달전략(debt-financing) 등을 통한 조세회피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 경제혁신을 촉진함
 -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촉진하여 납세자의 협력을 향상시킴
- 법인세 개혁 중 조세 중립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인세법의 개혁원칙으로 한번의 과세(only once)와 저해유인(disincentive)의 제거를 제시함
- 한번의 과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지양하는 것임
 -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유인을 제거함
- 미국 경제혁신을 위해 향상된 연구개발공제, 특허박스(Innovation Box Regime) 및 미국 자원 자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이 현재 다른 국가들보다 연구개발공제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영구적인 연구개발공제를 제공함
 - 특허박스 세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다른 법인세제도 개선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함
 - 에너지 간 조세 중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에너지관련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확장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
- 복잡성을 감소시키면서 납세자의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행정의 개혁을 제안함
- 신고기간의 합리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전자신고의 의무화 등이 이에 해당함

2)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¹⁸⁾

-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중기적 제안(interim option)과 장기적 제안(long-term option)을 제시하고 있음
- 중기적 제안은 미국 사회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고속도로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의 지속가능성과 지불능력(solveny)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비과세된 외국 소득 등에 대해 일시적인 전환세(one-time transition tax)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지지함
 -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나 미국의 현재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장기적 제안은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자 및 직접적인 수혜자가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이러한 체계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마일리지세금체계(mileage-based tax system)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세금은 차량 등에 의한 도로손괴 및 정체에 기인한 원가에 부합하게 부과되므로 고속도로 자금조달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3) 개인소득세¹⁹⁾

-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크게 기부 및 교육에 관한 세제혜택과 조세행정 및 간소화 제안으로 나누고 있음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고 기술하고 있음

18) The Community Development & Infrastructure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The Community Development & Infrastructure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Report, July 2015

19) The Individual Income Tax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The Individual Income Tax Tax Working Group Report, July 2015

- 세수의 수준, 세율과 성장과의 관계, 누진의 정도 및 여타 조세체계구조 등에 대한 공정한 세제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 한시적인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서의 적격기부 및 적격보전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의 영구화 및 확대에 대해 고려함
- 개인퇴직계좌 총소득에서 적격기부액을 제외하는 법률은 2014년말까지로 한시적 적용되는데 이를 영구화하고, 제한된 기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적격보전기부는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영구화하고,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함
-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진 고등교육지원세제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함
- 납세자가 보다 쉬운 적용 및 과다 또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교육 지원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함
 - 2013 미국기회장려세 영구화 및 통합법(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Permanence and Consolidation Act of 2013)과 2016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화방안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세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신원도용(identity theft)에 대한 대응과 신고기한 재정비 및 과세관청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고려함
- 신원도용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대안을 포함한 이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신고내용 또는 소득에 따른 각종 다양한 신고기한에 대한 순서를 재정비하고, 미국 국세청의 효율적인 신고검증과 오류탐지를 위해 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고려함

4) 국제조세²⁰⁾

- 국제조세의 개혁 이유로 기업이전/외국취득(Inversion/Foreign Acquisition)과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BEPS)를 들고 있음
 - 미국내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이전을 행하여오고 있으며, 미국이 BEPS프로젝트를 따를 의무는 없으나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조세개혁으로 빗장효과의 제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국내로의 소득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lock-ou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OECD회원국들을 참고하여 배당에 대한 면세를 고려함
 - 다른 국가들이 미국 소득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하고, 특허를 미국내에 유지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박스제도(patent box regime)의 도입을 고려함
 - 국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미국 기업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지배 외국법인규정의 하나로 국외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방안들을 계속 고려중에 있음
 - 국제조세위원회의 공동의장은 국외로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국 세원을 확보하고 조세피난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글로벌 국내기업과 미국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기업의 과도한 부채레버리지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규정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임
 -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아우르는 규정이 될 것임
 - 국외노동소득 등의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임

20) The International Tax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The International Tax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Report, July 7 2015

- 적절한 세율, 외국세액공제, 과세대상비율 등이 포함될 것이며, 단계세율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될 것임
- 이외에 피지배외국법인소득, 능동적 금융배제, 부동산세법상 외국투자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5) 저축과 투자²¹⁾

- 저축과 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소득, 배당, 금융상품, 확정급여연금제도, 사적퇴직저축계좌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사적퇴직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에만 보고가 이루어짐
- 퇴직제도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사용자제도 도입, 가입 초기의 세액공제 확대, 자동등록제도(automatic enrollment plans)의 세이프하버를의 상향조정을 고려함
 - 소규모 사용인이 높은 수준과 낮은 비용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사용자제도의 허용을 권고함
 - 현재 가입 초기 3년간 매년 500달러의 세액공제 및 소규모기업의 자동등록제도의 경우 추가적인 1,500달러의 세액공제는 낮은 수준이므로 이의 확대를 권고함
 - 자동등록제도에 대한 세이프하버를을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사용인이 이러한 추가 기여금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공을 권고함
-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참여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사용자 확대, 환급 가능 세액공제, 교퇴퇴직제도의 법체계 정비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장기 또는 일시적인 사용자가 퇴직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안을 권고함

21) The Savings & Investment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The Savings & Investment Bipartisan Tax Working Group Report, July 7 2015

- 환급가능한 저축자의 세액공제를 제안하고,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함
-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교회퇴직제도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체계의 보완을 권고함
- 저축수준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함
 - 과세대상인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함
 - 제도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함

2 캐나다 - 2015 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²²⁾

[조세동향 15-05호]

- 캐나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5년 4월 21일자로 2015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세부 내역을 발표함
 - 동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 개정안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짐
 - 주로 법인세, 소득세 및 기타 국제조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가. 법인소득세(Business Income Taxation)

-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small business tax rate)이 현행 11%에서 9%로 단계적으로 경감됨
 -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캐나다 내에서 관리

22) www.ibfd.org 참조

되는 사적 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 수행하는 소정의 능동적 사업활동에 발생한 소득 중 매년 50만캐나다달러까지 적용됨

- 동 예산안에 따른 세율 경감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다음과 같이 매년 단계적으로 경감됨

- 2016.1부터: 10.5%, 2017.1부터: 10%, 2018.1부터: 9.5%, 2019.1부터: 9%

- 상기 소규모 사업자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이와 관련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gross-up율도 18%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됨

캐나다 내의 생산설비 등에 대해 특별 가속상각을 허용함

- 2015~2026년까지 생산 또는 판매·리스용 제품 가공을 위해 캐나다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함

- 이들 장비에 대해 50%의 가속상각률을 적용하여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허용함

주식파생상품 거래와 연계된 특정 상황의 경우 법인간 배당금 지급에 대해 적용되는 배당소득 공제를 제한함

- 금융기관 등이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통해(synthetic equity arrangement) 주식 보유로부터의 손익발생과 같은 경제적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배당만을 수취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캐나다 법인의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법인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간 배당금 지급에 대해 적용되는 배당소득 공제를 부인함

나. 개인소득세 (Personal Taxation)

비과세 개인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 불입 한도가 늘어남

- 동 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의 연간 한도가 5,500캐나다달러에서 10,000캐나다달러로 늘어나며,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해당 불입 한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아니함
- 노인 및 장애인의 주거 개선 지출을 지원하는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가 신설됨
 - 노인 등 특정인의 주거에 대해 소정의 지출을 할 경우 해당 지출액(최대 10,000캐나다달러까지)의 15%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부여함
 - 특정인(qualifying individuals) 요건: 65세 이상의 연장자 또는 장애인
 - 적용 대상 주거(eligible dwellings): 상기 특정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등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 적용 대상 지출: 특정인이 주거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움직이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 또는 개량(alteration)하는 것(일례로 휠체어 통로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당해 주거의 가치 증대가 주목적인 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 세액공제는 특정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세

-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정의 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사기업(private corporation)의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을 소정의 수증자에게 기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해당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으로 받은 현금을 양도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증자에게 기부한 경우
 - 해당 주식 또는 부동산의 구매자가 증여자 및 수증자와는 특수 관계없는 제3자로서의 거래(dealing at arm's length)를 수행하는 경우일 것
-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OECD BEPS Action Plan 및 자동적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BEPS Action Plan과 관련하여 OECD 및 G20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임
 - 자동적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정보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을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내에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강화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비조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나, 향후에는 비조세 채권 회수를 위하여 국세청 내에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II 유럽

1 그리스

가.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관령을 발표²³⁾

[조세동향 15-03호]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장관령 1037”은 이자비용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넘으면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명시함
 - 회사의 이익(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 전)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60%를 넘는 경우
 -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²⁴⁾의 50%를 넘는 경우
 -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의 40%를 넘는 경우
 -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의 30%를 넘는 경우
 - 상기의 EBITDA는 회계상 자료에 세무상 손금불가항목을 합하여 산출된 금액임
 - 단, 과세연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300만유로 이하의 이자는 전액 손금처리됨

- 또한 그리스에서 다른 EU 국가로 배당을 보낼 때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인 “장관령 1039”을 공포함
 - 이 기준에 따르면 관련 EU 회사는 그리스 법인의 지분 중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최소 연속되는 2개년 동안은 경영 참여를 해야 함

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5-documents>

24)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을 산입하기 전의 영업이익임

-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면제의 혜택은 배당이 법적인 실체가 없는 파트너십이나 신탁 등에 지급될 때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납세자가 동 혜택을 받는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산입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복적인 세계 혜택을 금지함

나. 해외자산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 부여 계획을 발표²⁵⁾

[조세동향 15-05호]

- 그리스 재무장관은 2015년 5월 4일에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서 완화된 세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부채 상황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도 도모함
 - 완화된 세율 및 규정은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서 기존의 탈세자와는 달리 15~20%의 세금만 부과하고 추가적인 벌금은 면제하며, 해당 자금을 그리스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 기존의 탈세자에게는 탈세 소득에 대해서 적발시 46%의 세금과 46%의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벌금 없이 15~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이 제도는 조세사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미신고 해외자산은 그리스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보내진 재원으로 이루어진 자산임
 - 동 계획은 주로 예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미신고 해외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시리아 총리 정권은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자진납세로 유도하기 위해, 거액 탈세자에 대한 체포 뉴스와 동시에 동 조세사면 계획을 발표 하여 자진신고의 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25)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518.pdf/\\$file/TI78051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518.pdf/$file/TI780518.pdf)

2 네덜란드

가.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변경에 대한 시행령 발표²⁶⁾

[조세동향 15-02호]

- 네덜란드는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조세제도 중 일부를 변경한 시행령 (BLKB 2015/34M, BLKB 2015/38M 및 BLKB 2015/33M)을 2015년 1월 27일자로 발표함
- 동 법령은 2015.2.7.부터 효력을 발하며, 2015년 1월 27일까지 소급효를 가짐
- 네덜란드는 합병 및 분할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에서는 당해 특례제도 중 일정 요건을 수정하고 일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네덜란드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합병 및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 특례 적용 요건은 주로 합병 또는 분할 당사 회사의 세법상 특성,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회사들이 소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회사들의 신청에 의해 과세당국의 조사를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음
- 합병 관련 개정 사항은 주로 이월결손금 사용에 대한 납세자 편의 확대 및 합병 관련 부채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것임
 - 합병 당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 사용 관련 신청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부채에 대한 재평가를 현행과 같이 명목가액(nominal value)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정가액(fair market value)을 적용토록 함

26) www.ibfd.org 및 www.deloitte.com 참조

- 분할 관련 개정 사항은 관련 요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제시 및 특례 적용 절차 관련 납세자 편의 증진 등으로 구성됨
 - 재평가적립금(reevaluation reserve)이 있는 경우의 분할 거래에 대한 자세한 해석 제시
 - 관련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승인하는 절차 도입
 - 해외 고정사업장에 대한 감면, 지분참여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및 해외사업 소득 공제 등과 관련된 요건들을 추가함

나. 조세 개정안 의회 제출²⁷⁾

[조세동향 15-06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조세 개정안(the planned tax reform)을 담은 서한을 의회로 송부함
 - 이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세율 조정 등 조세 개정 방향을 개략적으로 정리·발표한 것임
- 법인세 분야에서는 자본 조달방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 등의 개략적 개정 방향을 천명함
 -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와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경우 간에 법인세 부담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조치할 예정임
 -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은 향후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사용될 것임
- 소득세 분야에서는 관련 세율 경감 등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임
 -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세율(현행 10.85% 및 42%)을 각각 2%포인트씩 인하

27) www.ibfd.org 및 www.ey.com 등 참조

- 52%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시작점을 상당히 올릴 예정임(현행은 EUR 57,585 이상부터 52% 세율이 적용됨)
 - 저임금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증대
-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별경감세율의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6%인 특별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상당 부분을 일반세율(현행 21%)이 적용되도록 조정할 예정임
 - 특히 노동집약 서비스, 서적 등의 품목에 대한 특별경감세율 혜택을 폐지할 것임
 - 다만 기본적인 식품품 종류에는 현행 특별경감세율이 여전히 적용될 것임
- 이 외에도 투자소득 간주세율 변경 및 자동차세 조정 등의 기타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주소득세(deemed yield tax)를 조정할 계획임
 -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당해 투자 순자산의 4%에 해당하는 간주소득(deemed yield)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간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해당 4%의 간주소득률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아 이를 하향 조정할 계획임
 - 저축,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간주소득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됨
 - 간주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30%의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임
 -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를 개편할 예정임

- 회사 임원 및 주주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세원 확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함
 - (i) 자가소유 주택 및 사업용 건물 사용에 따른 부동산세 및 (ii) 주민세 (residence tax) 도입 등의 세원 확보 방안을 계획 중임

3 독일 -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를 헌법불합치 판결²⁸⁾

[조세동향 15-01호]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공제범위에 대한 요소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 그리고 2016년 상반기 내에 불합치하는 요소 등을 개정하도록 주문함
- 동 판결은 2012년 연방재정법원(Federal Court of Finance)의 위헌법률심사제청에 대한 것임
 - 연방재정법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일부 납세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함
- 위 위헌법률심사제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일반적인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점
 - 현 가업상속공제는 회사 자산, 농업 또는 산림업 자산, 공동출자 회사의 지분의 취득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 가업상속공제의 조건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85~100%까지

28)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I761222.pdf/\\$file/TI761222.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I761222.pdf/$file/TI761222.pdf)

공제가 가능함

- 둘째,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용 자산을 규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여 개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위험성이 있음
 - 피상속인(고인)이나 기증자는 임의로 그의 사적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적인 자산도 상속·증여세를 감면받게 됨
 -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만 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그 자산들을 수동적 자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음
- 셋째, 독일은 상속·증여세법 제13a조와 제13b조의 조세혜택에 이외에도 제16조에서 일반적인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재정법원은 과세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즉 상속세는 규정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사문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함
- 일부 헌법불합치요소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운영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자체는 합헌인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회사의 승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자리의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헌임을 인정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5~7년간 제도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리고 정부가 현재의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유효하다고 결정함
 - 한편, 개정될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정부에 부여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정부는 사적재산을 사업재산과 분류하여 상속하는 법을 2013년에 입법하였지만 법원은 동 법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함
- 평등권 침해사항 이외에도 연방헌법재판소는 한 실체에 대한 대규모 가업상속 공제의 필요성 검토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특혜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현행 상속세법이 세액공제가 큰 실체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인 이하로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제관련 규정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4 루마니아 - 정부가 감세안을 제안²⁹⁾

[조세동향 15-03호]

- 루마니아 정부는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는 초안을 2월 18일 발표함
 - 루마니아 정부는 이러한 세율 인하안이 2016년에 1.7%의 추가적인 GDP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약 14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는 2019년 1월 1일 발효를 목적으로 하며 현행 16%에서 14%로 2%p 인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는 2016년 1월 1일 발효가 목표이며 세율을 24%에서 20%로 4%p 인하하는 것임

29)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70309.pdf/\\$file/TI77030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70309.pdf/$file/TI770309.pdf)

- 일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별개로 고기, 생선, 과일, 채소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임
- 2016년 20%로 낮아질 부가가치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2%p 더 인하되어 18%가 될 것임
- 배당에 대한 과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배당에 대한 과세의 개정으로는 국내 기업이 하는 배당에 대해서 주주들이 부담하는 현행 16%의 세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 배당에 대한 과세 폐지는 루마니아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자에게 매력적이게 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축 공사에 부과되는 1%의 세금은 2016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것임
 - 사회보장부담금은 고용주는 15.8%에서 13.5%로 근로자는 10.5%에서 7.5%로 각각 2017년 1월 1일부로 인하될 것임

5 벨기에

가.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³⁰⁾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³¹⁾

[조세동향 15-04호]

- 벨기에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3월 30일에 발표함
 - 신규 제도의 목적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증진하고, 예금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동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 투

30)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임.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 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의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함

31)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406.pdf/\\$file/TI780406.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406.pdf/$file/TI780406.pdf)

자를 활성화하는 것임

- 투자 시 인센티브는 개인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함
 -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s)의 신주에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신규 중소기업의 신주에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혜택을 부여함
 - 각 개인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의 대상 주식들을 4년 동안 보유해야 함
 - 크라우드 펀딩³²⁾을 이용한 투자 시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임
 - 각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지분 투자를 할 경우 7,500유로,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15,000유로임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 스타트업 기업의 인건비 지출을 경감해주는 혜택과 디지털기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금산입해주는 혜택도 도입함
 -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업 후 초기 4년간 원청징수되는 인두세(payroll tax)를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s)의 경우에는 20% 감면함
 - 신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감면함
 -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디지털기기에 투자할 때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3.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도입함

32)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지분투자, 기부, 후원, 대출로 구분됨

- 동 투자세액공제는 디지털기기 중 결제 시스템, 보안 시스템 같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투자에 한하여 적용됨

나.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³³⁾

[조세동향 15-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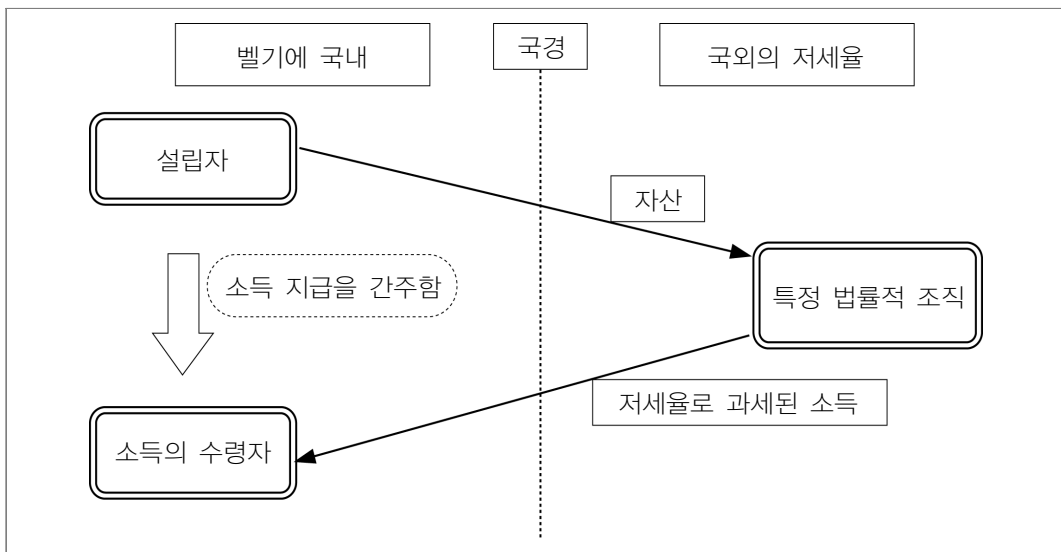
- 벨기에 내각은 2015년 5월 21일 벨기에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하여 소득에 저세율을 적용받은 후 해당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조세회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승인함
 - 동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벨기에 국내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해외에 설립된 특정 법률적 조직을 이용하여 설립지의 저세율만 적용받은 후 추가적인 과세 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함
 - 그리고 적용대상 소득이 벨기에 국내로 유입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벨기에 국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산출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단,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음
 - 수동적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잡수입, 전문적인 활동에 의한 수입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됨
 - 벨기에는 동 제도를 ‘케이먼세(Cayman Tax)³⁴⁾’로 부르기도 함
- 본 제도에 따라 저세율 관할을 이용하는 법률적 조직으로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저세율로 과세된 소득을 벨기에 국내에서 수령한 때에는, 동 소득은 벨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조직의 설립자(founders)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것임

33) www.ibfd.org 참조

34) ‘Cayman Tax’는 벨기에의 ‘Transparency Tax’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며 ‘Transparency Tax’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 권리,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구체화시킨 것임

- 적용대상 소득을 벨기에 거주자인 설립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해외의 저세율이 아니라 벨기에 국내의 세율이 되어 조세회피를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설립자는 설립자의 지배에 있는 법률적 조직의 수입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배분하는 자로 간주 될 수 있음
- 설립자(founders)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벨기에의 법적 실체로서 벨기에 세법을 적용받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림 II-1]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도해



-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조직은 법적인 인격이 없는 신탁과 분리된 법인격이 있는 법률적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조직임
- 법률적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 회사, 협회, 단체, 기관 또는 기타 실체들이 설립된 곳의 법에 따라서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설립된 관할에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나, 벨기에에서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제도³⁵⁾로부터 생긴 이익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여야 함
- 그러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기에 내에서 수령한 소득이 EEA³⁶⁾ 회원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 또는 조세정보교환 조약이 있는 다른 조세 관할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다시 지급될 경우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EEA 회원 국가들 및 조세정보교환 조약이 있는 관할은 벨기에 정부와 소득 세 및 기타 조세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6 스페인

가. 이전가격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³⁷⁾

[조세동향 15-01호]

- 스페인 정부는 2014년 12월에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전가격세제 및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 대한 후속 개정이 있었음

1) 이전가격세제 개정

- 이전가격규정을 적용받는 두 관계사 간의 지분율 조건을 완화함
 - 기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적용하였던 이전가격규정을 지분율 25% 이상 소유할 경우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범위를 완화함(관계회사로 공시한 경우에는 지분율 1% 이상 소유할 경우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함)

35) 현저하게 유리한 제도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15% 이하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의미함

36)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37)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5-01-12_es_1.html&WT_z_nav=Navigat ion&colid=4913

- 기업이 이사(director)에게 지급하는 업무 관련 급여를 이전가격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 이전가격규정 적용대상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급여는 제외하나 복리후생비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이사는 자신의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급여의 산정에 및 지급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가 있음
- 이전가격 적용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 A회사와 B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을 때 B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를 A회사와 관계있는 회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됨
 - 법의 적용을 일원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기업과 그 기업의 스페인 소재 고정사업장을 이전가격적용 대상 실체에서 제외함
 - 그러나 고정사업장과 그 고정사업장의 본사 간의 거래는 스페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세법(non-resident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관계회사 간의 거래로 간주됨
 - 협동조합세제를 적용받아 과세되는 기업을 제외함

2)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리납부에 대한 개정임
- 동 개정은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 물품의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함
 - 핸드폰, 콘솔게임,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컴퓨터를 공급하고 있는 재판매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정하여 의무를 부여함
 - 대리납부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방식과는 달리 물품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

무관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임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는 물품을 매출한 사람이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관청에 일괄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또한 대리납부 의무를 지닌 재판매업자에게 매출규모에 대한 고지 및 증명을 세무관서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 정부는 실제로 매출의사가 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재판매업자를 대리납부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고지와 증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함

□ 세무부서는 관련업체가 지방세무관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등록증을 접수하면 대리납부 수행능력을 보증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확인서를 발급할 것임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서 관련 업체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함

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발표³⁸⁾

[조세동향 15-05호]

□ 2015년 3월 30일에 스페인 세법위원회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인터넷 포털을 통한 구매와 판매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본통칙(V1029-015)을 발표하였음

- 스페인은 동 발표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기타 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s)’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동 조치로 스페인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로 인정하고 있는 EU내의 기초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비트코인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IT기업 및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U국가 중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지급

38)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5-05-04_e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비트코인을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간주하는 EU VAT Directive 2006/112/CE에 기반하고 있음
- 새로운 통칙에 의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는 거래, 납부, 이전, 대출, 수표거래, 기타 유통증권 등에 관한 거래임
-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는 금융서비스로서 비트코인이 사용 될 때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이번 발표로 비트코인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해서 일반 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됨³⁹⁾

7 아일랜드

가. 조세회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사면 지침 발표⁴⁰⁾

[조세동향 15-02호]

- 아일랜드 정부는 1월 30일 조세회피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사면 (Settlement Opportunity)의 상세지침을 발표함
- 조세사면은 2014년에 있었던 조세회피 거래의 내용을 자진신고받아 과세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납세자들은 거래에 대한 본세 및 납부기한 지체로 인한 미납 부가산세 중 80%만 납부하면 됨
 - 대상 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취득세, 인지세, 보편적 사회보상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임
- 그리고 국세청이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거래 적발 시 부과하는 부가추징금은 면제 받음

39) Spain, Law 37/1992, 28 December, of the Value Added Tax -Spanish Value Added Tax Act

40) <http://www.revenue.ie/en/practitioner/ebrief/2015/no-162015.html>

- 부가추징금은 본세에 대해 최대 20%까지 부과함
- 조세사면(Settlement Opportunity)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형태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함
 - ‘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제811조에 따라 조세수입위원회에서 지정한 조세회피 거래
 - ‘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제811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래
 - 국세청에 의해 “권리남용(Abuse of Rights)”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 회피 거래
- 동 조세사면은 시기적으로 2014 예산안이 발표된 2014년 8월 23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
 - 8월 23일 이후에 일어난 거래는 2014 재정법(Finance Act)에 있는 강화된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임
 - 강화된 GAAR은 조세회피 거래 적발 시 본세에 대한 추징금이 30%로 인상되었음
- 납세자는 조세사면을 이용할 때 적격한 조세회피자진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신고 시 미납세액 전액과 미납가산세의 80%를 납부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세무당국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조세사면을 이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조세회피 납세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음

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 발표⁴¹⁾

[조세동향 15-05호]

-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 프로그램인 Start-Up Refunds for Entrepreneurs(SURE)을 발표함
 - 동 프로그램은 근로자였던 자가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할 때 신규 기업이 SURE의 기준에 적격하면, 투자한 자본을 과거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임
 - 환급한도는 투자한 금액 대비 최대 41%까지임
 - 환급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은 전년도 6개년 동안 창업한 근로자가 신고했던 과세소득임
- SURE는 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종자자본제도(Seed Capital Scheme)를 대체하는 것임
 - 종자자본제도(Seed Capital Scheme)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97건의 불만사항이 있었으며 관련 금액은 4.9억유로에 달하는 규모였음
 - 기존의 종자자본제도는 투자기간과 환급기간 사이에 상당히 긴 공백기간이 있어 투자자들의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미흡하였음
 - 투자자가 2013년 초에 투자를 하면 환급신청은 연말에서야 가능했고 환급은 2014년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정도로 지원 시간이 길었음
- SURE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 개인 및 투자자금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적격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소득은 과거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임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야 함
 - 그러나 투자 직전의 연도에 받은 소득은 반드시 임금소득이 아니어도 되는 예외 사항은 있음

41) <http://www.revenue.ie/en/tax/it/leaflets/it15.html>

- 투자자는 최소 1년간 새로운 벤처기업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투자 첫해에는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는 다른 어떤 회사에도 취업을 하면 안 됨
- SURE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에 관련된 조건은 현금 매입, 보유조건, 일정비율 이상 타회사 주식 소유 금지의 조건이 있음
 -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해서 현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해당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 12개월 동안은 어떤 회사이든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음
 - 단 휴업 상태인 회사나 전기 3기 동안 매출이 127,000유로 이하의 SURE에서 인정하는 무역 회사는 15% 이상 소유 가능함
- SURE를 적용받기 위한 기업 자체에 관련된 조건은 설립기간, 설립 및 거주지 판정, 전임 고용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조건이 있음
 - 새 벤처기업은 설립 후 2년 이하여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인수한 것이 아니어야 함
 - 해당 기업은 아일랜드나 다른 European Economic Area(EEA)에서 설립되고 두 지역 중 어느 한 곳의 세무상 거주자여야 함
 - 그리고 SURE를 적용받는기업은 근로자였던 투자자의 전임 고용인 또는 전임 고용인과 관련된 회사와는 어떠한 거래도 있으면 안 됨

8 영국 - 2015 예산안 발표⁴²⁾

[조세동향 15-03호]

- 영국 정부는 2015 예산안을 3월 18일에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석유세 등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4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5-documents>

가. 소득세

- 일정 금액(1,000파운드 또는 500파운드)을 한도로 저축을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주는 개인저축세액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 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6년 4월부터임
 - 은행들은 2016년 4월부터 해당 이자를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20%)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적용 대상과 금액은 과세표준 42,700파운드 이하인 개인은 1,000파운드 이하, 과세표준 42,700파운드 초과 150,000파운드 이하인 개인은 500파운드 이하임
 - 과세표준 16,800파운드 미만의 개인은 2014년의 세법개정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를 하고 있음
 - 해당 이자가 ISA⁴³⁾계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동 제도가 적용됨
-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Income Tax Personal allowance)⁴⁴⁾를 현행 10,800파운드에서 11,000파운드로 2017년까지 인상하여 고세율(40%)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시점을 인상시킴
 - 금번 개인적 공제 인상 결과 고세율 적용 시점의 소득이 현재 42,385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43,300파운드로 인상되게 됨
 -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이유는 저소득과 중산층 지원의 목적이 있음
- 영국 내의 모든 개인들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으로 하는 소득세 신고를 디지털 세금 계정(Digital tax accounts)을 이용하여 신고를 수시로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5년 내에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신제도는 개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존에 연 단위로 처리했던 세무신고를

43)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뉘 운영되며 현금성 저축상품·주식·채권·펀드·투자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음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짐

44) 각 개인의 소득 중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공제해 주는 부분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추진

- 동 제도를 위해 도입되는 디지털 세금 계정(Digital tax accounts)은 인터넷을 통한 형태로 구현됨
 - 계정의 소유자들은 디지털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함
 - 개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에 자신의 세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세금 계정은 단순하고, 개인화되어 안전하도록 설계
- 계정 소유주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을 통해 등록, 신고, 납세,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세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
 - 소유주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에 등록된 정보들과 계속적으로 입력되는 수입 및 지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산된 과세액, 미납세액 및 납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함
 - 다만 납부는 각 세금의 기존의 납부기한 내에 처리해야 함
- 2016년까지 500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1천만명의 개인들이 디지털 세금 계정을 부여받고, 2020년까지는 모든 소규모 사업자 및 5천만명의 개인들이 계정을 부여받게 됨
 - 또한 2020년까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세청의 디지털 세금 계정과 연동될 것이며 연동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도록 함

나. 법인세, 석유세 등

- 법인세는 2013년의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현행 21%에서 1%p 인하하여 20%로 적용하기로 함

- 20%의 법인세율은 EU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법인세율임
- 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임
- 각각의 석유와 가스 광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석유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는 현행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석유회사들에 대하여 13억파운드의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함
 -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석유회사들의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 주류세는 맥주는 1파인트⁴⁵⁾당 1페니를 인하하고 증류주와 과일발효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2%포인트를 인하함
 - 단, 와인 및 탄산이 강한 과일발효주에 대해서는 인하안을 적용하지 않음
- 은행의 비예금 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은행세(Bank levy)를 2015년 4월 1일부터 0.21%로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9억파운드의 추가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기 지불부채에 대해서 기존의 0.156%에서 0.21%로 인상하였으며 장기지불부채 및 장기 지불자본에 대해서는 0.078%에서 0.105%로 인상하였음

9 이탈리아

가. 직·간접세 및 국제조세 개정 법령 공포⁴⁶⁾

[조세동향 15-01호]

- 이탈리아는 세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법령(Law No. 190 of 23, December 2014, the “Stability Law 2015”)을 2014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함

45) 1파인트는 0.568리터(영국에서의 단위임)

46) www.ibfd.org 및 www.deloitte.com 참조

- 동 법령은 2015. 1. 1.부터 효력을 발하며, 조세 분야에서는 주로 직·간접세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직접세(direct tax) 항목은 주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및 연금 등 개인소득세 위주의 개정 내용으로 구성됨
 -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업무를 시작한 연구인력(researcher)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IRAP”)를 전액 감면함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펀드에서 발생한 연간 순소득(yearly net result)의 9%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IRAP 납세자로서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IRAP 세액의 1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납세자가 세부 주식 종류에 따라 4% 또는 8%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step-up)할 수 있도록 함
 -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meal voucher)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1일당 5.29유로 또는 7유로(전자식권 형태로 발급시)까지는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타 해외 고용 소득, 연금, 생명보험금 등에 대한 과세방침 일부 조정 등
- 간접세(indirect tax) 항목에 대한 개정 사항은 주로 부가가치세율 조정 및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변경 등으로 이루어짐
 - 대리납부(reverse charge) 대상 확대: 청소업, 플랜트 설치 및 빌딩미장업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양도 및 가스·전기 증명서(gas and electricities certificates) 공급 등의 경우에는 4년간 대리납부 방식을 적용함
 - 현재 실행중인 재정지출삭감안이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경우 현행 22%인 부가가치세율을 2018년 25.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4%
 - 2017년 1월 1일부터: 25%
 - 2018년 1월 1일부터: 25.5%
- 전자책(e-books), 목재펠릿(wood pellet) 공급 및 관광숙박업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조정 등
-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강화함
- 이탈리아 거주자가 사전에 인정된 국가 목록(whil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납세자가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i) 거래상대방인 비거주자가 실제 사업활동(real business activity)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 ii) 당해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 목적하에서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
- 특정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과세 수준에 비해 5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를 저세율국가(low-tax jurisdiction)로 정의함

나. 투자촉진 관련 조세정책 법령(Urgent measures for investments) 공포⁴⁷⁾

[조세동향 15-02호]

- 이탈리아는 투자촉진 관련 조세정책이 반영된 법령(“Urgent measures for investments,” Law Decree No. 3/2015)을 2015년 1월 24일자로 공포함
- 동 법령은 2015.1.25.부터 효력을 발하며, 조세 분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및 혁신적 기업 등에 대한 조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47) www.ibfd.org 및 www.ey.com 참조

- Patent box 제도(지적재산권 활용에 따른 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비용공제 범위 등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Patent box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취득한 특허, 브랜드,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스하거나 직접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관련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2015년도에는 해당 소득의 30%, 2016년도에는 40%, 2017년도부터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이번 개정에 따라 Patent box 제도의 적용 대상 거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요건이 완화됨
 - 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상표권, 실용신안 및 모델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기존에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경우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대학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관계사와 연구용역계약(research contracts)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함
 - 감면 대상 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확인(ruling agreement)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직접 활용하여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로 한정함
-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지점에 대해서도 혁신적 창업 기업(innovative start-up companies)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함
 - 유럽경제지역(EEA) 지역 내 소재 기업으로서 이탈리아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혁신적 중소기업(innovative SMEs)에 대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함

- 혁신적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액공제를 창업 이후 7년 이하의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 혁신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기업이 총 생산금액(gross value of production) 또는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의 3% 이상에 상응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할 것
 - 박사학위 또는 기타 관련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정의 특허권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

다. 비용공제 및 조세피난처 세제 관련 블랙리스트 국가 범위 조정⁴⁸⁾

[조세동향 15-04호]

- 이탈리아 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비용 공제(cost deduction) 및 조세피난처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blacklist) 국가들을 조정하는 지침을 2015년 4월 1일자로 발표함(“Press Release No.77”)
- 동 조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재정안정법령⁴⁹⁾(“Stability Law 2015”)에 반영된 개정 세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이행됨
 - 동 개정 세법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이탈리아와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약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CFC 규정의 경우, 기존에는 (i) 저세율 국가 여부 및 (ii) 이탈리아와의 정보교환 약정 여부를 기준으로 CFC 규정 관련 블랙리스트 국가를 결정하였는데, 동 개정 세법에서 저세율 국가의 범위를 “이탈리아 과세 수준의 50%에

48) www.ibfd.org 및 www.ey.com 참조

49) Law No. 190 of 23, December 2014

미달하는 국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음

- 국제거래에서의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와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한 21개 국가들은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함

〈표 II-1〉 이탈리아의 블랙리스트 해제국가

Alderney, Anguilla, Aruba,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sta Rica, Gibraltar, Guernsey, Herm, Isle of Man, Jersey, Malaysia, Mauritius,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Philippines, Singapore, Turks and Caicos Islands, United Arab Emirates

- CFC 규정과 관련하여 (i) 이탈리아 과세 수준의 50%를 상회하는 과세를 하는 국가들로서 (ii) 이탈리아와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한 3개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함
 -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싱가포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라.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보완 및 전자·통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시행령 발표⁵⁰⁾

[조세동향 15-05호]

1) 해외자산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제도 보완

- 이탈리아 국세청(Italian Tax Authorities)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자산 정보 교환과 관련된 기준 모델을 2015년 4월 30일자로 발표함
- 동 조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Law No. 186 of 15 December 2014)의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것임
 - 2014년 9월 30일까지 해외자산이나 투자로부터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납

50) www.ibfd.org 및 <http://www1.agenziaentrate.gov.it> 참조

세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이를 자진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의 25~50%까지 경감 가능함
- 납세자가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termediary)으로 하여금 이탈리아 과세당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authorize)한 경우도 그러한 가산세 경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함
- 이탈리아 국세청은 당해 정보교환 기준 모델을 발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자산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외자산 및 투자소득 자진신고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이 이탈리아 국세청과 협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2)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통신 거래에서의 용역 공급장소에 대한 시행령 발표

- 이탈리아는 2015년 4월 18일자로 전자·통신 거래 부가세 관련 개정 시행령 (Legislative Decree No. 42 of 31 March 2015)을 발표함
 - 동 시행령은 2015년 5월 3일부터 발효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래에 적용될 것임
- 동 시행령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주로 무형의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는 전자·통신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거래가 귀속되는 공급 장소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
 - 통신(telecommunication), 방송(broadcasting) 및 전자 용역(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을 비사업자 소비자(non-taxable persons)에게 제공 (B2C)하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장소는 해당 소비자(customer)가 소재한 장소로 함
- 동 시행령에는 이러한 전자·통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 규정(VAT Mini One-Stop Shop, “MOSS”)도 포함하고 있음
 - 통신, 방송 및 전자 용역을 EU 멤버국 소재 소비자에게 공급(B2C)하면서 해당

멤버국에 사업장(establishment)을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 가능함

- MOSS를 적용하려는 납세자는 EU 멤버국 중 한 국가에 등록하게 되며, 당해 전자·통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MOSS 등록 국가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게 됨
 - 당해 납세자는 다른 멤버 국가들에 소재한 소비자에게 제공한 통신·방송·전자 용역 거래의 세부 내역과 관련 부가세를 분기별로 웹포털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
- MOSS 등록 국가 과세당국은 동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가 소비된 멤버국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액을 이전하게 됨
- MOSS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멤버국가에만 선별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10 터키 - 간주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함⁵¹⁾

[조세동향 15-04호]

- 터키 정부는 현금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간주이자 손금산입제도에 관한 법인 ‘Law 6637’를 4월 7일에 입법하였으며 7월 1일에 발효될 것임
 - 동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동 제도를 운용함
- 동 제도는 현금자본 공모로 설립된 터키 법인들과 기존 법인들의 현금자본 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함
 - 적용 대상이 되는 터키 법인들의 간주이자비용의 50%를 손금산입을 허용함
 - 공적 기업과 일부 특수목적 기업들은 동 제도에 따라서 계산된 이자의 150% 까지 손금처리할 수 있음

51)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420.pdf/\\$file/TI780420.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TI780420.pdf/$file/TI780420.pdf)

- 간주이자 산출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에서 거래되는 터키화로 표시된 상업 채권에 적용되는 연평균 이자율을 기본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터키 중앙은행이 결정함
 - 적용 대상 이자는 터키의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현금자본의 증가분을 기초로 하여 계산됨
 - 간주이자비용의 계산기간은 증자일로부터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임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 환급 시 간주이자비용 손금인정 철회 규정과 간주이자비용 무기한 이월 손금산입제도도 동시에 도입함
 - 현금 증자 이후 주주들에게 다시 현금자본이 일부 환급되면, 환급된 자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 당기에 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간주이자비용이 손금산입이 안 될 때는 무기한으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11 프랑스 - 투자 촉진 관련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⁵²⁾

[조세동향 15-04호]

- 프랑스 총리실(Prime Minister)에서는 2015. 4. 8일자로 신규투자 촉진방안(New Investment Measures)을 발표함
- 이는 프랑스 경제 회복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활동상 제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며, 법인 및 개인 단계에서 투자 관련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함

52) www.ibfd.org 및 www.kpmg.com 참조

- 2015년 4월 15일 ~ 2016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 내 이루어진 산업재 투자(industrial investment)의 경우, 투자 원가의 140%에 상응하는 특별 추가상각(exceptional additional depreciation) 혜택을 부여함
 - 예를 들어, 2015년 5월에 100유로를 지불하고 취득한 장비에 대해서는 140유로를 기준(basis)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 당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은 기존의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 투자에 한정됨
 - 수처리 장비, 과학·기술 연구용 기자재, 산업 제조용 장비 및 기자재 등이 이에 포함됨
-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차량 관련 자산의 갱신 및 투자 관련 세액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주요 주거지에 대한 단열·수리·복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기존 세액공제 제도⁵³⁾가 2016년도에 갱신되어 적용될 것임
 - 2015년 4월 1일자로, 구형 디젤 차량의 폐기에 대해 10,000유로에 상응하는 세액 혜택(tax bonus)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됨

12 핀란드 - 공동증여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지침을 발표

[조세동향 15-06호]

- 2015년 5월 27일 핀란드 조세당국은 공동증여(shared gift)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함
- 공동증여는 한 개의 재산 증여 시 증여자가 대상 자산이 여러 수증자들이 해당 자산을 공유할 것을 언급하고, 그것이 성립되면 인정되는 증여임
 - 단, 공동증여라는 언급이 없이 한 개의 재산의 각자 지분을 나눠서 수증하게

53) The tax credit for energy transition(*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

되는 증여는 공동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임

- 예를 들어 한 채의 집을 두 딸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증여가 이루어질 시에는 공동증여가 아닌 각자 분리된 일반 증여임

-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2종류의 범주가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됨
 - 수증자들이 증여세법상 1범주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경우 세율은 1범주의 세율로 적용됨
 - 그러나 수증자 중 1명이라도 증여세법상 2범주의 사람이 있으면 세율은 2범주로 매겨짐

〈표 II-2〉 핀란드의 증여세율 적용 범주 구분

범주	증여자와의 관계	적용 세율
1범주	-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 - 증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동거자 - 증여자와 결혼 전력이 있거나 등록된 파트너였던 동거자 - 증여자의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의 직계 존비속	8~20%
2범주	- 1범주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 관계가 아닌 자	21~36%

- 공동증여에 대한 과세 대상 가치의 결정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공동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증여 대상 재산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됨
 - 공동증여자는 증여에 대해서 한 번의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 각각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각각 신고하는 경우는 공동증여가 아니게 됨
 - 공동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들은 연대하여 증여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짐

13 EU

가. 금융계좌정보 교환 관련 1차 검토 보고서 발표⁵⁴⁾

[조세동향 15-03호]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관련 전문가 그룹 (Expert Group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FI Group”)은 2015년 3월 17일자로 관련 EU 규정⁵⁵⁾의 이행과 관련된 1차 검토 보고서⁵⁶⁾를 발행함
 - AEFI Group은 2014년 10월에 결성되었으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과 관련된 EU 규정을 검토하고, 행정부담 최소화 및 합목적적 제도 실행을 위한 자문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 교환 대상의 범위 및 조사방법 등 실제적인 사안과 더불어 정보 교환 관련 행정부담 등 절차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포함하고 있음
 - 관련 소주제별로 주요 검토 및 권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⁵⁷⁾

[조세동향 15-06호]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년 6월 17일자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보고서⁵⁸⁾를 발행함
 -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지속적 세원확보, EU 내 사업활동에 대한

54)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55) Council Directive 2014/107/EU

56) “First Report of the Commission AEFI expert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14/107/EU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March 2015

57)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5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 Fair and Efficient Corporate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5 Key Areas for Actio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17.6.2015 COM(2015) 302 final

공통의 과세기준 도입 등을 위한 일련의 실행계획(initiatives)을 개괄하고 있음

- EU 내의 사업활동에 대해 공통의 단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안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을 다시금 재조명함
 - CCCTB는 201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EU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공통의 단일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간 상이한 세법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임
 - CCCTB는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 상이한 세법체계를 이용하여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임
 - 또한 CCCTB를 통해 단일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조세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CCCTB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실천방안을 2016년 초반에 발표할 계획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Eusuring effective taxation where profits are generated) 법인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함
 - EU내 사업체들이 관련 소득을 창출하는 곳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국적기업들이 실제 소득 창출과는 관련이 낮은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함
 - CCCTB 이외에도 여러 관련 수단을 동원하여 실제 소득 발생지에서의 과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 system)를 정비하여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방지
 - 조세특혜(preferential tax regime)를 부여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

- 역외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조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함
-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협력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리스트(list of third country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를 발표해 오고 있음
 - 향후 상기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재검토·갱신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들이 과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표 II-3〉 금융정보교환 관련 주요 논의 사항

소주제	주요 사항
이행 일정(time 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및 2017년도 귀속 금융정보에 대한 보고는 2018년부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및 각 멤버 국들은 제반 금융정보교환 절차들이 정보보호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각 멤버 국들은 다른 제3국이 관련 정보 보호에 적합한 법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조해야 함
이행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의 정의(definition) 등 정보교환 관련 주요 사항들이 일관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각 멤버 국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체계 및 실행지침을 2016년 1월로 예정된 마감시한 전에 가급적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항에 대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실체(investment entity) 및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등 핵심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고 절차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으로 취합하기 어려운 정보 보고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자가 확인양식(self-certification form)의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작성, 개발하여 각 멤버 국들이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정보보고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멤버 국들은 정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및 거래실체 내역을 결정함에 있어 일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초안을 2015년 7월 이전에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
행정부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금융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 멤버 국들은 제도 이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고 관련 IT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취합,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IT 이슈들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해결방안을 개발하여야 함
기타 보완 필요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및 각 멤버 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금융정보교환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4

OECD - BEPS Action Plan 중 국가별 보고 (Action 13)에 대한
실행보고서 발표⁵⁹⁾

[조세동향 15-06호]

- OECD는 2015년 6월 8일자로 BEPS Action Plan 13과 관련하여 국가별 이전가격 자료 제출의 실행방안에 대한 보고서⁶⁰⁾를 발표함
 -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BEPS Action Plan 13 (country-by-country reporting)과 관계된 것임
 - BEPS Action Plan 13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 내역에 대한 각 국가 과세당국의 이해 증진을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OECD에서 2014년 9월에 발표한 Action Plan 13 관련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각 관련 국가별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양식을 제시한바 있으며, 후속 작업을 통해 국가별 보고의 작성 주체, 기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음
 - 이번에 발표된 국가별 자료 제출 실행방안 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를 법제화하는 데 참고할 모델규정(model legislation) 및 과세당국 간 합의문 예시(mode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s) 안을 제시함
- 국가별 보고에 대한 모델규정에서는 보고서 제출 주체 및 관련 의무사항 등에 대한 법조문을 예시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당해 소재지 국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동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세전손익, 납세액, 자본 및 이익잉여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및 현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59) www.ibfd.org 및 www.oecd.org 참조

60) “Action 13: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ation Package,” the OECD

- 당해 모델규정은 특정 국가의 헌법, 법률 체계 및 조세규정 등을 감안한 것은 아니며, 각 국가들은 당해 모델을 자국의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과세당국 간 합의에 대한 예시 문안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 간에 교환하는 것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됨
- 동 합의문안은 국가별 보고서 관련 과세당국 간에 자동적으로 교환(automatically exchange)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해당 소재지 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은 이를 다국적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들에게 제공하게 됨
- 이를 위하여 동 합의문안은 기본적으로 다수 과세당국간 합의(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의 형식을 취함

Ⅲ 아시아 /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2015 예산안 공개⁶¹⁾

[조세동향 15-05호]

-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2015년 5월 21일 의회에서 2015 예산안을 공개함
 - 2015 예산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 부동산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위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⁶²⁾
 - 예산안에서는 세제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담고 있음
- 가계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함
 - 연간 세전 36,350뉴질랜드달러 이하 저소득가구는 워킹포패밀리(Working for Families) 프로그램의 주당 지원액을 12.5뉴질랜드달러 인상하여 최대 24.50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함
 - 연간 세전 36,350뉴질랜드달러 이상 소득의 가구도 일정금액의 증가가 있으나, 그 증가금액은 주당 12.5뉴질랜드달러보다 작은 금액이 될 것임
 - 연간 세전 88,000뉴질랜드달러 이상 소득의 가구는 약간 지원금액이 낮춰질 것이며 평균적으로 주당 3뉴질랜드달러 삭감될 것임
 - 이러한 재정지원증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61) 뉴질랜드 과세관청 조세정책(<http://taxpolicy.ird.govt.nz/news/2015-05-21-budget-2015>)

62) Hon Bill English, Minister of Finance, Budget Speech, 21 May 2015

-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자산업에서 납세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도입함
 - 토지매매 절차의 단계로서 매매자의 IRD(Inland Revenue Department)번호 부여를 의무화함
 - 비거주자는 토지매매시 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함
 - 비거주자는 부동산 매수를 위한 IRD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함
 - 거주 목적 부동산이라도 매수 후 2년 내 매각시에는 과세됨
 - 다만, 양도자의 주거주지이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인 경우에는 제외함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위해 추가예산을 과세관청에 배정함
 - 이러한 절차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2 대만 -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⁶³⁾

[조세동향 15-06호]

-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2015년 6월 5일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보유 기간에 따른 다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으며,⁶⁴⁾ 건물은 다른 소득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었음

63)立法院 國會圖書館(<http://npl.ly.gov.tw/do/www/newRecord>),增訂所得稅法第四條之四、第四條之五、第十四條之四至第十四條之八、第二十四條之五、第一百零八條之二及第一百二十五條之二條文；並修正第一百二十六條條文

64) 양도차익이 아닌 별도로 산정된 토지가치증가분에 대해 10~40%의 토지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었음 (Y. Lin, Taiwan - Individual Taxation sec. 4., Country Surveys IBFD)

- 이러한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되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⁶⁵⁾
- 과세대상은 대만 국내의 토지와 건물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함
 - 가구가 영업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거주목적 등으로 6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400만대만달러까지 과세를 면제하고 초과금액은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관련 법에 따른 농업을 위한 토지, 몰수되는 토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등은 과세면제함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본소득세가 과세됨⁶⁶⁾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시장가치에서 취득원가, 기타 비용 및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Land value incremental tax)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세율은 보유기간 및 거주자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
 - 거주자 개인은 15~45%, 비거주자 개인 및 법인은 35~45%로 과세됨
 - 법인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상의 경상소득으로 간주되어 17%의 법인세율로 과세됨

65) Ernst & Young, Taiwan amends capital gains tax provisions, Global Tax Alert, 11 June 2015, p. 1

66) Ernst & Young, op. cit

〈표 III-1〉 대만의 자본소득세율

(단위: %)

보유기간	거주자 개인	거주자 법인	비거주자 개인 및 법인
1년 미만	45	17 ¹⁾	45
1년 이상 ~ 2년 미만	35		35
2년 이상 ~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		-

주: 1)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됨

자료:立法院 國會圖書館(<http://npl.ly.gov.tw/do/www/newRecord>) 표로 재구성

- 단, 직장이직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내 처분하더라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3 싱가포르

가. 개정 이전가격지침 공개

[조세동향 15-01호]

- 싱가포르 과세관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이전가격지침을 공개함⁶⁷⁾
 - 이 지침은 2006년 2월의 첫 번째 지침과 이에 따른 부가지침 등을 통합한 두 번째 지침(the 2nd edition)으로 새로운 구체적인 개념과 절차 등을 도입함
 -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2010)과 BEPS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한 것임⁶⁸⁾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면서 3단계 접근방법을 권고함

67)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Second edition), IRAS e-Tax Guide, 06 Jan 2015

68) Singapore - Revise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15 Jan. 2015), News IBFD

-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모형과 대상 당사자의 식별,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순으로 권고하고 있음
- 거래와 동시에(contemporaneous)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함
 - ‘동시에’ 문서화하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시기에 이전가격 관련 증빙과 정보가 문서화 되어야 함
 - 다만 납세협력의 부담 감소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용인함
 -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납세협력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기준금액(threshold)에 미달하는 거래를 규정함
 - 특수관계자 간 재화의 매입 및 공급, 자금의 차입 및 대출, 기타 거래로 구분하여 문서화가 요구

〈표 III-2〉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금액기준

(단위: 백만싱가포르달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유형	연간 금액기준
재화의 매입	15
재화의 공급	
대출	
차입	
기타 거래(용역손익, 로열티, 임대차손익) ¹⁾	분류별 1

주: 1) 금액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은 각 분류별 합계액으로 판단됨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Second edition), IRAS e-Tax Guide, 06 Jan 2015, pp. 35~36

나. 2015년 예산안 공개⁶⁹⁾

[조세동향 15-03호]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3일 의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공개함⁷⁰⁾
 - 예산안은 ‘미래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building our future,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라는 가치로 제안됨
 - 각 계층의 생활에 대해 높은 안정망 확보, 많은 기회, 향상된 주거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⁷¹⁾
 - 예산안에서는 개인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연장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1) 개인소득세

- 세금의 누진성 강화와 미래 과세소득 확보를 위해 상위 5%의 개인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상함
 - 과세표준 2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32만싱가포르달러 미만의 구간을 분할하여 세 개의 구간으로 신설함
 - 과세표준 16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구간에 대해 세율을 1~2%p 인상함
 - 이러한 소득세율의 적용은 201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임

〈표 III-3〉 싱가포르 소득세율 개정안

(단위: 싱가포르달러, %)

	현행	개정안
~20,000		0.0
20,000~30,000		2.0

6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6111>)

70) Singapore Budget 2015(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5/home.aspx)

71) Budget Speech(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5/BudgetSpeech.aspx)

〈표 III-3〉의 계속

	현행	개정안
30,000~40,000		3.5
40,000~80,000		7.0
80,000~120,000		11.5
120,000~160,000		15.0
160,000~200,000	17.0	18.0
200,000~240,000		19.0
240,000~280,000	18.0	19.5
280,000~320,000		20.0
320,000~	20.0	22.0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재구성

- 중간 및 중상위 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과세기간에 모든 납세자에 대해 1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세액의 50%를 환급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납세자를 기준으로 88,068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인 1천싱가포르달러의 환급을 수령할 수 있음⁷²⁾
- 싱가포르 건국 50주년(Jubilee Year)을 기념하여 기부금에 대한 공제의 배수를 2015년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공제기간을 연장함
 - 적격기부금에 대해 대한 기존의 2.5배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연장하되, 2015년 과세기간에 한해 기부금의 3배를 소득공제함
 - 기존에는 승인된 기관 등에 기부하는 적격기부금에 대해 기부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2015년까지 적용함

72) Ernst & Young, *Singapore Budget 2015 Synopi*, 23 February 2015, p. 37

2) 법인세

- 구조조정기간 동안 원가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법인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급한도를 축소하되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함
 - 2016년과 2017년 과세기간에 법인들에 대해 세액의 30%를 2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환급함
 - 기존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의 30%를 3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환급하였으며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 생산혁신세액환급(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Bonus)에 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혁신세액공제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를 시행하고 있어 2015년에 일몰되는 환급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함
 - 2013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까지 3년간 IT 자산취득, 임직원교육 등의 적격비용에 대해 1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환급받아 적용하고 있었음
- 고용주에게 구조조정과 임금상승에 대처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5년에 일몰되는 임금세액공제제도(Wage Credit Scheme)를 2017년까지 2년 연장함
 - 임금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월 4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내국사용자에 대해 임금인상분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까지 2년 연장함
- 기업의 규모 확대, 잠재력 강화, 해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제도(M&A scheme)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 면제 등의 금액을 조정함
 -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2010년 시행된 세제를 201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음
 - 지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1억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취득가액의 5%를 공제를 허용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취득 후 5년간 동

일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지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수합병거래의 경우 인지세를 매년 2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면제함
- 이러한 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적격주식취득의 공제율 및 취득한도를 각각 25%, 2천만싱가포르달러로 조정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격 인수합병거래의 인지세 면제한도는 연간 4만싱가포르달러로 축소함
 - 적격주식취득의 한도는 500만싱가포르달러로 동일하나(1억×5%=2천만×25%) 취득금액의 한도를 축소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임⁷³⁾
- 법인에게도 개인과 동일하게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적용함
 -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부금과 동일하게 공제금액을 2015년 3배수로 조정 및 2.5배수의 2018년까지의 적용 등의 세부내용은 동일함
-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조세혜택을 개정하고, 상장 부동산투자전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감세율 적용 혜택을 연장함
 - 승인된 벤처캐피탈의 소득에 대해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기존 벤처캐피탈의 승인된 포트폴리오투자 양도소득, 국외포트폴리오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였음
 - 벤처캐피탈이 더 이상 개척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특례를 폐지하였으나⁷⁴⁾, 여전히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혜택 부여가 필요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상장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비거주자 또는 개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적용되는 10%의 경감세율 등의 특례가 2015년 일몰예정이었으나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함

73) Ernst & Young, op. cit., p. 10

74) Ernst & Young, op. cit., p. 33

3) 소비세

-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신탁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세 비용인식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함
- 특수목적기구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비용 발생 시 포함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특례를 두고 있는 것임⁷⁵⁾
- 이 특례는 2015년 일몰예정이었으나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함

4 인도

가. 2015~16년 예산안 공개⁷⁶⁾

[조세동향 15-03호]

- 인도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8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
- 현재 과거 어느 시점보다 호전된 경제 환경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성장의 가속화 및 투자를 강화하고 이러한 성장의 결과를 삶의 질의 개선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산안에서는 부유세 폐지 및 고소득자의 부가세 인상,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율의 향후 인하, 소비세 시행의 재확인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1) 소득세

- 세금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부유세를 폐지

75) Ernst & Young, op. cit., p. 45

76) Union Budget 2015-16(<http://indiabudget.nic.in/>)

하고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상함

- 순자산이 300만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소득세 부가세를 10%에서 12%로 2%p 인상함
-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및 연금펀드의 소득공제한도와 교통비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료의 공제한도를 현행 15천루피에서 25천루피로 상향조정함
 - 노인들에 대한 공제는 현행 2만루피에서 3만루피로 상향조정하고 80세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 대해 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3만루피까지 공제를 허용함
 -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특수질환으로 인한 지출의 공제한도를 현행 6만루피에서 8만루피로 상향조정함
 - 연금펀드 등의 납입액 공제한도를 현행 1십만루피에서 1.5십만루피로 상향조정함
 - 지급받는 교통비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 8백루피에서 16백루피로 상향조정함

2) 법인세

- 높은 법인세율과 다수의 면제 및 혜택으로 인한 압력단체의 출현, 불복 등의 부작용을 줄이며 보다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위해 향후 4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이와 동시에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상함
 -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향후 4년간 인하하여 25%로 인하함
 - 현행 과세표준 1천만루피에서 1억루피까지 5%, 1억루피 초과분에 대해 10%로 적용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를 각각 7%, 12%로 2%p 인상함
- 중소기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이전가격 적용한도(threshold)를

현행 5천만루피에서 2억루피로 상향조정함

- 이해관계자와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여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함
 - 따라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2017-18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국내 제조와 인도 내 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과세기간 중 하반기에 취득한 설비 등에 대해서는 현행 20%의 가속상각에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적용되었는데 잔여 10%는 바로 이후기간에 상각을 허용함
 - 안드라프라데시주(Andhra Pradesh)와 텔랑가나주(Telangana)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의 투자에 대해 15%의 투자공제와 동시에 현행 20%의 가속상각에 15%를 부가하여 35%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관으로 적용되는 투자기구의 범위를 확대함
 - Category I과 II에 해당하는 대체투자기구(alternative investment funds)⁷⁷⁾를 도관(pass-through)으로 간주함
 - 따라서 투자기구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단계에 과세함
 - 이러한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3) 간접세

- 201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간접세를 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소비세(Good and

77) 인도의 대체투자기구는 3가지 분류 중 하나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Category I은 창업투자, 중소기업, 사회기반시설 등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에 투자하는 펀드로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Category II는 일일자금운용에 따른 필요 이외에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펀드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채무투자기구(debt fund)가 이에 해당함(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Regulations, 2012, Ch. II 3 (4))

Service Tax)의 시행을 재확인함⁷⁸⁾

-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014년 12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과세권한 배분조정 등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소비세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용역세(service tax), 물품세(excise duty) 등의 간접세 세율을 조정함
 - 용역세의 기본세율을 현행 12.36%에서 14%로 인상하고 각 품목별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함
 - 여행사에 대한 세율을 국내와 해외여행 제공용역을 각각 0.1%p, 0.2%p, 보험용역에 대해 첫 연도와 후속 연도 보험료에 각각 0.5%p, 0.25%p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용역세 세율을 인상함
 - 각종 교육관련 부과금을 물품세에 포함시켜 물품세의 일반세율을 12.36%에서 12.5%로 인상함

나.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과세법 제언⁷⁹⁾

[조세동향 15-04호]

- 인도 정부는 2015년 3월 20일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과세법(the Undisclosed Foreign Income and Assets (Imposition of Tax) Bill, 2015)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은 재무장관이 예산안 연설에서 현재 조세제도의 한계로 인해 검은 돈(black money), 특히 국외의 자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적인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후 이루어진 것임
 - 이 법은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6년 4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2015-16 과세기간부터 적용됨⁸⁰⁾

78) 관련 내용은 『조세동향 14-12호』 참조

79) Press Information Bureau of Government of India, “Highlights of the Undisclosed Foreign Income and Assets (Imposition of Tax) Bill,” 2015 Introduced in Lok Sabha today, March 20, 2015

- 해외 소득과 자산과 관련된 미신고 소득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이 아닌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짐
 - 미신고 소득과 자산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소득세법에서 허용되는 비과세, 공제, 결손금상계 등은 적용이 배제됨

- 미신고 소득과 자산에 대해 가산세 등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미신고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산세로 미신고 소득과 자산가액에 대해 90% (즉, 납부세액의 300%)가 부과되며, 해외 소득과 자산을 통한 고의적인 조세 회피의 경우에는 형사 기소하여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의 형에 처하며 벌금이 부과됨
 -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 소득과 자산에 대해 미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의 경우 100만루피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소 6개월에서 7년까지의 형에 처함
 - 다만 소액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잔고가 5십만루피 이하인 경우 가산세나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음

- 한시적인 기간 동안 미신고 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는 조세사면이 아니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번의 신고기회(one time compliance opportunity)를 주는 것이라고 밝힘
 - 한시적인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한시적인 기간에 신고를 수행할 경우 미신고 소득과 자산가액에 대해 30%의 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음

80) Ernst & Young, "Indian Government proposes legislation to curb menace of undisclosed overseas income/assets," EY Tax Alert, 22 March 2015, p. 2

5 일본 - 2015년 예산안 각의 결정

[조세동향 15-01호]

- 일본 내각은 2015년 1월 14일에 2015년 세제 개정안을 승인함⁸¹⁾
 - 2015년 세제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한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회복을 위한 법인세 개혁, 주택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 강화, 결혼·육아 지원 등의 경제활성화 반영
 - 경제활성화 측면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
 - OECD BEPS 프로젝트 등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 조화방안 강구

가. 소득세

- 비과세되는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s: NISA)의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허용함
 - NISA의 상장주식 등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만엔에서 2016년부터 120만엔으로 상향조정함
 - 미성년자의 경우 매년 80만엔의 상장주식 등의 투자로부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는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함
- 국외로 이주하는 일본 거주자들에 대해 출국 시 자산이 결제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함
 - 이주 시 1억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중 5년 이상을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가 대상임
 - 이주라 함은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함

81) 財務省, 平成27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1月14日

- 금융상품은 유가증권, 조합(匿名組合)출자지분, 신용거래, 미결제파생상품 등을 포함함
- 다만 이주한 거주자가 이주 후 5년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에 따른 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나. 증여세(자산과세)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하고 결혼·육아 자금의 증여에 대해 비과세함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구입, 교육 등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하는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함
 - 주택구입자금은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에너지절약등급에 따라 3백만엔에서 3천만엔까지 비과세
 - 교육자금은 15백만엔까지 비과세⁸²⁾
-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개인이 결혼·육아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신탁을 통해 수익권을 증여받는 경우 월 1천만엔(결혼은 3백만엔)까지 비과세함
 -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증여분에 한함

다. 법인세

-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현행 25.5%의 법인세율을 23.9%로 2015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인하함
- 중소기업·공익법인·협동조합의 소득 8백만엔 이하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15%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함

82) J. Dodds & M. Murata, Japan - Individual Taxation sec. 5., Country Surveys IBFD

〈표 III-4〉 일본의 법인세율

		현행	개정안
일반법인		25.5%	23.9%
중소기업 등	소득 8백만엔 이하	19.0% (경감세율 15.0% 적용)	19.0% (경감세율 15.0% 적용)
	소득 8백만엔 초과	25.5%	23.9%

자료: KPMG, Outline of the 2015 Tax Reform Proposals, 6 January 2015, p. 2

- 법인사업세(지방세) 세율을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인하함
 - 자본금이 1억엔 인상이 법인에게만 해당
 - 따라서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도쿄의 경우 현행 34.64%에서 2015년 33.10%, 2016년 32.34%로 인하됨⁸³⁾

〈표 III-5〉 지방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현행	2015년	2016년
연 4백만엔 이하	3.8% (2.2%)	3.1% (1.6%)	2.5% (0.9%)
연 4백만엔 이상 8백만엔 미만	5.5% (3.2%)	4.6% (2.3%)	3.7% (1.4%)
연 8백만엔 초과	7.2% (4.3%)	6.0% (3.1%)	4.8% (1.9%)

주: 괄호안 세율은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후 세율임
 자료: 財務省, 平成27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 年1月 14日, p. 54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연장함
 - 현행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65%로, 이후 기간은 50%로 낮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83) PriceWaterhouseCoopers, 2015 Tax Reform Proposal, Japan Tax Update, January 2015, p. 2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 요건을 강화하고 익금불산입 비율을 하향 조정함
 -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액 100%를 익금불산입하는 요건을 주식보유비율 25% 이상에서 3분의 1 초과로 강화하고 5% 초과 3분의 1 이하 보유 시 배당금액의 50%를 익금불산입함
 -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함

- 외형표준과세의 형태의 법인사업세(지방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함
 - 과세대상은 자본금이 1억엔 이상인 법인이며 부가가치와 자본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0.48%, 0.20%에서 2015년 0.72%, 0.3%, 2016년 이후 0.96%, 0.4%로 인상함
 - 지방정부는 위의 표준세율에 최대 1.2배까지 부과할 수 있음⁸⁴⁾

-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투자 및 고용에 대해 2018년 3월 31일까지 특별상각,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함
 - 지방재생법의 지방거점강화실시계획에 따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함
 - 건물, 구축물 및 그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이전 시 25%, 이외의 경우 15%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 또한 취득가액에 2%에서 7%까지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 지방재생법의 지방거점강화실시계획에 따른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20만엔 또는 30만엔에 고용증가인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이러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법인세액의 30%를 한도로 함

84) KPMG, op. cit., p. 2

라. 국제조세

-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배당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재함
 - 현재 일본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이로 부터의 배당의 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러한 배당이 세무상 외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비과세규정 배제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배당부터 적용됨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시 외국법인의 유효세율을 20% 이하에서 20% 미만으로 변경함
 - 이러한 변경은 2015년 영국의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변경되었다고 알려져 있음⁸⁵⁾

6 중국

[조세동향 15-01호]

가. 기업구조개선 및 비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중국 재정부와 과세관청(国家税务总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14년 12월 25일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침은 「재세」 109호와 2014년 12월 31일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지침인 「재세」 116호를 공개함
 - 이러한 지침들은 중국 재정부와 과세관청이 중국 국무원(国务院, the State Council)의 2014년 국발(国发) 14호 「기업인수·합병시장 환경에 대한 최적화

85) KPMG, op. cit., p. 15

지침」(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지침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거래부터 적용됨
- 「재세」 109호는 2009년에 공개된 기업구조개선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침인 「재세」 59호에서 최소지분취득비율과 최소자산취득비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새로운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⁸⁶⁾
- 새로운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조세혜택은 양수도 기업간에 지분비율, 매각가액, 거래목적, 사업유지 및 회계상 손익미인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분 또는 자산 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 양수도 기업 간 완전모자회사 관계이거나 다른 기업에 의해 양수도 기업 모두 완전자회사인 경우이어야 함
 -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이루어짐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여야 함
 - 이전이 이루어진 사업이 이전 후 최소 12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
 - 양수도 기업이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 기업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양수도 기업은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은 양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인식
 -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양도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재세」 116호는 거주자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86)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企业重组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财税[2014] 109号，2014年12月 25日

이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까지 균등하게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⁸⁷⁾

- 이러한 과세이연은 2013년 「재세」 91호를 통해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 적용되던 것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임⁸⁸⁾
- 비화폐성 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및 화폐로 수취하는 사채 등을 의미함
- 비화폐성 자산 투자 시 공정가치와 세무상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기존에는 모두 과세대상 이익으로 인식하던 것을 이연할 수 있음

〈표 III-6〉 지침에 따른 과세방법

구분	대상	과세내용
투자자	비화폐성 자산 출자로 인한 이익	· 투자이익 = 투자한 자산의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 - 투자한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격 · 투자이익은 5년 내에 균등하게 실현시킴
	취득한 주식의 세무기준가격	·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기준가격 = 투자한 자산의 세무상 기준 가격 + 매년 실현되는 투자이익 · 따라서 주식의 세무상 기준가격은 매년 조정됨
피투자자	출자 받은 자산	· 출자 받은 비화폐성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격 = 공정가치

자료: KPMG, China Tax Alert- MOF and SAT issued new regulations to encourag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with non-monetary assets, January 2015, pp. 2~3

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비 요구

- 중국 재정부는 2014년 12월 22일 세제혜택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인 「재예」 415호를 공개함⁸⁹⁾

87)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非货币性资产投资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4〕116号, 2014年12月 31日

88) BDO, China Tax Newsletter, December 2014, p. 2

89) 财政部, 关于贯彻落实国务院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决策部署若干事项的通知, 财预〔2014〕415号, 2014年 12月 22日

- 통지는 2013년 11월 제3차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하나인 세제혜택운영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함
- 또한 2014년 11월 27일 공개된 국무원의 조세와 세제혜택에 대한 명확화에 대한 통지⁹⁰⁾를 집행하는 수단임
- 이 통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단위의 과세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⁹¹⁾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부 세제혜택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며, 국제거래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통지는 국무원의 통지상의 정책에 대한 해석, 장기적인 통제체계의 구축 및 관리, 현행 세제혜택의 정비 및 관리의 강화와 각 지방정부가 보고할 양식을 첨부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세제혜택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기업과의 약정, 합의서, 회의내용 등 모두를 포함함
 - 법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혜택들은 2014년 12월 1일부로 폐지하여 보고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제혜택들은 취합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러한 모든 절차는 2015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7 호주 - 2015 예산안 공개

[조세동향 15-05호]

- 호주 재무부장관은 2015년 5월 12일 의회에서 2015 예산안을 공개함

90) 国务院, 国务院关于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通知, 国发〔2014〕62号, 2014年 11月 27日

91) PriceWaterhouseCoopers, Time for a compliance check - The clean-up of local tax and fiscal preferential policies, New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January 2015, p. 1

- 2015 예산안은 일자리, 성장과 기회를 촉진(boosts jobs, growth and opportunity)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⁹²⁾
 -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육성,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 과세와 조세혜택의 공정성 강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확보, 재정회복을 골자로 함
- 예산안에서는 세제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세율인하 등의 혜택 부여,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방지법 신설, 국가간 디지털산업 거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 세율인하 등의 혜택을 적용함⁹³⁾
 - 연간 매출액 2백만호주달러 이하인 법인에 대해 세율을 1.5%p 인하한 28.5%를 적용하고, 법인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5%의 세금할인(tax discount)을 적용함
 - 다만, 세금할인의 한도는 개인당 연간 1천호주달러를 한도로 함
 -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별자산 금액기준을 현행 1천호주달러에서 2만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이러한 세율인하 등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즉시상각의제의 한도 상향은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⁹⁴⁾
 - 창업시 5년간 이연하여 상각하도록 하던 창업관련 전문가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개정 중인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 과세관련 규정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적용요건을 완화함

92)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 Overview, 12 May 2015, p. 1

93)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 Growing Jobs and Small Business, 12 May 2015, pp. 7~11

94) Ibid, p. 15

- 현재 기존 옵션 부여시 소득세 과세에서 요건 충족시 과세를 옵션 실행시 등으로 이연하는 개정이 진행 중임
 - 창업기업은 매출액 기준테스트 배제, 자본이득세 과세감면, 과세관청의 장이 이연요건 적용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⁹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 적용의 3년간 유예 등을 부여함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조세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을 도입함⁹⁶⁾
- 이 법에서는 호주에 과세지위(taxable presence: 고정사업장 등)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의 거래를 호주 내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최대 30개의 다국적기업이 이 법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납세자는 거래 관련 세액뿐만 아니라 최대 100%에 달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호주 정부는 이는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시작일 뿐이며 G20과 OECD 논의에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것임을 밝힘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공정한 경쟁체제(level the playing field)를 위해 호주로 수입되는 디지털 재화와 용역에 대해 소비세(Good and Service Tax)를 과세함⁹⁷⁾
- 현재 국내 디지털 재화 및 용역 제공자는 소비세가 과세되나 수입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되고 있지 않아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이러한 소비세 과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재화와 용역부터 적용됨
- 비영리법인이나 공공의료부분의 고용인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납용을 방지하기

95) PriceWaterhouseCoopers, 2015-16 Australian Federal Budget: Prepare for repair, p. 18

96)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 Fairness in Tax and Benefits, 12 May 2015, p. 7

97)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 1, 12 May 2015, pp. 1~13

위해 기존의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면제에 금액한도를 도입함⁹⁸⁾

- 기존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의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복리 후생비(meal entertainment benefit)에 대해 5,000호주달러 면세한도를 적용함
- 이러한 한도 적용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 관광취업비자(working holiday)로 호주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개인에 대해 거주자 지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거주자로 간주함⁹⁹⁾

- 따라서 관광취업비자로 호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2.5%의 세율로 과세됨
 - 이전의 거주자 지위 등에서 적용되던 면세최저점, 낮은 한계세율 및 과세상계 등¹⁰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8 홍콩 - 2015~16년 예산안 공개¹⁰¹⁾

[조세동향 15-03호]

□ 홍콩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5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¹⁰²⁾

- 2015-16 예산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제한된 토지와 노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사업소득세(profits tax), 근로소득세(salaries tax) 등의 부담완화, 자녀공제확대,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면세적용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소득세,

98) Ibid., 1-14.

99)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 Fairness in Tax and Benefits, 12 May 2015, p. 12

100) Australia - Budget 2015/2016 (12 May 2015), News IBFD

101) Inland Revenue Depart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

102) 政府財政預算案 The 2015-16 Budget(<http://www.budget.gov.hk/2015/eng/speech.html>)

근로소득세 및 소득신고를 동반하는 조세에 대해 일시적인 세액감면(tax reduction)을 실시함

- 2014/15 과세기간에 대해 2만 홍콩달러를 한도로 세액의 75%를 감면함
 - 재산세(property tax)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임대소득은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됨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
 - 자녀공제 중 출산 시 공제금액을 14만홍콩달러에서 20만홍콩달러로, 9세 이하의 자녀공제를 7만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확대함
- 다국적기업의 홍콩 내 자금집중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집중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면세를 적용함
 -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금집중센터에 대해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50%의 세액감면을 실시함
 - 현재 이자수취인이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지급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¹⁰³⁾
 - 세제혜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은 향후 국세청에서 조례(ordinance)로 공개할 예정임

103) Y. Zhang,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2015년 7월 30일 인쇄
2015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